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13-01

수탁보고 2018-07

#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

이정림 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13-01

수탁보고 2018-07

#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 정 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손 인 숙** (건국대학교병원 교수)  
**최 병 민**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교수)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희 선**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교수)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413-01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202-2118  
팩스 044-202-3910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보건복지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 목 차

<b>I. 서론</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7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10
<b>II.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b>	<b>11</b>
1.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의 개요 .....	13
2.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의 내용 .....	14
<b>III. 산후조리서비스 운영 현황</b>	<b>23</b>
1.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25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 .....	42
<b>IV. 산후조리원 평가</b>	<b>47</b>
1.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마련 .....	49
2.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실시 .....	62
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	66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통한 본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 .....	82
5. 요약 및 시사점 .....	99

<b>V. 정책 제언</b>	<b>101</b>
1.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 .....	103
2.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108
<b>참고문헌</b>	<b>119</b>
<b>부록</b>	<b>121</b>
부록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	123
부록 2. 산후조리원 운영현황(기관용 조사표) .....	131
부록 3.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 시범평가후(최종안) .....	139
부록 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보고서(조사위원용) .....	180
부록 5.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시범평가후(최종안) .....	197
부록 6.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 사례집 .....	302

## 표 목차

〈표 Ⅰ-3- 1〉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8
〈표 Ⅱ-2- 1〉 산모·신생아를 위한 비용 지원 정책	17
〈표 Ⅱ-2- 2〉 산모·신생아를 위한 물품 지원 정책	19
〈표 Ⅱ-2- 3〉 산모·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 정책	20
〈표 Ⅱ-2- 4〉 산모·신생아를 위한 인프라 지원 정책	22
〈표 Ⅲ-1- 1〉 산후조리를 했던 장소	26
〈표 Ⅲ-1- 2〉 연도별 산후조리원 개수	26
〈표 Ⅲ-1- 3〉 산후조리원 운영형태	27
〈표 Ⅲ-1- 4〉 산후조리원 건물형태	28
〈표 Ⅲ-1- 5〉 산후조리원 층별 현황	28
〈표 Ⅲ-1- 6〉 산후조리원 규모	29
〈표 Ⅲ-1- 7〉 산후조리업자 현황	29
〈표 Ⅲ-1- 8〉 산후조리원 종사자 현황	29
〈표 Ⅲ-1- 9〉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30
〈표 Ⅲ-1-10〉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31
〈표 Ⅲ-1-11〉 산생아가 산모실에 머무는 시간	31
〈표 Ⅲ-1-12〉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32
〈표 Ⅲ-1-13〉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현황	33
〈표 Ⅲ-1-14〉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현황	34
〈표 Ⅲ-1-15〉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모자보건법	35
〈표 Ⅲ-1-16〉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기준	36
〈표 Ⅲ-1-17〉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39
〈표 Ⅲ-2-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조정	43
〈표 Ⅲ-2-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44
〈표 Ⅲ-2-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의 기준가격	46
〈표 Ⅲ-2-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과정	46
〈표 Ⅳ-1- 1〉 평가기준개발 연구진 구성	50



〈표 IV-1- 2〉 2018년도 지표 개발회의 (연구진 협의,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 포함) .....	50
〈표 IV-1- 3〉 2017년, 2018년 시범평가 전 평가기준 항목분류 .....	52
〈표 IV-1- 4〉 2017년, 2018년 시범평가 전 평가기준 수정 .....	52
〈표 IV-1- 5〉 지표 개발회의(2018. 8. 23)를 통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	53
〈표 IV-1- 6〉 지표 개발회의(2018. 8. 27)를 통한 평가기준 현장 타당성 검토내용 .....	56
〈표 IV-1- 7〉 지표 개발회의(2018. 8. 29)를 통한 평가기준 확정 및 매뉴얼 검토 .....	56
〈표 IV-1- 8〉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의 구성 .....	57
〈표 IV-1- 9〉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의 구성 .....	58
〈표 IV-1-10〉 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의 구성(시범평가전) .....	59
〈표 IV-1-11〉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실시 전에 제공된 규정 및 서식 .....	62
〈표 IV-2- 1〉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참여기관 .....	63
〈표 IV-2- 2〉 시범평가 교육 .....	64
〈표 IV-2- 3〉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개요 .....	65
〈표 IV-3- 1〉 시범평가 근무인력 현황 .....	66
〈표 IV-3- 2〉 모자동실 일평균 이용시간 .....	70
〈표 IV-3- 3〉 수유 비율 .....	71
〈표 IV-3- 4〉 산후조리원 유형별 우수 및 미흡 영역 .....	74
〈표 IV-3- 5〉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요약 .....	75
〈표 IV-4- 1〉 2018년도 시범평가 이후 사후평가 회의 .....	84
〈표 IV-4- 2〉 조사위원 사후간담회를 통한 평가기준 수정 논의사항 .....	87
〈표 IV-4- 3〉 평가기준 비교 .....	89
〈표 IV-4- 4〉 2018년 시범평가 전후 평가기준 비교 .....	89
〈표 IV-4- 5〉 2018년 시범평가 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최종안) .....	91
〈표 IV-4- 6〉 평가항목 충족기준 .....	94
〈표 V-2- 1〉 모자보건법 개정시안 .....	113

## 부록 표

〈부록 표 1-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2018년 시범평가전) ……	123
〈부록 표 1-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2018년 시범평가후, 최종안) ……	127

## 그림 목차

[그림 II-1-1] 지원방식에 따른 산모신생아 지원정책 .....	13
[그림 III-1-1] 연도별 산후조리원 개수 .....	27
[그림 III-1-2] 산후조리원 이용인구 및 이용률 .....	30
[그림 III-1-3] 연도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	32
[그림 III-1-4] 2018년 지역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	32
[그림 IV-1-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마련 절차 .....	60
[그림 IV-3-1] 2018년 기관당 근무인력과 법적인력 비교 (간호사, 간호조무사) .....	66
[그림 IV-3-2] 2017년 기관당 근무인력과 법적인력 비교 (간호사, 간호조무사) .....	68
[그림 IV-3-3] 2018년 기관별 이용 요금 현황 .....	69
[그림 IV-3-4] 2018년 모자동실 이용 현황 .....	70
[그림 IV-3-5] 2018년 모유수유 이용 현황 .....	71
[그림 IV-3-6] 민간/법인 산후조리원 소영역 항목 점수 평균 .....	72
[그림 IV-3-7] 공공 산후조리원 소영역 항목 점수 평균 .....	73
[그림 IV-3-8]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항목 점수 평균 비교 .....	73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확대가족은 점차로 감소되어 가고 있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가구유형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가 32.3%(613만 2천 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통계청, 2017: 15).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로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임신과 출산에서 노부모와 친인척과 더불어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전통적 방식의 산후조리 및 돌봄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자녀를 출생하는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통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이 5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본인 집(29.4%)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편, 한국은 2016년도의 합계출산율 1.17에 이어 2017년도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역대 가장 저조한 합계출산율을 기록함으로써 2001년 이후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국가의 당면과제가 되었고, 이로 인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1)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인출일: 2018. 11. 10)

중요해졌고, 관련 정책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이용 금액, 이용 기간 등을 늘리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임신부 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비용지원을 포함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돌봄 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국가적 사업 중에서 분만직후의 임신부와 출생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더불어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관련 감염과 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7년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357,800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는데 2016년 대비 48,600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2016년 대비 2015년에 출생아 수가 32,120명이 감소한 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10. 24). 또한, 2018년 8월 출생아 수는 27,3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3% 감소(통계청, 2018)한 것으로 나타나 출생아 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출생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증가 되면서 산후조리원의 감염과 안전에 대한 요구 이외에도, 생애초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산후조리원에서 보내게 되는 신생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는 학계 등을 통한 각성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애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신생아를 위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자동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생아 면역체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신생아 돌봄을 위한 부모교육은 제공되고 있는 지 등과 같은 신생아 관점에서의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다음세대의 주역인 미래 인적 자원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인구의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통적 방식의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를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충족시

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던 산후조리 및 돌봄을 가족 외 인력이 지원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정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기관 제공의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 22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2017년도에는 산후조리원 시범 평가 연구를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용역 과제가 수행된 바 있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일련의 연구에 이어 2018년도에 수행되었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들이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나타난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평가 지표를 통하여 산후조리원 대상의 직접 시범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의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산모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부가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의 큰 그림 속에서 산후조리원 평가 방향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내용

첫째, 2017년도에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사업”에서 초안으로 마련된 산후조리원 평가 목적, 평가 방향,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로 대두되고 있는 신생아 관점에서의 평가 지표 내용을 제고하여 관련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이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추가 및 삭제할 지표들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원장의 리더십 및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경영관리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제안이 있었고, 관련 전문가들의 동의를 거쳐 관련 지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의 검토 및 수정·보완을 위하여 영유아 관련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육아정책연구소, 산부인과/소아과/감염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모자보건학회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모자보건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외 한국 산후조리업협회 측 관계자와 평가 지표의 검토부터 확정 단계까지에 걸쳐 함께 논의하여 수정본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2018년도 수정본 평가지표가 확정된 후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장 수용성과 적용을 검증한 후 시범평가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 원장/실무책임자 및 평가에 참여하였던 조사위원과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수정본 평가지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수정·보완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기준,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등에 관한 현장 수용성 및 적용성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범평가 이전에 확정된 수정본 평가 지표를 시범평가 이후 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 지표 수정본(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을 확정하는 단계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시범평가를 위하여 현장에서 구비해 두어야 하는 규정 및 작성해 두어야 하는 서식 및 양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서식과 양식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관찰, 서류 점검, 면접 등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위원으로 임용된 조사위원용에게 제공될 현장평가표 및 시범평가 결과 보고서 양식(총평, 항목별 보고)을 2017년도 양식에 준하여 2018년도 평가 지표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었다.

셋째,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고자 하였다. 보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향후 산후조리원이 지향해야 할 산후조리원

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서비스의 형태로 산후조리원과 같은 기관이용과 재가방문을 통한 개별서비스 이용 형태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바람직한 산후조리서비스 정책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먼저,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수행되었던 기존의 보고서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6년에 만들어졌던 평가의 목적, 평가 내용 및 방법, 2017년도에 개정되었던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지표가 포함된 배경, 삭제된 배경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위하여 제작되었던 양식 및 규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올해 연구에서의 반영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모 및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비용지원, 물품지원, 서비스지원, 인프라 지원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을 포함한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의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 나.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먼저, 전체 연구의 방향,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목적, 평가 방향,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측 관련자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별도로, 평가 지표에 관한 현장 수용 가능성 및 적용 등에 관한 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측과의 집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범평가 실시 협조 및 관련 내용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의 간담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 및 내용 검토를 위한 착수보고 형태의 정책연

구실무협의회가 1회 이루어졌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 형식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과 함께 1회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1회의 서면 자문과 전문가 자문이 실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자문회의(서면자문 포함), 간담회 등이 총 14회 이루어졌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7. 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실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팀장 보건복지부 사무관	2017년도 시범평가 관련 문의 및 협조 요청
2차	7. 25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향후 평가지표 수정 및 시범평가 관련 협조 요청
3차	8. 8	소아과 교수 2인, 산부인과 교수 2인 간호사 1인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주무관 송파산후조리원 과장 송파산후조리원 건강책임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실장 산후조리업협회 회장 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무관	송파공공산후조리원 방문 및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논의
4차	8. 10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착수보고
5차	8. 23	산부인과 교수 2인 소아과 의사 1인 간호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 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수정 논의
6차	8. 27	산부인과 교수 1인 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현장 타당성 검토
7차	8. 29	산부인과 교수 1인 소아과 교수 2인 산후조리원 원장 1인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8차	10. 12	산부인과 교수 2인 소아과 교수 1인 산후조리원 원장 및 실무책임자	시범평가 후 산후조리원 원장 및 실무책임자 간담회
	10. 12	산부인과 교수 2인 소아과 교수 1인 공공산후조리원 실무책임자 3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 파악 및 방향성 논의
9차	10. 16	산부인과 교수 2인	시범 평가 이후 지표 수정(안)/ 시범 평가 결과 분석 및 향후 평가 방향 논의
10차	10. 25	산후조리원협회 사무국장 산부인과 교수 1인	시범 평가 이후 평가 지표 수정안에 대한 산후조리업협회 의견 취합
11차	10. 27	산부인과 교수 2인 소아과 교수 1인 조사위원 8인	시범평가 후 조사위원 간담회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향후 본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 및 제언
12차	10. 30	산부인과 교수 1인 소아과 교수 1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간보고
13차	11. 20~23	한국복지조사사이어티	정책 방안 검토(서면 자문)
14차	11. 26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정책 방안 검토

## 다. 시범평가

공공산후조리원 3개 기관과 민간/법인 산후조리원 10개 총 13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 평가 기간은 2018년 10월 2일~ 10월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평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 2인이 한조가 되어 15개 평가 영역의 99개 평가 항목에 관하여 서면/면접/관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범평가를 통하여 평가 지표의 현장 수용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시범평가를 위하여 시범평가 실시 전에 산후조리원 원장 및 실무책임자 및 현장 관찰을 위한 조사위원 대상 교육 워크숍이 1회 개최되었고, 조사위원 대상만의 교육 워크숍이 1회 개최되었다. 시범평가 이후에 산후조리원 원장 및 실무책임자 대상의 현장 간담회가 1회 개최되었고, 조사위원 대상의 현장 간담회가 1회 개최되었다.

## 라. 시범평가 결과 분석

시범평가에서 현장에서 관찰, 서류 검토, 관련자 면접 등을 통하여 조사위원이 평가한 항목별 평가 점수 및 총평 내용 등을 공공 및 민간/법인 산후조리원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산후조리원 유형별에 따른 산후조리원 운영 측면(산후조리원 인력 현황, 이용요금, 모자동실 이용 현황, 모유수유 현황 등)과 15개 평가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운영측면 분석에서 인력현황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 기준 대비 산후조리원 유형별 준수 사항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외 내용에 관하여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경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유형별 15개 평가 영역별에 해당하는 항목의 평균 점수를 각기 산출하여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법인 산후조리원 집단 간의 비교 뿐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의 평가 지표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에서 개별 15개 영역 점수가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과 평균 점수 이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떤 영역이 현장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영역인지를 파악하였다.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을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산후조리서비스가 산후조리원을 통한 기관 제공 서비스 뿐 아니라 재가방문을 통한 개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이용 형태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바람직한 산후조리서비스 정책방향과 방안을 전반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주된 연구 내용이 산후조리원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었고, 부가적으로 재가방문 서비스를 검토하여 향후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산후조리원 평가 방향 등에 관한 입지를 정립해보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방안은 제안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II

##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

1.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의 개요
2.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의 내용





## II.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

### 1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의 개요

여기서는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의 시책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산모·신생아 지원정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원방식에 따라 ‘비용 지원’, ‘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 ‘인프라 지원’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림 II-1-1 ■ 지원방식에 따른 산모신생아 지원정책

비용 지원	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	인프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li> <li>•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li> <li>• 의료 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li> <li>• 취약계층 출산비 지원 (청소년/장애인/저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li> <li>• 임신부 영유아 영양플러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li> <li>• 마더세이프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li> <li>•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li> </ul>

4가지의 지원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용 지원’은 현금이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비 지원 정책 등이 있다. 두 번째, '물품 지원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요물품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사업, 임신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의 '서비스 지원' 방식은 임신부 및 출산부모, 신생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인 제도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임신부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도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지원' 정책은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물리적인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산모나 신생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이상의 4가지 방식에 따른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의 내용

### 가. 비용 지원 정책

먼저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정책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대표적인 비용지원 정책으로,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자나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sup>2)</sup>된다. 2018년 11월 현재, 임신 1회당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다태아의 경우는 90만원)<sup>3)</sup>,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전용카드)'의 전자바우처로 제공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나 가족이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다음날에서 60일

2) 제외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접수지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가 해당된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바우처 지원액은 2019년부터 10만원 상향(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될 예정이다.

까지 이용가능하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2013년 4월 1일부터 한방 의료기관도 지정요양기관에 포함되었다. 즉,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 분만입원시의 비용이나, 한방, 한방병원에서의 임신출산 관련 급여, 비급여(한약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4)</sup>.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제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어 의료적 시술을 요하는 경우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이며,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 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와 환자특식은 제외)의 90%를 지원해 준다. 단,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sup>5)</sup>,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어려워 시술을 요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부인이 만44세 이하이고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자(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기본적인 지원대상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달라진다.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원) 내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7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당 최대 50만원 3회까지 지원한다.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특정 상황이나 취약계층에게 출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다.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store/where.do?p\\_sn=55](http://www.voucher.go.kr/store/where.do?p_sn=55) (인출일: 2018.11.22)

5) 여기서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청소년산모나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출산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역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게도 출산비가 지원된다. 등록된 장애인(1~6급)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4개월 이상)을 한 경우 태아 1인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이 출산했을 때에는 의료급여,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출산비가 지원된다.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기본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인 경우는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간 거주한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급여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긴급지원제도<sup>7)</sup>를 통해서도 출산비가 지원된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가족구성원이 출산한 경우(출산예정도 포함) 해산비로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시군구청에 방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급여의 하나로 해산급여가 지급된다.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이다.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6) 인공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7)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놓인 소득(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 II-2-1 산모·신생아를 위한 비용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li> <li>지원내용: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 지급 (다태아는 90만원)</li> <li>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다음날에서 60일까지 이용가능</li> </ul>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li> <li>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하여 계산</li> <li>지원내용: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지원한도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li> <li>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li> </ul>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부인이 만44세 이하인 자.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자</li> <li>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및 횟수가 다름</li> <li>지원내용: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원 내(의료급여 대상자 300만원이하)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은 1회당 최대 50만원 3회까지 지원</li> <li>관할 보건소 신청 후 심사하여 시술비 지원</li> </ul>	
의료 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한 자(자택 혹은 이송중 출산)</li> <li>지원내용: 25만원 지급</li> <li>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li> </ul>	
취약 계층 출산비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li> <li>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li> </ul>
	여성 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1~6급) 중 출산한 자(유산, 사산 포함)</li> <li>지원내용: 출산시 태아1인 기준 100만원 지원</li> <li>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li> </ul>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li> <li>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 지원(다태아일 경우 90만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시 20만원 추가 지원됨)</li> <li>시군구청 방문 신청</li> </ul>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출산한 자(출산예정 포함)</li> <li>지원내용: 해산비로 60만원 지원(쌍둥이는 120만원)</li> </ul>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li> <li>지원내용: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 지원(쌍둥이는 120만원)</li> <li>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li> </ul>

자료: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2](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2) (인출일: 2018.11.22.)

## 나. 물품 지원 정책

물품 지원 정책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철분제 엽산제 지원제도'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다. 각 지역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 가능한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고, 신경관 결손이 야기하는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한다. 보건소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시까지 최대 5개월간, 엽산제는 임신부터 임신 4개월까지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측면에서 위험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영양지원과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2007년 20개 보건소에서 11,16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 153개 보건소의 46,070명의 대상자, 2009년에는 245개 보건소의 74,406명의 대상자로 확대되었다. 2017년에는 252개 보건소에서 83,988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2017년 수혜대상자의 빈혈유병률이 사업참여 전에는 51.5%였으나 사업참여 후 26.4%로 나타나 48.8%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수혜대상자의 만족도도 91.6점(100점 만점)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운영 보건소의 관할지역 거주자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포함)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여야 하며, 가구규모별 중위소득의 80%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임신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영양교육의 경우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을 통

해 월1회 이상 실시하며, 보충식품 공급은 대상에 따라 관리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제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귤·오렌지 주스 등의 식품패키지를 식품의 신선도유지 기간을 고려하여 주기별로 제공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표 II-2-2 산모·신생아를 위한 물품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보건소에 임신 등록한 임산부</li> <li>• 지원내용: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최대5개월간의 철분제, 임신부터 임신4개월까지 최대3개월간의 엽산제 제공</li> <li>• 전국의 보건소에서 지급</li> </ul>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 중 혹은 수유중인 여성. 만5세 미만 영유아</li> <li>•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80%미만인 경우 비용의 10%는 본인 부담</li> <li>• 지원내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양보충 식품 제공(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등). 최대 1년간 영양 교육 및 상담(월1회 이상)실시 및 보충식품 제공</li> </ul>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p.42~103  
 2) 임산부 철분제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16094> (인출일: 2018.1.22)

## 다. 서비스 지원 정책

산모와 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마더세이프프로그램’이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3장 산후조리서비스 운영 현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중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유산, 사산 포함)으로, 건강관리사가 5~25일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정부는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등),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원금의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

하게 된다.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여 받게 된 이용권(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유효하다.

‘마더세이프프로그램’은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부, 예비임산부와 가족 및 의료인에게 약물, 알코올, 흡연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예비부부와 임신부, 수유부, 가족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신 중 약물상담, 모유수유 중 약물상담, 계획임신 시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999년 제일병원 기형유발물질정보센터의 서비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4년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운영되던 것을 2010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 제일병원에 중앙센터, 부산일신기독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대전미즈여성병원에 거점지역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 대구가톨릭의대병원, 창원 파티마병원에도 거점지역센터가 추가 설립되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사)임산부약물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I-2-3 산모·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유산, 사산 포함)</li> <li>•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최소 5~25일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국가지원금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단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5~20일. 쌍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10~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15~25일-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li> </ul> </li> </ul>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임신초기 노출되는 다빈도 약물 등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연구를 통해 대국민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www.mothersafe.or.kr, 1588-7309)</li> <li>- 임신 중 약물상담, 모유수유 중 약물상담, 계획 임신시 필요한 상담</li> </ul> </li> </ul>

자료: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7](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7) (인출일: 2018.11.22.)

2) 마더세이프프로그램 <http://www.mothersafe.or.kr/mother-safe/member> (인출일: 2018.11.22.)

## 라. 인프라 지원 정책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인프라 지원 정책에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우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분만 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순회진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분만 취약지<sup>8)</sup>가 위치한 시·도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지원대상 지역과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곳에는 1차년도에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6개월)을 지원하며, 2차년도에는 개소당 운영비를 5억원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총당한다. 이 사업으로 2017년 기준에는 9개 시도의 35개 의료기관에서 5,725 백만원의 지원받았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는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과와 소아과의 통합치료모델을 구축하고, 고비용·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신, 분만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20병상 이상이고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 운영되는 병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4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병원에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시설장비비의 명목으로 센터당 10억원을 국비 100%로 지원한다.

8) 분만취약지는 60분내 분만의료이용률(60분내 이동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건수/총 분만의료이용건수)이 30% 미만이고, 동시에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인구수/총 가임여성인구수)가 30%이상인 지역으로, 2017년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전남 장흥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원군 등 3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표 II-2-4 산모·신생아를 위한 인프라 지원 정책

구분	내용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li> <li>• 지원내용: 1차년도에는 시설장비비 개소당 10억원 및 운영비 2.5억원 지원. 2차년도에는 운영비 개소당 5억 지원, 국비 50% 지원</li> <li>•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심사를 거쳐 선정.</li> <li>• 9개 시도, 35개소 의료기관 5,725백만원 지원(2017년 기준)</li> </ul>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과 소아과의 통합치료모델 구축, 고비용, 저수익으로 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신, 분만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li> <li>• 지원내용: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로 개소당 10억원 지원, 국비 100%</li> <li>• 4개소 신규 설립 지원(2018년 기준)</li> </ul>

자료: 1) 보건복지부(2017b).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2) 보건복지부(2018a).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안내.

# III

## 산후조리서비스 운영 현황

1.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





### Ⅲ. 산후조리서비스 운영 현황

#### 1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가. 산후조리원 일반 현황

산후조리서비스는 시설에 머물며 받는 서비스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산후조리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산후조리원을 통한 서비스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 재가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 1)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에서 행해지는 서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013~2015년 7월까지의 출생아를 기준으로 산후조리를 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59.8%로 가장 높으며, 본인집이 29.4%로 높게 나타나고 친정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는 8.7%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통한 산후조리가 60%로 주된 산후조리 방식임을 보여주지만, 시설을 통한 산후조리와 재가를 통한 산후조리의 비중이 6:4 정도로 나타나 두 가지 방식이 비교적 균형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산후조리를 했던 장소

단위 : %

장 소	합 계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기타
점 유 율	100	59.8	29.4	8.7	2.1

주: 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현황

## 2) 산후조리원의 연도별 개설 현황

산후조리원은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가 어렵게 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설립되어 대표적인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를 통해 집계된 산후조리원을 개수를 보면 2009년 418개소에서 2015년도 61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 주춤하다가 2017년에는 598개소, 2018년도에는 584개소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산후조리원을 통한 산후조리방식이 주된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개소수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의 영향이 클 것이라 추측된다.

표 III-1-2 연도별 산후조리원 개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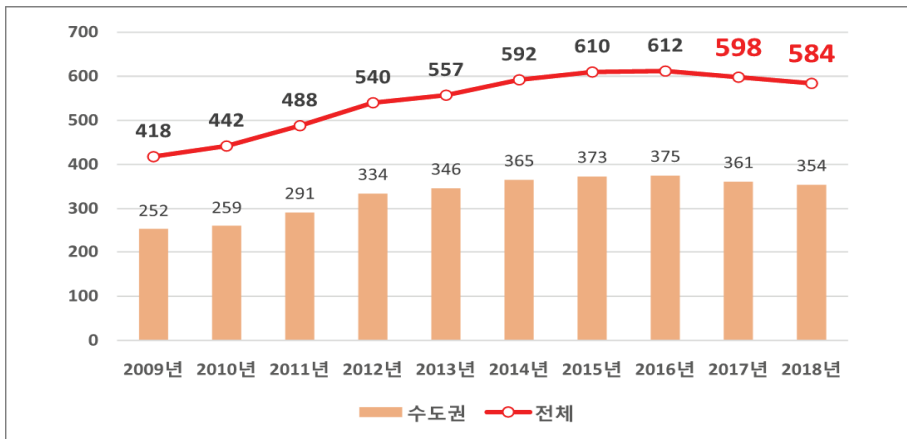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418	442	488	540	557	592	610	612	598	584
수도권	252 (60.3)	259 (58.6)	291 (59.6)	334 (61.9)	346 (62.1)	365 (61.7)	373 (61.1)	375 (61.3)	361 (60.4)	354 (60.6)
서울	99	99	115	140	148	153	159	157	150	150
경기	130	137	150	165	168	180	181	185	179	173
인천	23	23	26	29	30	32	33	33	32	31
기타	166 (39.7)	183 (41.4)	197 (40.4)	206 (38.1)	211 (37.9)	227 (38.3)	237 (38.9)	237 (38.7)	237 (39.6)	230 (39.4)
부산	31	29	32	30	31	30	29	29	29	29
대구	18	19	20	25	28	32	32	30	32	29
광주	4	6	7	7	6	7	8	9	9	9
대전	14	14	15	17	19	20	20	19	19	17
울산	2	2	4	3	3	5	8	8	9	9
세종	0	0	0	0	1	1	1	1	2	3
강원	11	13	13	15	15	16	16	17	16	16
충북	11	12	14	14	14	13	14	13	13	13
충남	7	8	10	12	13	15	17	17	18	18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북	16	19	19	19	20	20	20	18	17	16
전남	6	7	6	7	7	7	10	10	10	10
경북	12	13	14	14	13	18	20	23	21	20
경남	28	33	35	35	32	34	33	33	33	32
제주	6	8	8	8	9	9	9	10	9	9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함. 2018년도는 6월 기준. 나머지는 각년도 12월 기준임. 휴업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그림 III-1-1 ■ 연도별 산후조리원 개수

단위 : 개소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함. 2018년도는 6월 기준. 나머지는 각년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3) 산후조리원의 운영형태 및 규모

산후조리원의 운영형태를 보면, 직영(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57.2%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병의원의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32.7%로 꽤 높게 나타났으며, 체인형태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은 전체의 9.9%이다.

■ 표 III-1-3 ■ 산후조리원 운영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계	직영	체인	병의원 직영	기타
개수	584	334	58	191	1
비율	100.0	57.2	9.9	32.7	0.1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산후조리원 건물형태를 보면, 복합건물이 66.4%로 절반 이상이며, 병의원건물이 24.3%이고, 단독건물은 9.2%로 적은 편이다.

▣ 표 III-1-4 ▣ 산후조리원 건물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계	단독건물	병의원건물	복합건물
개수	584	54	142	388
비율	100.0	9.2	24.3	66.4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산후조리원이 몇 층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해보면, 3~5층 47.4%, 6~9층 40.2%로 3~9층이 전체의 87.6%이고, 1~2층 7.5%, 10층 이상 4.8%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보건복지부, 2017a)에 따르면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으로 나타나, 예외조항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피난층 설치 혹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각호의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 표 III-1-5 ▣ 산후조리원 층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	1~2층	3~5층	6~9층	10층 이상
개수	584	44	277	235	28
비율	100.0	7.5	47.4	40.2	4.8

주: 2018년 6월 기준. 여러 층이 있는 경우 최고층 기준으로 집계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산후조리원의 규모를 보면, 11~20인 규모가 5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21~30인이 23.8%로 높은 비중을 보여 80%의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10~30인 이하 시설임을 알 수 있다. 3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시설이 7.9%이고 1~10인의 시설이 12.1%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산후조리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된다.

표 III-1-6 산후조리원 규모

단위 : 개소, %

구분	계	1~10인	11~20인	21~30인	31~40인	41~50인	51인 이상
개수	584	71	328	139	25	14	7
비율	100.0	12.1	56.2	23.8	4.3	2.4	1.2

주: 2018년 6월 기준. 임산부실 정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 4) 산후조리원 종사자 현황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산후조리업자는 888명으로, 공동대표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어 전체 산후조리원 개소수 보다 많다. 주로 의사(한의사) 32.6%, 간호사/간호조무사 25.8%, 조산사 1.2%, 약사 0.6%로 의료인이 60.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일반인 21.7%, 법인 18.1%로 나타났다.

표 III-1-7 산후조리업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의사(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간호조무사	일반인	법인
인원	888	289	143	11	5	86	193	161
비율	100.0	32.6	16.1	1.2	0.6	9.7	21.7	18.1

주: 2018년 6월 기준. 공동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 인해 산후조리업자 수가 산후조리원 개소수보다 많음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2018년 6월 기준 10,590명으로 간호조무사 53.1%, 간호사 20.9%, 영양사 0.8%, 기타(미화원 등) 25.2%로 나타났다.

표 III-1-8 산후조리원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기타
인원	10,590	2,215	5,619	89	2,667
비율	100.0	20.9	53.1	0.8	25.2

주: 2018년 6월 기준. 기타는 미화원, 세탁원, 행정원, 취사부, 마사지사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 5)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은 다음 <표 III-1-9>와 같다. 먼저 연도별 입실율은



2014년에 67.3%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낮아지는 추세로 2018년 6월에는 60.5%로 나타났다. 이용 인구는 2015년 194,8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181,588명이었고, 2018년 6월은 175,00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가 2015년 43만 8천여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7년 35만 7천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출생아 수 대비 이용인구의 이용률을 계산한 결과, 2013년 38.3%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50.8%로 나타났다. 이용인구는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출생아 수 대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로 파악된다. 이는 산모들이 산후조리 장소로 여전히 산후조리원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 표 III-1-9 ▣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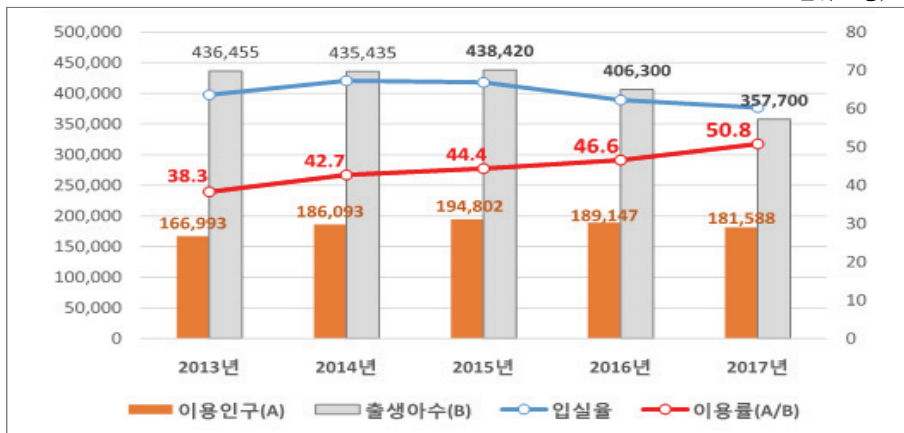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입실율	63.6	67.3	66.9	62.3	60.3	60.5
이용인구(A)	166,993	186,093	194,802	189,147	181,588	175,004
출생아수(B)	436,455	435,435	438,420	406,300	357,700	-
이용률(A/B)	38.3	42.7	44.4	46.6	50.8	-

주: 1) 2018년은 6월 기준. 나머지는 연도말 기준.  
 2) 휴업 중: ('13년) 5개소, ('14년) 4개소, ('15년) 6개소, ('16년) 5개소, ('17년) 11개소, ('18년) 20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 그림 III-1-2 ▣ 산후조리원 이용인구 및 이용률

단위 : 명, %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보건복지부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3.2일로, 일반적으로 약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들이 응답한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였으며,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였다.

■ 표 III-1-10 ■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실제 산후조리 기간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
평균 13.2일	평균 4.6주 (약 32.2일)	평균 8.3주 (약 58.1일)

주: 2017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2018년에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미발간, 2019 발간예정), 내부자료(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산모실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미만 50.3%로 가장 많았고, 4-7시간 34.6%, 8-11시간 11.5%, 12시간 이상은 3.6%에 불과하였다. 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2(산후조리원의 평가)에서는 모자동실의 비율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생애초기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모자동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으나, 일선 현장의 모자동실 상황은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 표 III-1-11 ■ 신생아가 산모실에 머무는 시간

단위 : 개소, %

구분	계	4시간 미만	4-7시간	8-11시간	12-23시간	하루 종일
산후조리원 수	584	294	202	67	18	3
비율	100.0	50.3	34.6	11.5	3.1	0.5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은 <표 III-1-12>과 같다.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013년 203만원에서 매해 점차 증가하여 2018년 6월 기준 24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서울이 평균 321만원으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 299만원, 울산 248만원, 경기 247만원, 대전 246만원 순이었고, 200만원 미만인 지역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으며, 전북이 15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1-12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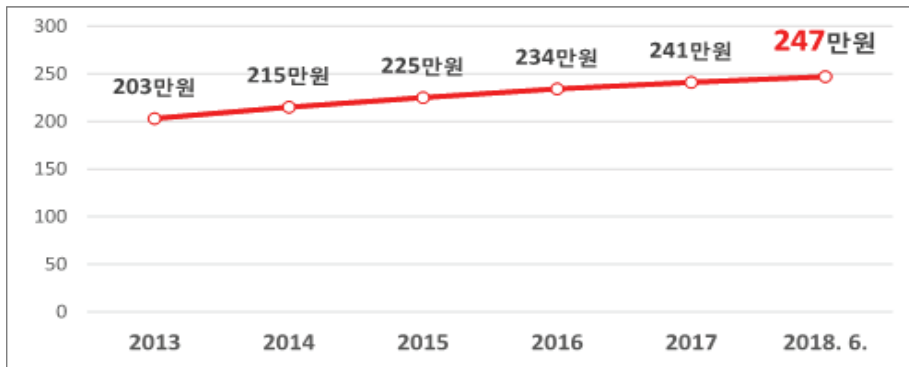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203	254	154	192	175	200	208	227	270	199	170	153	226	143	167	175	157	162
2014	215	284	169	183	183	200	213	211	270	208	182	171	217	151	165	175	159	168
2015	225	297	174	193	193	182	223	216	200	221	186	183	226	156	167	175	166	172
2016	234	314	163	209	202	190	219	224	200	231	197	185	222	157	146	183	169	188
2017	241	317	182	202	208	200	239	214	265	239	203	179	233	153	167	188	184	195
2018. 6.	247	321	185	218	219	225	246	248	299	247	214	173	231	150	167	188	188	197

주: 2018년은 6월 기준, 2주, 일반실 기준(실별 요금차이가 있는 경우 높은 금액으로 계산)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그림 III-1-3 연도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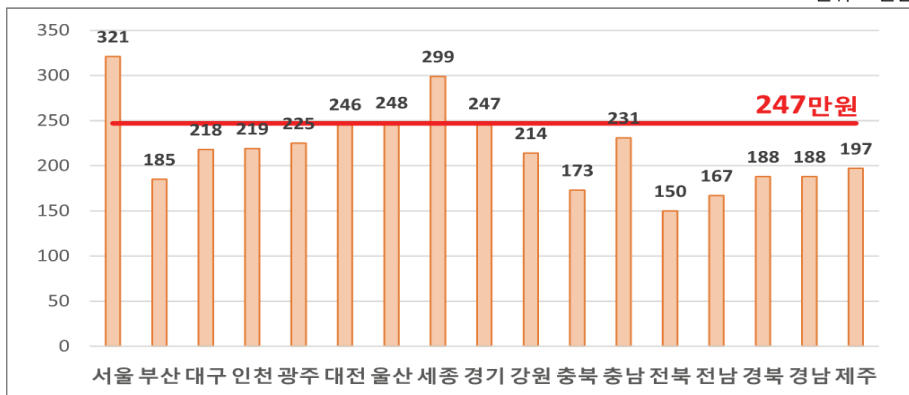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그림 III-1-4 2018년 지역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단위 : 만원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6)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및 감염발생 현황

산후조리원의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은 다음 <표 III-1-13>과 같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위반내용은 153건이며, 건강진단 미실시 63건, 이송사실 미보고 41건, 인력 기준 위반 34건 순으로 매해 주로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위반건수가 주효하다.

■ 표 III-1-13 ■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인력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이송 등 필요조치 위반	이송사실 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이수	건강 기록부 미기록	기타
2013년	84	32	3	3	16	16	8	2	4
2014년	88	26	13	0	17	26	4	1	1
2015년	123	32	6	2	24	41	5	7	6
2016년	113	27	2	3	35	27	2	4	13
2017년	153	34	3	1	41	63	2	4	5
2018년 6월	101	19	4	1	23	36	3	4	11

주: 위반내용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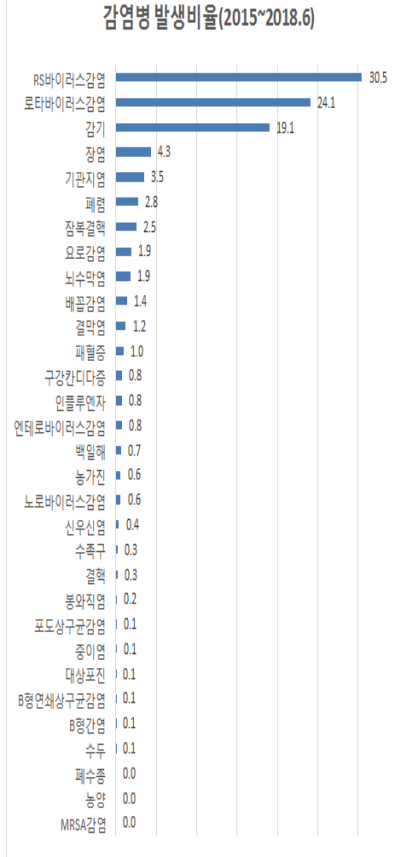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현황은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8년 6월까지 누적하여 살펴보면, RS바이러스 감염이 30.5%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24.1%, 감기 19.1%, 장염 4.3%, 기관지염 3.5%, 폐렴 2.8%, 잠복결핵 2.5%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 산후조리원 감염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13	'14	'15	'16	'17	'18.6	
소계		56	88	414	489	491	385	
장 관 계 진 환	로타바이러스감염	17	20	78	138	142	70	
	노로바이러스감염	3	0	2	0	8	1	
	엔테로바이러스감염	0	5	3	11	0	0	
후 출 기 계 실 환	장염	1	2	21	31	18	7	
	RS바이러스감염	3	0	124	54	138	226	
	감기	13	36	70	120	106	43	
	인플루엔자	0	0	1	1	8	4	
	기관지염	3	9	10	30	19	4	
	중이염	0	0	0	1	1	0	
	결핵	0	0	5	0	0	0	
	잠복결핵	0	0	45	0	0	0	
	폐렴	4	7	20	16	8	5	
	백일해	0	0	12	0	0	0	
	수두	0	0	1	0	0	0	
	기 타 질 환	결막염	0	0	0	11	5	6
		수족구	0	0	0	4	0	1
뇌수막염		2	0	7	20	6	0	
MRSA감염		0	2	0	0	0	0	
농가진		3	2	0	3	5	3	
배꼽감염		3	0	5	9	10	1	
요로감염		1	1	6	16	7	5	
신우신염		1	1	1	5	1	0	
봉와직염		0	1	1	0	2	0	
농양		1	0	0	0	0	0	
B형간염		0	0	1	0	0	0	
B형연쇄상구균감염		0	0	0	1	0	0	
포도상구균감염		0	0	1	1	0	0	
패혈증		1	1	0	13	3	2	
폐수종		0	1	0	0	0	0	
구강칸디다증		0	0	0	3	4	7	
대상포진		0	0	0	1	0	0	



주: 1) 산모 감염 : ('13) 1건, ('15) 3건, ('16) 42건, ('17) 65건, ('18) 26건  
 2) 종사자 감염 : ('15) 7건, ('17) 5건, ('18) 5건  
 3) '13 ~ '14년 현황은 '15년에 파악한 자료임,  
 4) 보고대상 확대 : 2013~2014 '입원', 2015~2017 '입원+외래'  
 자료: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 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 1)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근거 및 운영기준

산후조리원 일반 현황에 이어 여기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15조 17의 '지방자

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수요와 공급실태를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운영기준으로, 감염 및 안전관리의 대책, 모자동실 설치와 운영,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내용을 두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표 III-1-15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모자보건법

<p>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lt;개정 2017. 12. 12.&gt;</p> <p>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7. 12. 12.&gt; [본조신설 2015. 12. 22.]</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인출일: 2018. 11. 28.)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6 및 별표 2의2에 나타나 있다. 감염관리와 관련해서는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관리계획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고, 종사자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의 대응과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모자동실의 운영과 취약계층의 우선이용도 강조한다. 임신부실은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임신부에게 알리고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등의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우선 이용하도록 조치하거나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

이처럼,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각 지역의 수요와 실태를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운영 시 감염과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하여 모이애착을 높여야 하며, 취약계층을 우선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성을 갖추어야 함이 요구된다.



표 III-1-16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기준

구분	운영 기준
감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 예방, 감염 발생시 대응, 안전교육 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li> <li>• 산후조리원 내 감염전파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평가 및 개선활동</li> <li>• 종사자에 대한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li> </ul>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예방, 대응, 안전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li> <li>•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li> <li>•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li> </ul>
모자동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li> <li>• 입소전 임산부에게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됨을 미리 알리고, 준수사항 등을 교육</li> </ul>
이용자부담 및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가능하나,</li> <li>• 아래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li>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li> <li>-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li> <li>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li> </ul> </li> </ul>
행정적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li> </ul>
실태조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7조의6 관련 별표2의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 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018년 11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7개이다(2019년 2월 개소예정인 전남 완도 공공산후조리원 포함). 여기서는 개소 중인 완도 공공산후조리원과 휴업 중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5개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때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와 조리원 관계자와의 간

담회시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운영현황을 제시하고 해석하였음을 밝혀둔다.

전남지역에는 2015년에 설립된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2018년도에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였으며, 2019년 2월 개소예정인 완도 공공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하여 전라남도 내에 총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어 있다.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라남도로부터 해남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진의료원, 완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완도대성병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해남과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실 10실을 갖추고 있으며, 완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6실에 장애인전용 1실을 두고 있다. 이용요금은 전남지역 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공통적으로 2주 이용시 154만원으로, 2015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의 전국 평균인 240만원(2주간)보다 훨씬 저렴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자,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5·18유공자 등은 이용요금이 경감되어 총 이용요금의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설립비용을 대어 해남병원의 건물을 증축하여 병원 부설의 형태로 운영되며, 전라남도에서는 산후조리원 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간호사 월200만원, 간호조무사 및 기타 직원 월100만원). 해남병원 의료진이 1일 1차례 조리원에 와서 산모 및 신생아 상태를 모니터 해주고, 외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산모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은 병원의료진과의 연계도 활발하고, 외부의 지원도 있으며, 선구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의 모델로 알려져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평균이용 산모수가 8명으로 산모실 10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정상으로도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실무자들의 압박이 크다.

다음으로, 제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에 설치되었다. 서귀포시의 위탁을 받아 서귀포의료원이 운영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을 통해 서귀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모실 14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과 동일하게 154만원이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기준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 등은 50% 할인된 77만원에 2주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가까운 거리에 추가로 설립하면서, 이용률이 저하되고 경영의 어려움이 커졌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출산한 산모의 이용률이 높으나, 감면대상인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산모들은 신규 설립된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산후조리원 직원은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되어 있어 인력안정성이 떨어지며, 현재 서귀포의료원이나 보건소의 지원은 소극적이고,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삼척의료원이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아 병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척의료원은 독립된 건물을 여성소아청소년 진료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을 한 건물에서 함께 운영한다. 산후조리서비스와 관련한 의료서비스가 원스탑으로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3인실을 두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180만원이나, 삼척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는 삼척시에서 조리원 이용료를 100% 지원해준다.

산후조리원의 직원은 모두 삼척의료원 소속 직원이며, 산후조리원의 건강관리 책임자가 조리원의 실무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운영은 삼척의료원의 간호과와 공동으로 관리된다. 삼척의료원의 의료진은 산후조리원의 교육에 참여하고, 산후조리 과정에서 필요시 활발하게 연계된다.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현재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삼척시내 분만 가능한 의료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의해 삼척의료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되고, 여성,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 산후조리시설이 독립된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의 경우 1년 이상 삼척거주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소 이상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2017년 평균 이용자수가 7.4명으로 정원(산모 13명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적자 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부족분을 의료원의 다른 영역에서 충당하고 있다.

서울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시 송파구로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된다. 산모실 24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송파구

민일 경우 190만원이나, 타지역의 경우 10%가 추가되어 209만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자의 경우 이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며,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저소득 다문화 가구, 저소득 한부모 등은 20%를 감면해준다.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위치하는데, 이 센터는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뿐 아니라, 예비부부와 임산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전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신, 출산, 육아 중심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공실이 없고 이용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산모의 부담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산후조리원 전체 예산의 60~65% 에 지나지 않는다.

표 III-1-17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단위 : 명, 만원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모자 동실 이용 기간	1일 평균 영유아 수	종사자 수	시설규모		이용요금 (만원)	비고 (지원대상 등)
									시설	임산부실		
1	전남 해남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5.9	위탁	해남 병원	4시간 미만	8	11	병원 내 4층	10실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산모: 이용료 70% 지원</li> </ul>
2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18.5	위탁	강진 의료원	4시간 미만	-	-	의료원 내	10실	154	
-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19.2 예정	위탁	완도 대성 병원	-	-	-	-	6실 (장애인 전용1실)	-	
3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3	위탁	서귀포 의료원	8~11 시간	8.2	14	1층 단독 건물	14실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대상 50% 할인</li> <li>서귀포의료원을 통해 서귀포보건소 관할로 운영됨</li> </ul>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모자 동실 이용 기간	1일 평균 영유아 수	종사자 수	시설규모		이용 요금 (만원)	비고 (지원대상 등)			
									시설	임산부 실					
4	충남 홍성군	홍성 의료원 부설산후 조리원	'13.4	직영	충남 홍성 의료원	휴업중 (2017. 11.17 ~2018.11.16.)			의료원 별관 1층	14실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째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81만원, 둘째아: 소득무관 81만원 지원</li> </ul>			
5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 건강증진 센터산후 조리원	'14.3	위탁	송파구 시설관 리공단				8~11 시간	25.3	41	지상 3~5층	27실	190 (타구민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상출산 30%감면</li> <li>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 저소득한부모 등 20% 감면</li> </ul>
6	강원 삼척시	삼척 의료원 공공산후 조리원	'16.2	직영	강원도 삼척 의료원				4시간 미만	8.8	13	의료원 별관 3~ 4층	13실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척시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무료</li> </ul>

주: 1) 이용요금은 2주 일반실 기준  
 2)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전남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5·18유공자 등  
 4) 서울송파구만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민간산후조리원 없는 지역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과 환경적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환경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물론,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산후조리원은 공통적으로 산모·신생아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 병원 등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었으며, 초기 설립시 설치비용의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달해주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방식은 조리원 마다 매우 다양했다. 지자체들은 산후조리원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전남지역), 이용자 부담의 경감부분을 채워주기

도 하며(강원 삼척), 지자체의 특정한 지원이 없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제주 서귀포).

둘째, 운영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이용대상의 측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용요금이 일반시장의 산후조리원보다 다소 낮아데다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20%에서부터 70%까지 낮추어 부담을 경감시켰다. 일부 조리원(강원 삼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산모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그 지역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들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다. 공공산후조리원들의 적자운영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과 공공산후조리원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 출산가능연령대의 분포가 낮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는 조리원 개별적인 경영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처한 사회환경적 조건을 인식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공공의 지원을 공고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갈등구조가 예상된다. 위의 세 번째의 특성과 연동하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면, 일반시장의 산후조리원의 상황 또한 어떠한지 유추할 수 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간의 경쟁은 발생할 것이며, 공공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유리한 상황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들은 이용자 유치를 위해 가격을 공공에 맞춰야하는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목적을 검토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필히 갖추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공과 민간산후조리원 간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

### 가.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근거하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보건복지부, 2018b: 11).

이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일자리창출전략의 일환으로, 2006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다. 정부는 바우처 시스템과 제공기관 등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하여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확대를 꾀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이 시기를 거치며 이용자와 공급량을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2013년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묶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통합 관리하고, 재정지원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 형태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조정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서비스 가격 자율화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다산가정에 한해 서비스기간을 연장하고 서비스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2018b: 12; 조남경, 2016:2).

2018년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예외적으로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일부의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2006년 시작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2006년 사업초기에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에 한해 지원되다가 이듬해에는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이하로 지원범위를 넓혔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시켰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중위소득 80%<sup>10)</sup>이하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12, 37). 실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자는 2012년 52,792명에서 2014년에는 64,065명으로 증가하였으며(조남경, 2016:8) 2017년에는 연이용자수가 79,515명까지 확대되었다<sup>11)</sup>.

▣ 표 III-2-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조정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2014년	2015년	2016 -2018년
지원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둘째아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자료: 보건복지부(2018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12

## 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일에 한하여 일일 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9시부터 18시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에 따라서는, 제공요일, 시간을 변동하거나 이용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초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응급상황, 감염에 대한 정보제공,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케어 관련된 산모교육, 산모의 식사준비나 산모신생아 공간에 대한 청소나 세탁 등의 가사활동이나 정서

9) 예외지원 가능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자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 해당한다.

10)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정해진다. 예로, 기준중위소득 80%는 4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직장가입자 112,792원, 지역가입자 126,195원이다(보건복지부, 2018b: 46).

1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정보공개, 주요통계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인출일: 2018.11.27.)

지원이 포함된다. 이 표준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서비스는 제공기관에 의해 별도로 공개되고 이용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의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등),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달리 책정되는데, 5일에서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나누어지며 세 가지 기간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기간에 따른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표 III-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출산 순위	소득구간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0%이하	5	10	15	510	1,020	1,530	428	714	910
		50~60%이하							407	678	865
		60~80%이하							364	607	774
		80%초과(예외지원)							300	500	637
	둘째아	50%이하	10	15	20	1,020	1,530	2,040	881	1,102	1,248
		50~60%이하							837	1,047	1,186
		60~80%이하							749	936	1,061
		80%초과(예외지원)							617	771	874
	셋째아	50%이하	10	15	20	1,020	1,530	2,040	918	1,148	1,301
		50~60%이하							872	1,090	1,235
		60~80%이하							780	975	1,105
		80%초과(예외지원)							643	803	910
쌍생아	둘째아	50%이하	10	15	20	1,300	1,950	2,600	1,217	1,521	1,724
		50~60%이하							1,156	1,445	1,638
		60~80%이하							1,034	1,293	1,465
		80%초과(예외지원)							852	1,065	1,207
	셋째아	50%이하	15	20	25	1,950	2,600	3,250	1,825	2,028	2,155
		50~60%이하							1,734	1,927	2,047
		60~80%이하							1,551	1,724	1,832
		80%초과(예외지원)							1,278	1,420	1,508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50%이하	15	20	25	2,295	3,060	3,825	2,148	2,387	2,536	
	50~60%이하							2,041	2,267	2,409	
	60~80%이하							1,826	2,029	2,156	
	80%초과(예외지원)							1,504	1,671	1,775	

자료: 보건복지부(2018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가구원수, 태아유형, 출산순위,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등을 확인하여 이용자의 자격을 판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용자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제공기관의 등록에 따라 바우처가 생성된다. 이때 바우처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과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기간에 따라 생성되며, 제공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다.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관리를 담당하며 바우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필요시설과 장비, 인력기준을 갖추고<sup>12)</sup>,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2012년을 기점으로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뀐에 따라 제공기관의 진입이 촉진되었으며, 2012년 259개소였던 제공기관은(조남경, 2016:7) 2017년에는 무려 683개소로 확대되었다<sup>13)</sup>.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의 75%이상 지급해야 하며, 제공기관의 관리·운영비는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b: 82).

12) 구체적으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 있고(시설기준), 통신설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어야하며(장비기준), 기관장 1명, 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이상의 인력이 있어야 한다(인력기준)(보건복지부, 2018b: 78).

1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정보공개, 주요통계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인출일: 2018.11.27.)



표 III-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의 기준가격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가격(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480,000	960,000	1,440,000
	둘째아	10	15	20	960,000	1,440,000	1,920,000
	셋째아	10	15	20	960,000	1,440,000	1,920,000
쌍생아	둘째아	10	15	20	1,220,000	1,830,000	2,440,000
	셋째아	15	20	25	1,830,000	2,440,000	3,050,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15	20	25	2,152,500	2,870,000	3,587,500

자료: 보건복지부(2018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90

또한, 정부는 아래와 같이 제공인력의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

표 III-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자 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참여희망자	총 60시간 (이론 24,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1.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유사부 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한 자 2. 3년 이내 유사돌봄분야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종사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총 40시간 (이론 12, 실기 28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18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102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정부는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수행한다(사회보장정보원 위탁수행). 평가대상은 등록된 제공기관 전체이며(계획에 따라 일부기관은 자체평가 실시 가능), 평가는 5등급(A~D, F)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내용으로는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서비스성과(이용자만족도 포함) 등이 포함된다. 평가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위 10% 기관 및 지난평가 대비 2~3등급 향상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A등급 기관에는 장관 표창 및 현판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기관에는 심화교육과 품질유지점검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는 1:1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우수기관 방문기회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73).

# IV

## 산후조리원 평가

1.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마련
2.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실시
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통한 본 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
5. 요약 및 시사점





## IV. 산후조리원 평가

### 1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마련

#### 가.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항목 마련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산후조리원이 신생아 감염관리와 모자동실 사용의 확대 등의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평가 활성화 및 평가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범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을 점검하여 향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2016)’에서 마련된 산후조리원 평가 초안과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결과보고서(2017)’을 참고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에 따라 수행하게 될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산후조리원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평가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였다.

#### 1) 평가기준개발 위한 연구진 구성 및 운영

산후조리원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2016년과 2017년의 선행연구, 관련법 및 현황조사를 근거로 시범 평가 전 7회의 연구진 및 자문회의(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와 시범 평가 후 간담회를 통하여 평가 과정을 통

하여 평가 기준의 적절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2017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구성, 기본 틀 및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개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표 IV-1-1 참조).

표 IV-1-1 평가기준개발 연구진 구성

구분	성함	직위	소속	비고		
책임	이정림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조미라	부연구위원				
공동	엄지원	연구원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한국모자보건학회 추천		
	손인숙	교수				
	최병민	교수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한국모자보건학회 추천
	김희선	교수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국모자보건학회 추천

##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발에 앞서 산후조리원의 현황 및 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 본 연구의 연구진(육아정책연구소 및 한국모자보건학회)과 더불어 한국산후조리업협회, 2016년과 2017년 선행 연구자들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출산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의료전문가 및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과 자문회의를 지속하였고,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V-1-2 참조).

표 IV-1-2 2018년도 지표 개발회의(연구진 협의,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 포함)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7월 20일	2017년 선행연구자 2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사무관 1인	전년도 시범평가 문의 및 협조 요청 ○ 실무사항 협조 요청 ○ 전년도 연구에 대한 질의 응답 ○ 본 연구에 대한 제언 - 평가의 목적 * 산후조리원의 질 향상 * 공공산후조리원 질적 향상을 통해 이용 확대 * 조사위원의 균질화 * 산후조리협회와 협력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7월 25일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현장 평가 기관 선정 협조 및 평가 지표 수정 관련 회의 참석 등 ○ 산후조리업협회측과 추후 진행되는 시범평가 방향 의견 수렴 ○ 평가 지표 수정 관련 회의 참석 협조 구함.
8월 8일	소아과 교수 1인, NICU 수간호사 1인, 송파구보건소 3인, 송파공공산후조리원 2인, 2017 책임연구자 1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후조리업협회 2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3인	송파공공산후조리원 탐방 및 자문회의 ○ 송파공공산후조리원 현황 파악 ○ 자문회의 - 병원에서 분만 시점부터의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강조 교육 - 보건복지부의 사전 홍보의 필요성 - 복지부의 모유수유, 모자동실 공익 광고 활용 - 평가 전 사전 교육 필요 - 공공과 민간산후조리원의 가치관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준 제시 - 국가적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필요 - 공공송파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지침서 확인 필요
8월 10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인	○ 착수보고 ○ 연구제목 변경 ○ 보고서 목차 논의 ○ 평가지표 개선 방향 - 감염관리, 모아애택, 산모정신건강, 기관경영 ○ 현장 평가 목적 및 현장평가 기관 선정 범위 ○ 2018년 연구 vs 향후 현장 평가 연구
8월 23일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 산후조리업협회 1인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수정 ○ 시범평가 일정 논의 - 시범평가 기관 선정 - 시범평가 기관 대상 원장 워크숍, 조사위원 교육 일정 논의 - 현장평가 실시: 10월 1일 ~ 10월 12일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수정 관련 논의 - 평가 지표의 전반적인 변화 - 평가지표의 항목별 논의
8월 27일	산후조리업협회 1인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현장 타당성 검토
8월 29일	소아과 교수 1인, 산후조리원 원장 1인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및 매뉴얼 확정 ○ 2018년 8월 27일 안건 확정 ○ 자문 제안 - 산후조리원 건강책임자 - 2017 연구진: 해당 용어 검토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대상기관 및 교육 일정 확정 * 산후조리원 현장관찰자 모집 및 교육일정 확정

#### 나. 평가항목별 추가 및 삭제사항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2017년, 2018년 시범 평가 전 논의된 평가 항목별 추가 및 삭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V-1-3, 4 참조).

표 IV-1-3 2017년, 2018년 시범평가 전 평가기준 항목분류

항목		2017년 평가기준	2018년 평가기준 (시범평가 전)
항목 분류	대영역	6	6
	중영역	14	15
	소영역	29	30
	평가항목	98	99
	시범 평가 항목	2	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기준 항목 축소</li> <li>○ 감염관리, 모아앶착, 산모건강관리, 부모교육 강조</li> <li>○ 경영관리 추가</li> <li>○ 산후우울증 평가 추가</li> </ul>

표 IV-1-4 2017년, 2018년 시범평가 전 평가기준 수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수정	논의 사항
2017년 평가기준	2018년 평가기준 (시범평가 전)	
[인력전문성]		
2.2.2 종사자교육 계발	산후조리업자 필수 교육: 직원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매년 총 2시간	○ 소방교육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와 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이 2.2.2와 4.4.2에 중복되어 구분하여 평가
[시설적정성]		
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 적절한 거리(60cm 이상)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에 적합하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요람과 요람 사이의 거리를 60cm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li> <li>○ 모자보건법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li> <li>○ 추후 학술적인 근거 마련 필요</li> </ul>
[시설안전성]		
4.4.2 소방안전관리	연 1회 이상 소방 훈련 실시	○ 산후조리업자가 종사자인 직원에게 연 1회 소방교육 실시
[질관리]		
6.1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평가항목 4개	평가항목 5개 6.1.2 시범 기준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인력 현황으로 평가 불가능</li> <li>○ 평가 항목의 단계적 추진 고려</li> </ul>
[경영관리]		
평가 항목 없음	7.경영관리 7.1 리더쉽 및 조직문화	○ 경영 관리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두
[감염예방관리]		
8.1.2 만 필수 나머지 항목은 정규	8.1.1, 8.1.2, 8.1.3, 8.1.4, 8.1.5 모두 필수 기준으로 분류	○ 감염 관리 예방에 대한 필요성 대두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수정	논의 사항
8.3.1 세탁물 관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적용	오염세탁물 또는 의료기관 세 탁물이라는 용어 삭제하고 일 반폐기물로 변경	○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폐기 물이라는 용어 삭제
[산모 돌봄서비스와 및 부모 교육]		
10.1 산모건강상태	산모교육에서 부모 교육으로 명칭 변경 산후우울증 항목 추가(재원 중 1회 이상) 평가항목 3개	○ 신생아 돌봄과 산모의 건강 상 태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교육 강조 ○ 모자동실과 모유 수유를 권장함 으로써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방안
11.1 모아애착 정규 기준 121 부모 교육 정규 기준	모두 필수 기준으로 수정 아버지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 인한다.	
[신생아 돌봄서비스]		
13.1.2 신생아 식별 정보 최소 2가지 이상의 인식표	최소 2가지 이상의 인식표	○ 신생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팔찌나 발찌의 인식표 필요 ○ 신생아 인식표 보건소의 일괄적 배포 고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2017년, 2018년 시범 평가 전 논의된 평가 항목별 추가 및 삭제된 지표의 구체적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V-1-5 지표 개발회의(2018. 8. 23)를 통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구분	2017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평가 지표의 전반적인 변화	
* 필수지표가 늘어났으나, 일부 평가 지표 문항은 기존 보건소 점검 결과로 대체하여 현장에서 필요 서류 구비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과 현장관찰자 모두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삭제 문항도 있음.	
* 복지부와 의 논의를 통해 추가한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음.	
1) 경영지표 포함	
2) 산모교육을 부모교육으로(아버지교육 포함) 확대	
3) 산후우울증 평가 포함	
평가 지표의 항목별 논의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인력적정성	- 법정인력 기준 준수는 보건소 관리결과를 확인하기로 함. - 보건소 년 4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인력적정성의 법적 기준 가능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1 시설적정성	- 3.1.2의 신생아 요람 간격 규정(60cm)은 삭제 - 현 60cm 규정은 1인당 병상간격을 고려한 것이나 병원의 신생아실도 60cm가 안됨. 그렇다면 1인당 1.7m <sup>2</sup> 는 어떻게 포함시키나 하는 문제는 법적인 시설 기준으로 확인 가능함





구분	2017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의 경우 필수로 표기되지만, 조사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문서에는 이미 확인된 다른 서류로 대체가능함을 명시함</li> </ul>
<p>Ⅲ. 운영과 질 관리</p>	
<p>5.3 문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3과 5.3.4를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로 통합 변경함. 실제 대출, 열람, 반납에 대한 사례들이 거의 없음. 산모가 산생아 건강관리기록부를 요구할 때 보여주는냐의 여부 정도인데,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움.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지 정도로 확인함</li> <li>- 5.3.1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문서에 대한 규정 강화 필요</li> </ul> <p>7.1. 재정투명성 및 조직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방식과 원장의 리더쉽 및 철학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포함시킨 항목임. 복지부의 요청 사항</li> <li>- ‘7.1. 원장의 리더쉽과 조직문화’로 넣고, 평가항목은 7.1.1. “원장은 운영지침에 대한 철학이 있다.”로 바꾸는 것으로 함. 더 적절한 멘트를 연구진이 찾아보기로 함.</li> <li>- 원장과 인터뷰로 확인하는 것으로 함.</li> <li>- 즉, 7.1.2 직원과의 의사소통은 간담회 실시, 직원채용 과정 등을 원장님과 의 인터뷰로 확인하거나, 7.1.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역시 직원 교육 등에 대해 원장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임.</li> <li>- 이 주제로 원장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원장 스스로에게도 경영철학과 방식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음</li> </ul>
<p>Ⅳ. 감염예방관리</p>	
<p>7.1 손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위생과 관련된 하부 항목은 모두 필수로 전환하기로 함.</li> <li>- 손위생의 경우, 정식으로는 시점과 적절성(손씻는 시간양)을 모두 포괄해야 함.</li> <li>- 신생아실 입구에 손씻기 시설이 있어야 하며(대부분 비누로), 불가능할 경우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할 것을 명시함. 비누나 손소독제 모두 가능. 현재 적절성의 부분, 즉 손씻는 시간, 양까지 명시하기 어려움.</li> <li>- 비누 또는 손소독제로 허용. 단, 비누는 고체가 아닌 액상으로, 손소독제는 알코올의 함유가 60% 이상. 식약처에 등록된 것을 사용할 것으로 명시.</li> </ul>
<p>7.2 개인보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보호구는 마스크로 보면 됨</li> </ul>
<p>7.3 세탁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세탁물(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오염. 예: 혈액, 똥기저귀)과 일반세탁물을 구분하는 내용임</li> </ul>
<p>7.4 물품 소독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2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항목은 삭제하기로 함</li> </ul>
<p>7.5 환경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 활동은 청소, 소독을 포함함</li> <li>- 쓰레기통은 발로 여는 것으로만 사용함. 이는 항목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규정에 포함시켜야 함</li> </ul>
<p>7.7. 종사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7.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결핵(가슴사진),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감염성피부질환, 백일해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li> </ul>
<p>8.1 감염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관리 하부 항목은 모두 필수로 전환하기로 함.</li> <li>- 8.1.2. 감염병 발생시 지침에 따라 조치 지표는 보건소 측에 확인하기로 함. 보건소에는 이송의 시점 등이 기록되어 있음(48시간 이내 즉시 이송조치), 보건소는 감염관리 외에도 모자동실, 급식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음. 복지부에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받아야할 항목들을 미리 받아서 조사위원에게 드리는 것으로. 이는 필수지만, 보건소 자료로 대체하는 것임.</li> </ul>

구분	2017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 수정내용
V. 산모 돌봄서비스	
9.1 산모건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의 지표는 건강기록부로 되어 있음.</li> <li>- 9.1.3 산후우울증 항목은 추가. 규정만 있으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할 것임.</li> </ul>
10.1 모야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 지표는 필수로 변경</li> <li>- 10.1.1 모야애착을 위한 계획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li> <li>- 10.1.2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은 어떻게 수행하나? 교육여부와 산모실 이용 시간으로 평가 가능함. 따라서 10의 지표를 필수로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음.</li> <li>- 평가지표의 모자동실 이용시간의 기준은 8시간이 나올 듯. 현장방문 결과 (100% 모유시간을 지향하는 기관인데도) 12시간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li> <li>- 10시간 이상이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함(점수로 표기하므로 가점가능. 상중하, 유무에도 점수 있음)</li> <li>- 현실을 고려하되, 목표는 모야애착을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 함. 모자동실의 유익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임.</li> </ul>
11.1 산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를 '부모'로 확대·변경함. 산후조리원이 육아학교의 역할을 해야 하기 에 필수로 변경</li> <li>- 11.1.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로 변경</li> <li>- 11.1.2 '부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로 변경. 산모만 해당하지 않음. 금연교육 등이 필요</li> <li>- 11.1.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로 변경</li> <li>- 'V.산모 돌봄서비스'를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으로 영역명도 변경</li> </ul>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2.1 신생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 지표의 규정에서 신생아 식별방법은 팔찌, 발찌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바꾸고('두 개 이상의 팔찌와 발찌'), 식별기준에 몸무게는 적합지 않으니 삭제하기로 함. 그리고 네임스티커(싸개)는 참조사항임. 즉, 규정에서 몸무게와 네임스티커를 삭제하면 됨.</li> <li>- 현재 현장에서는 신생아 전달 과정에서 매번 팔찌 또는 발찌를 확인하지는 않음. 그러나 신생아전달시 아기의 팔찌 또는 발찌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신생아가 바뀌는 사고 방지)</li> <li>- 조사위원들이 부모에게 '아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조리사들이 부모에게 아기를 전달할 때 인식표 확인을 하는지 보아야 할 것임.</li> </ul>
14.1 신생아 위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에 제시된 7가지 항목 확인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li> <li>- 기준은 "재원 중 1회 이상해야 함"으로 결정. 이는 이상시 분 아니라 건강한 신생아도 1회 이상은 확인하도록.</li> </ul>
14.2 신생아 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의 모유수유실의 기능은 무엇인가? 없어도 되지 않나?</li> <li>- 법에서 모유수유실을 갖추게끔 명시되어 있음. 물론 산모실에서 모유수유가 가능하면 없어도 된다고 추가조항이 있음. 그러나 모유수유교육을 할 때 모유수유실이 필요할 수 있음. 산모실에서 1:1 교육이 부담스러운 현장에서는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모유수유실을 이용함. 일부 산모는 산모실에 타인이 출입하는 것을 꺼리기도 함</li> <li>- 모유수유실은 "애착형성을 방해한다 VS.산모들의 우울감을 없애는 네트워크의 기회다"</li> <li>- 모야애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10.1.3.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에 지향성을 담기로.</li> <li>- 14.2.2 병장/병동 중인 모유를 '적절하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로 수정. 산모실의 병동/병장실이 아니라 모유보관을 위한 병동/병장실이 따로 있어야 하고, 모유에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함</li> <li>- 14.2.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는 것은 신생아를 안아서 수유를 실시한다는 의미로 2016년 지표로 담은 것임.</li> </ul>



표 IV-1-6 지표 개발회의(2018. 8. 27)를 통한 평가기준 현장 타당성 검토내용

구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현장 타당성 검토내용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 인사관리, 직원교육 규정(안) 확인 검토 - 직무기술서, 직원교육연간계획서, 근무교대규정은 산후조리업협회 서식 요청하여 작성하기로 함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 낙상예방(연구진 작성) 확인 검토 - 문서관리 규정은 작성중 - 신생아요람 간격 관련 2016년 연구진 자문 검토. 결과적으로 적정거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로 함. - 소방안전 직원교육은 인력전문성의 종사자 교육개발과 중복되어 삭제함
III. 운영과 질 관리	
	- 입퇴실 관리, 의료기관 이송 연계, 방문객 관리 규정 확인 검토
IV. 감염예방관리	
7.1 손위생	- 손위생 등 수행에 대한 직접 확인을 위해 일괄 지정된 관찰시간을 갖기로 함 (예: 11:00-12:00).
7.5 환경관리	- 폐기물 처리에 대해 2016 연구책임자 자문 검토
9.1 감염관리	- 감염관리 지침은 평가 전 조리원에 내용을 미리 드려야 할 것임
V. 산모 돌봄서비스	
11.1 모아애착	- 모자동실 이용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10점"의 가점을 주는 것으로 결정
12. 부모교육	- 계획과 실행은 부모교육으로 확대 수정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이수는 따로 항목을 분리하여 평가하기로 함. 따라서 12.1.6의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행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의 평가항목을 추가함. 이것은 여부로만 평가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3.1 신생아 확인	- 인식표와 아기전달시 확인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 추가 논의 필요

표 IV-1-7 지표 개발회의(2018. 8. 29)를 통한 평가기준 확정 및 매뉴얼 검토

구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확정 및 매뉴얼 검토내용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 1.1.법적인력기준 준수의 평가를 유무에서 상중하로 조정. 건강관리인력의 법적기준과 상시근무 간호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상'으로 평가. 건강관리인력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거나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해결한 경우는 '중'으로 평가,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하'로 평가 - 2.1.의 '인사정보관리'의 이전 항목 복귀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 3.1.1의 손씻기 시설의 평가를 유무에서 상중하로 조정. 손씻기 시설이 산후조리원입구와 신생아 입구에 모두 있어야 '상'으로 평가. 2개 시설 중 한 개만 있으면 '중', 모두 없으면 '하'로 평가 - 4.3.낙상예방 안전점검표의 신생아실과 산모실의 문턱 기준 항목 삭제

구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확정 및 매뉴얼 검토내용
III. 운영과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입실시 산모교육 시행 내에 '낙상예방 계획'포함</li> <li>- 5.2. '연계의료기관이 있다' 항목 삭제</li> <li>- 6.1의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와 처리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기로 함</li> </ul>
IV. 감염예방관리	
7.1 손위생	- 손위생 등 수행 확인을 위한 관찰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조사일내 자율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함
V. 산모 돌봄서비스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1 신생아 식별방법의 몸무게는 출생시 몸무게로 변경. 신생아 식별을 위한 인식표는 현장요구 반영(발찌나 팔찌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 큼)하여 기존평가항목 수정하지 않기로. 즉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모두 가능.</li> <li>- 14.1 신생아 위생관리 중 눈위생은 신생아전공 교수 자문 요청</li> </ul>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2016년, 2017년, 2018년 논의된 평가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표 IV-1-8, IV-1-9, IV-1-10 참조).

표 IV-1-8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의 구성

장(Chapter)	범주(Category)	기준(standard)	평가항목	분류
I. 안전체계	5	11	37	
1. 안전보장활동	1.1 산모, 신생아안전	1.1.1 신생아 식별	2	필수(2)
		1.1.2 종사자간 의사소통	2	정규
		1.1.3 낙상예방활동	2	필수(2)
		1.1.4 신생아 안전관리	3	필수(3)
	1.2 직원안전	1.2 직원안전 관리활동	3	필수(3)
1.3 소방안전	1.3 소방안전 관리활동	4	필수(4)	
2. 감염관리	2.1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2.1.1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5	정규-필수(1)
		2.1.2 기구 및 물품관리	3	정규
		2.1.3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	3	정규
		2.1.4 조리장 관리	6	정규
3. 지속적 질 관리	3.1 질 관리	3.1 질 향상 및 만족도 조사	4(1)	정규-시범(1)
II. 지원체계	7	7	24	
4. 경영 및 조직운영	4.1 기관 운영	4.1 기관운영	3(1)	정규-필수(1)-시범
5. 입·퇴실관리	5.1 입·퇴실관리	5.1 입·퇴실 관리	5	정규-필수(1)
6. 인력 및 시설관리	6.1 인적자원관리	6.1 인적자원관리	4	정규-필수(1)
	6.2 직원교육	6.2 직원교육	3	정규-필수(1)
	6.3 설치시설관리	6.3 설치시설관리	2	필수(2)
7. 시설환경 안전관리	7.1 설비시스템	7.1 설비시스템관리	5	정규
	7.2 보안관리	7.2 보안관리	2	정규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장(Chapter)	범주(Category)	기준(standard)		평가항목	분류
Ⅲ. 돌봄서비스체계	4	6		21	정규
8. 돌봄서비스	8.1 건강평가	8.1	건강평가기록	4	정규
	8.2 산모 감염예방과 관리	8.2.1	산모교육	4	정규
		8.2.2	산모 감염위생관리	3	정규
	8.3 신생아 감염예방과 관리	8.3.1	수유관리	5	정규
		8.3.2	신생아 감염위생관리	3	정규
8.4 모야애착	8.4	모자동실 운영	2	정규	
8	16	24		82(2)*	필수:21

\* 괄호( ) : 시범항목 개수

표 IV-1-9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의 구성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분류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4		10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필수(1)
		2.1	종사자 채용·유지	4	필수(1)-정규
	2. 인력 전문성	2.2	종사자 교육·계발	3	필수(1)-정규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2	정규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	4		16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필수(1)-정규-시범
		4.1	설비관리	5	정규
	4. 시설 안전성	4.2	소방안전관리	5	필수(4)-정규
		4.3	낙상예방관리	2	필수(2)
Ⅲ. 운영과 질 관리	2	5		19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필수(2)-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3	필수(2)-정규
		5.3	문서관리	4	정규
		5.4	방문객관리	3	필수(1)-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4(1)	정규-시범
Ⅳ. 감염예방관리	2	8		26	
	7. 감염예방	7.1	손 위생	5	필수(1)-정규
		7.2	개인보호구 착용	2	정규
		7.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2	정규
		7.4	물품 소독·관리	4	정규
		7.5	환경관리	2	정규
		7.6	급식관리	6	정규
		7.7	종사자 관리	3	필수(3)
	8. 감염관리	8.1	감염관리	2	정규
Ⅴ. 산모 돌봄서비스	3	3		11	
	9. 산모 건강평가	9.1	산모건강평가	3	정규
	10. 모야애착	10.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정규
	11. 산모교육	11.1	산모교육	5	정규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3	5		16	
	12. 신생아 확인	12.1	신생아 확인	3	필수(3)
	13. 신생아 건강평가	13.1	신생아 건강평가	3	정규
		14.1	위생관리	2	정규
	14. 신생아관리	14.2	신생아 수유	5	필수(1)-정규
		14.3	안전관리	3	필수(3)
6	14	29		98(2)*	필수 : 26

\* 괄호( ) : 시범항목 개수

2016년과 2017년의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을 토대로, 2018년도 시범평가 전에 구성되었던 산후조리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표 IV-1-10 참조).

【 표 IV-1-10 】 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의 구성(시범평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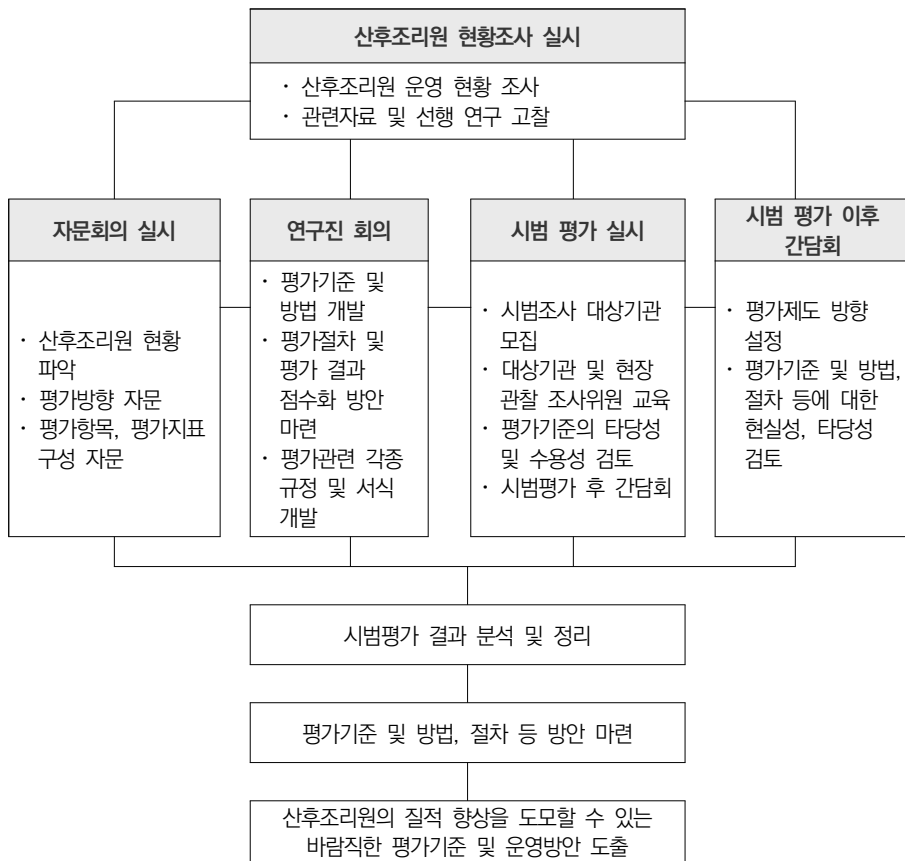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분류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4		10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필수(1)
		2.1	종사자 채용·유지	4	필수(1)-정규
	2. 인력 전문성	2.2	종사자 교육·계발	3	필수(1)-정규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2	정규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	4		15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필수(1)-정규
		4.1	설비관리	5	정규
	4. 시설 안전성	4.2	소방안전관리	4	필수(3)-정규
		4.3	낙상예방관리	2	필수(2)
III. 운영과 질 관리	2	6		21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필수(2)-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	필수(2)
		5.3	문서관리	3	정규
		5.4	방문객관리	3	필수(1)-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5(1)	정규-시범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3	정규
IV. 감염예방관리	2	8		25	
	7. 감염예방	7.1	손 위생	5	필수(5)
		7.2	개인보호구 착용	2	정규
		7.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2	정규
		7.4	물품 소독·관리	3	정규
		7.5	환경관리	2	정규
		7.6	급식관리	6	정규
	7.7	종사자 관리	3	필수(3)	
8. 감염관리	8.1	감염관리	2	필수(2)	
V. 산모 돌봄서비스	3	3		12	
	9. 산모 건강평가	9.1	산모건강평가	3	정규
	10. 모야애착	10.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필수(3)
	11. 산모교육	11.1	산모교육	6	필수(6)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3	5		16	
	12. 신생아 확인	12.1	신생아 확인	3	필수(3)
	13. 신생아 건강평가	13.1	신생아 건강평가	3	정규
		14.1	위생관리	2	정규
	14. 신생아관리	14.2	신생아 수유	5	필수(1)-정규
		14.3	안전관리	3	필수(3)
6	14	30		99(1)*	필수 : 39

\* 괄호( ) : 시범항목 개수

## 다. 평가기준 마련 절차

평가기준 마련 절차는 다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산후조리원 평가기준과 평가 방법은 선행 연구, 관련법 또는 현황 조사를 근거로 2016년 및 2017년 선행 연구의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본 평가를 고려하여 현장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지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그림 IV-1-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마련 절차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의 실무팀 회의, 선행 연구 참여자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2017년도 시범평가 이후에 확정되었던 평가항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2017년도 시범평가 이후의 현장 간담회 내용 및 2016년도와 2017년도

연구 보고서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2017년도 시범평가 이후 확정된 산후조리원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 평가 전 평가 기준, 규정 및 서식에 대해 현장 관찰 조사위원 및 시범평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범 평가 이후 현장 관찰 조사위원과 시범평가 산후조리원 대상의 간담회를 통해 본 평가 연구 목적과 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산후조리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평가기준 마련 절차에 관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IV-1-1>과 같다.

## 라. 평가 관련 규정 및 서식 마련

2017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에서 평가 관련 규정 및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시범평가를 진행하여 규정과 서식과 관련된 항목들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에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에서는 평가시행 전 관련 규정 및 서식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 지표개발 회의(자문, 연구진 회의)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요청이 있었고, 연구 기간이 충분치 않아 일부 지표항목과 관련하여 규정과 서식을 평가 참여기관에 제공하였다.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 평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규정과 서식만을 제공하고, 미리 준비되지 않은 규정에 대한 평가는 일괄적으로 '규정이 없음'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향후 본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에 포함된 모든 규정과 서식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 전 피평가대상자들에게 교부되고 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은 다음 <표 IV-1-11>과 같다. 산후조리원 운영현황에 대한 서식은 2017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표 IV-1-11 |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실시 전에 제공된 규정 및 서식

구분	서식	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기본 정보</li> <li>* 시설 및 이용현황</li> <li>* 인력현황</li> <li>* 종사자관리현황</li> <li>* 소방안전 시설 현황</li> <li>*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li> <li>* 의료기관 이송과 보건소 보고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li> <li>* 직원 관리</li> <li>* 낙상 예방</li> <li>* 산모 입퇴실 관리</li> <li>* 의료기관 이송 연계</li> <li>* 문서 관리</li> <li>* 방문객 관리</li> </ul>
자료원	2017년 시범평가 연구자료	본 연구진 구성 (부록 6.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사례집 참조)

## 2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실시

### 가. 시범평가 목적

시범평가는 개발된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안의 현장적용 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 나. 시범평가 대상기관 및 조사위원 선정

#### 1) 시범평가 대상기관 선정

시범평가 대상 기관 선정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 신청을 받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에 공문발송 후 연구진이 직접 전화로 연락해서 참여 협조를 구했다.

2017년 전년도 연구와는 달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시행하지 않고, 평가위원과 연구진이 현장평가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시범평가 대상은 공공산후조리원 3곳과 신청기관 중에 민간산후조리원에서 특성별로 10개를 선정하였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신규이거나 휴업인 경우를 제외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이 모두 포함되었고, 민간/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과 규모를 고려하여 14개 신청 산후조리원 중에서 10곳을 선정하였다.

▮ 표 IV-2-1 ▮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참여기관

평가방법	대상	지역	참여기관 수
현장평가	공공 산후조리원	-	3개
	민간 산후조리원	서울 3개, 경기 4개, 인천 1개, 경남 1개, 전북 1개	10개

## 2) 시범평가 조사위원 선정

조사위원은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시범평가 기준안에 따라 직접 조사를 실시해야하므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 및 평가·인증조사의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였고, 산욕기의 산모가 입실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여성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평가 경험이 있으면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병원신생아간호사회(10명)와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6명)를 추천받아 조사위원<sup>14)</sup>을 구성하였다. 현장평가 당일에는 산후조리원 현장을 파악하고 원활한 시범평가 진행을 위하여 기준개발 실무팀 위원과 연구진,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이 참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3) 대상기관 및 조사위원 교육

2017년 전년도 시범 평가 이후 산후조리원 원장 및 조사위원의 간담회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평가 실시 전 대상기관 및 현장 조사위원에게 전년도에 비해 수정 보완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규정과 서식 등의 준비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14) 수도권 주요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및 분만실 수간호사가 참여함.

표 IV-2-2 시범평가 교육

구분	내용
교육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에 의거 진행 중인 '산후조리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제도 및 취지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시범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준비사항 등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함</li> <li>○ 현장 조사위원들에게 평가제도 취지 설명,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 함양</li> </ul>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참여기관 및 조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18년 9월 6일(금) 13:00~18:00,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li> <li>- 참석자: 총 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개발 실무팀 위원 3명, 연구진 3명</li> <li>· 시범평가 대상기관 13개소, 27명</li> <li>· 조사위원: 10명</li> </ul> </li> </ul> </li> <li>○ 2차: 조사위원 교육<sup>1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2018년 9월 15일(토) 13:00~16:00,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li> <li>- 참석자: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개발 실무팀 위원 3명, 연구진 3명</li> <li>· 조사위원: 9명</li> </ul> </li> </ul> </li> </ul>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개요, 평가방법 및 준비사항, 평가 방법의 이해</li> <li>○ 교육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 / 시설 / 운영 / 질관리 / 경영관리: 김희선 교수</li> <li>2) 감염예방관리 / 신생아돌봄: 최병민 교수</li> <li>3) 산모돌봄 및 부모교육: 손인숙 교수</li> </ol> </li> <li>○ 질의응답</li> </ul>

#### 4) 평가 관련 서식

##### 가) 산후조리원 운영현황(부록 2 참조)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참여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먼저 작성하여 시범평가를 받기 전에 본 연구진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기본정보, 시설 및 이용현황, 인력현황, 종사자 관리현황, 소방안전 시설 현황,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 및 의료기관 이송과 보건소 보고 현황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양식은 2017년도에 사용하였던 양식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15) 조사위원은 2회의 교육일 중에서 택일하여 참석함

### 나)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보고서(조사위원용 현장평가표 / 부록 3 참조)

조사위원이 시범 평가 이후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평가결과보고서 양식을 조사위원 개인별로 전달하여 현장평가 이후 연구진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범평가 현장평가표, 총평보고서, 항목별보고서를 평가 대상 산후조리원 별로 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보고서 양식은 2017년도에 사용하였던 양식에 준하여 2018년도에 수정·보완되었던 지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다. 시범평가 실시

시범평가는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 민간산후조리원 10개소로 총 1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실시하였고,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과 질 관리, 경영 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총 6개 영역의 99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현장평가는 각 기관별로 조사위원 2명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부 대상기관에는 연구진 또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 1인이 참관인으로 참가하였다. 평가대상별로 조사위원 2인 1조가 방문하여 각 평가지표 항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서면/면접/관찰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V-2-3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개요

구분	내용		
평가기간	2018년 10월 2일 ~ 10월 10일		
조사위원	각 기관별 2인 1조		
평가기준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지표(안): 6개 대영역, 99개 평가항목		
평가양식	참여기관	- 부록2. 별 지제2호 서식, 산후조리원 운영현황표 (사전제출)	
	조사위원	- 평가결과보고서	
평가일 당일일정	시간	장소	일정
	09:00~09:30	회의실	평가팀(평가위원 및 참관위원) 평가계획 등 평가준비
	09:30~10:00	회의실	평가위원 및 평가계획 소개, 산후조리원 소개
	10:00~13:00	회의실	규정 및 문서 검토
	13:00~14:00	-	점심시간
	14:00~17:00	현장	현장조사, 직원면담 등
	17:00~17:30	회의실	평가결과 종합 및 정리
17:30~18:00	회의실	총평	

### 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 가. 운영현황자료 분석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13개소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를 토대로 근무인력 현황,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모자동실 이용현황 및 모유수유 비율을 분석하였다.

##### 1) 근무인력 현황 분석

간호인력 충원의 어려움에 대해 현장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근무인력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표 IV-3-1 참조).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참여기관의 근무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당 1일 간호사 수는 평균 4.1명(공공 4명, 민간 4.2명)이었고, 기관당 1일 간호조무사 수는 평균 11.07명(공공 4.3명, 민간 13.1명)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1개소, 간호조무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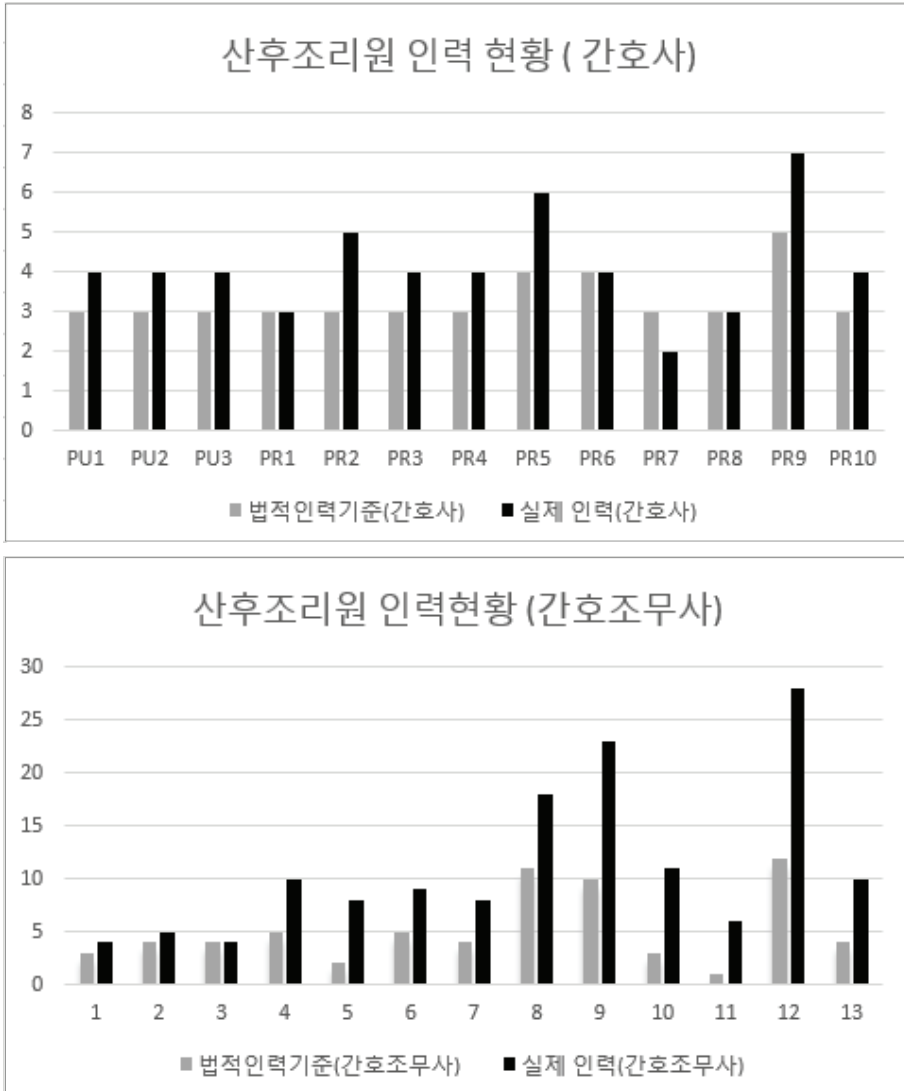
2017년도 시범평가 결과를 참고하자면, 전년도 시범평가 참여기관은 29개소였고, 기관당 1일 간호사 수는 평균 3.7명, 간호조무사 수는 평균 10.8명이었다. 기관 내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5개소, 간호조무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3개소로 나타났다(그림 IV-3-2 참조).

2018년 시범평가 참여기관은 2017년에 실시된 시범평가 참여기관에 비해 비교적 적정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V-3-1 시범평가 근무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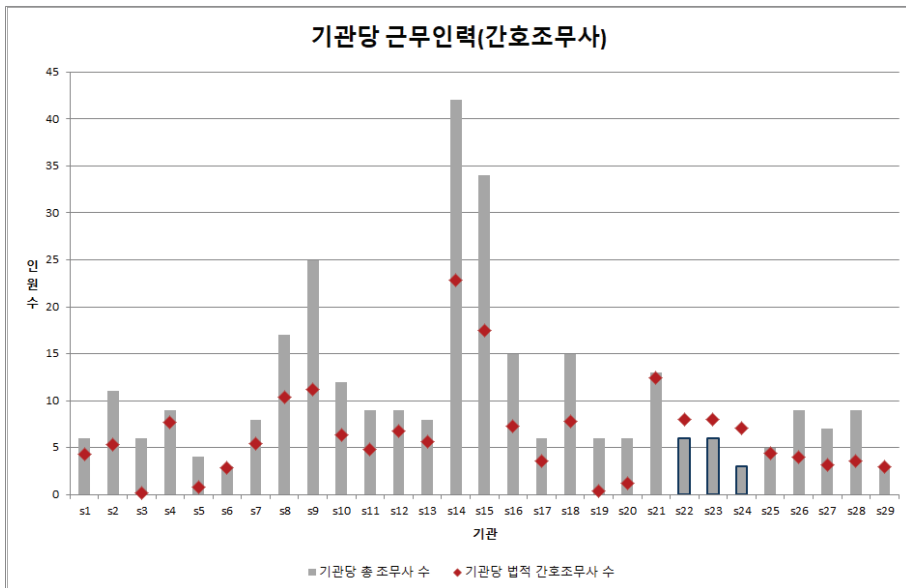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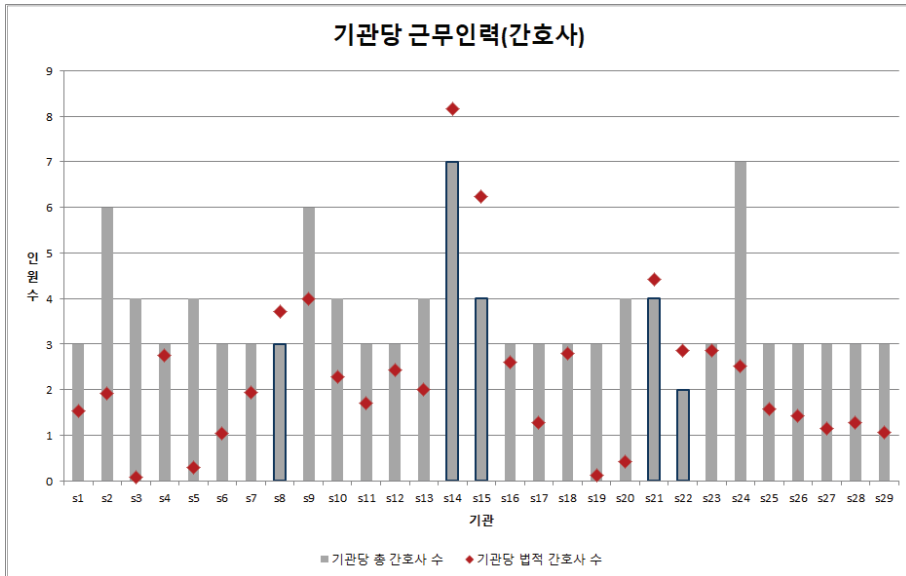
근무인력 현황	2018 시범평가 (본 연구)	2017 시범평가
1일 간호사 수	평균 4.1명 (공공 4명, 민간 4.2명)	평균 3.7명
1일 간호조무사 수	평균 11.07명 (공공 4.3명, 민간 13.1명)	평균 10.8명
전년도 1일평균 입원 영아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	1개소	5개소
전년도 1일평균 입원 영아수 대비 간호조무사 인력 부족기관	0개소	3개소

그림 IV-3-1 2018년 기관당 근무인력과 법적인력 비교(간호사, 간호조무사)



주: PU: 공공산후조리원, PR: 민간산후조리원

그림 IV-3-2 2017년 기관당 근무인력과 법적인력 비교(간호사, 간호조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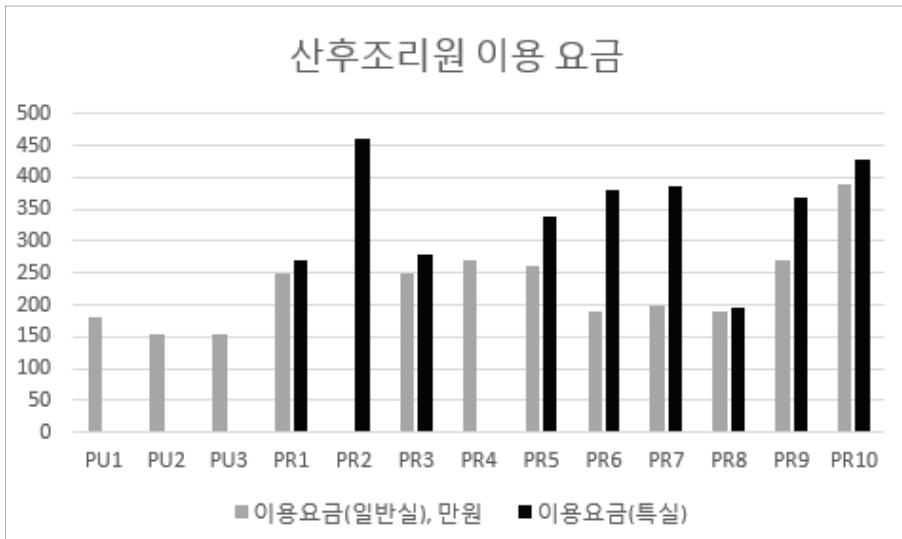
주: 인력산출: 각 기관당 1일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산출하여 막대그래프로 표현함. 그리고 모자보건법 상 인력기준을 기반으로 기관 당 법적인력을 산출하여 그래프에서 마름모로 표현함. 따라서 해당 그래프에서 막대그래프와 마름모 간격이 클수록 해당기관의 법적인력 미충족을 의미함.

자료: 정연아·이운규·이경림(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pp.26-27.

## 2)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참여기관의 이용 요금은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163만원(각각 180만원, 154만원, 154만원),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 평균 252만원, 특실 평균 34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그림 IV-3-3 ■ 2018년 기관별 이용 요금 현황



주: PU: 공공산후조리원, PR: 민간산후조리원

## 3) 모자동실 이용 현황 및 모유수유 비율 분석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동실 제공 노력 권장<sup>16)</sup>으로 모자동실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과 평가기준의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생아가 산모실에 머무는 일평균 시간과, 모유수유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자동실 이용현황 분석 결과는 <표 IV-3-2>, [그림 IV-3-4] 과 같다. 모자동실 일평균 이용시간은 공공산후조리원은 4-7시간이 72.4%로 가장 높았다.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8-11시간이 37.1%로 가장 높았고 4시간 미만이 30.0%로 비교적 높았다. 4시간 미만과 16시간 초과의 경우 공공에 비해 민간이 상대적으로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8.12.27. 국회 본회의 통과)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범평가 참여기관 사후 간담회에서 운영자들의 의견으로 미루어볼 때, 산모들의 휴식 욕구에 부응하여 신생아실 소독시간 정도만 모자동실을 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 산모의 컨디션이 가능하다면 신생아의 생애초기 건강 발달을 위해 입실 시부터 모자동실을 강조하는 기관도 있어 민간 산후조리원은 운영철학에 따라 모자동실 운영 양상이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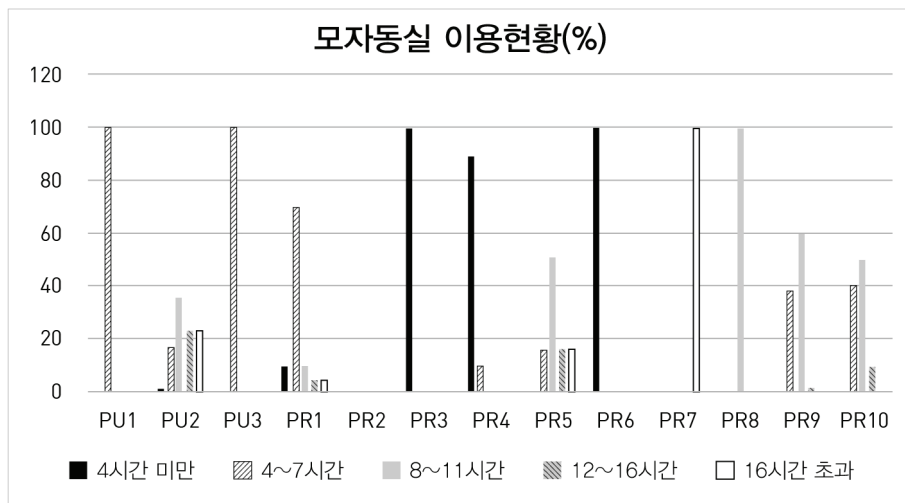
2017 시범평가에서는 4시간 미만이 47.5%로 가장 높았고, 4-7시간 34.4%, 8-11시간 10.6%순으로 모자동실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해당기관이 더 많았다.

표 IV-3-2 모자동실 일평균 이용시간

단위: %(개소)

구분	2018 시범평가			2017 시범평가
	공공+민간	공공	민간	
4시간 미만	23.2	0.3	30.0	47.5
4-7시간	30.1	72.4	17.3	34.4
8-11시간	31.3	12.0	37.1	10.6
12-16시간	4.3	7.7	3.3	4.1
16시간 초과	11.1	7.7	12.1	0.4
계	100.0(13)	100.0(3)	100.0(10)	100.0(29)

그림 IV-3-4 2018년 모자동실 이용 현황



주: PU; 공공산후조리원, PR: 민간산후조리원

수유는 혼합수유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다(표 IV-3-3, 그림 IV-3-5 참조). 공공 산후조리원은 혼합수유 68.9%, 완전모유 24.6%, 인공(분유) 6.5% 순이고, 민간 산후조리원은 혼합 51.8%, 완전모유 41.8%, 인공(분유) 6.4%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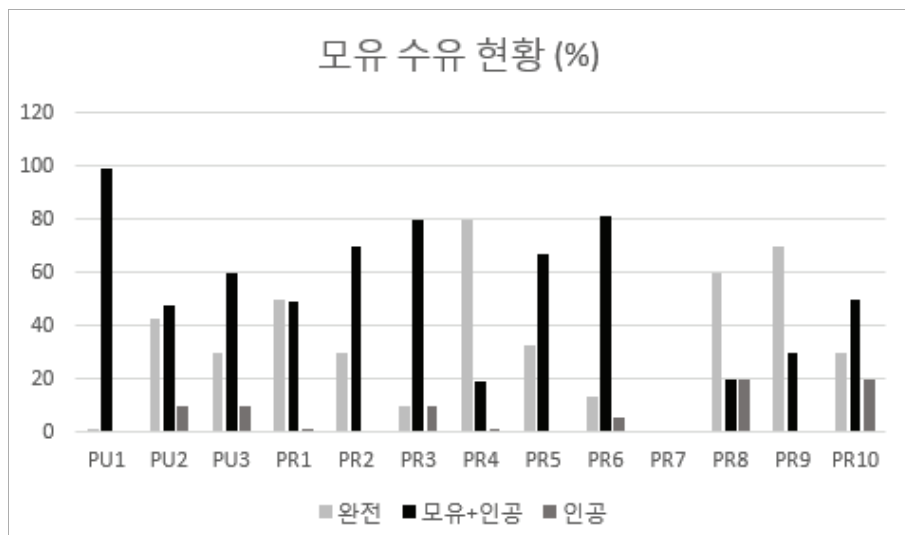
2017년 시범평가에서는 혼합수유가 71.0% 가장 높았다. 2018년 시범평가에 참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산모는 완전모유가 41.8%로 비교적 높은 반면 오히려 공공산후조리원 산모는 24.6%, 2017년은 26.7%로 나타났다.

표 IV-3-3 수유 비율

단위: %(개소)

구분	2018 시범평가			2017 시범평가
	공공+민간	공공	민간	
완전모유	37.5	24.6	41.8	26.7
혼합(모유+인공)	56.1	68.9	51.8	71.0
인공(분유)	6.41	6.5	6.4	2.3
계	100.0(13)	100.0(3)	100.0(10)	100.0(29)

그림 IV-3-5 2018년 모유수유 이용 현황



주: PU: 공공산후조리원, PR: 민간산후조리원

## 나. 시범평가 영역 및 항목별 평가 결과

### 1) 영역 및 항목별 평가결과

현장평가결과를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법인산후조리원 2가지로 나누어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IV-3-6, 그림 IV-3-7, 그림 IV-3-8 참조).

현장평가는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와 민간/법인산후조리원 10개소를 평가하였다. 참여기관의 수가 달라 공공과 민간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평균 8.2점,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이 평균 6.9점으로 1.3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여러 영역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V-3-6 ■ 민간/법인 산후조리원 소영역 항목 점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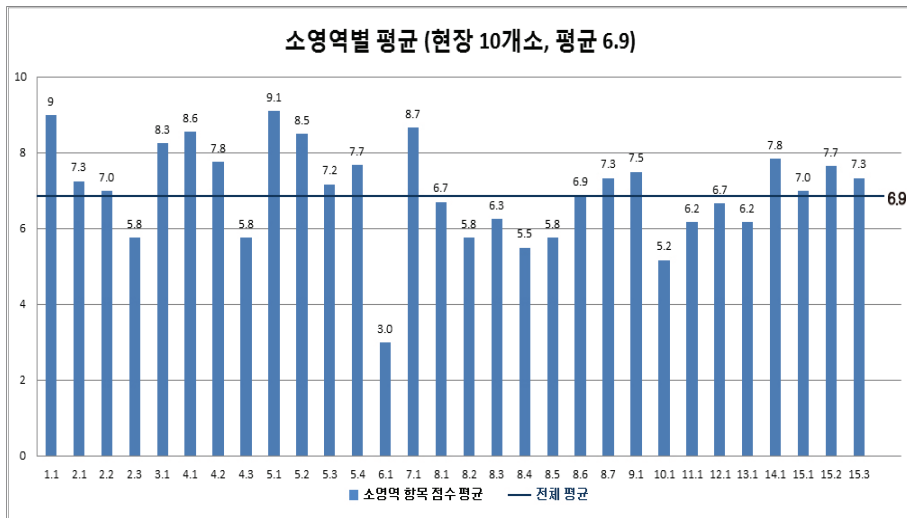


그림 IV-3-7 공공 산후조리원 소영역 항목 점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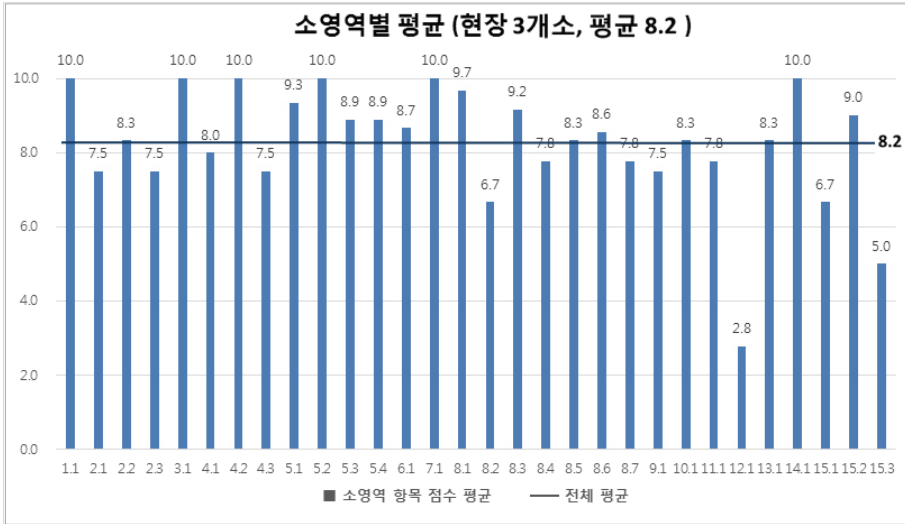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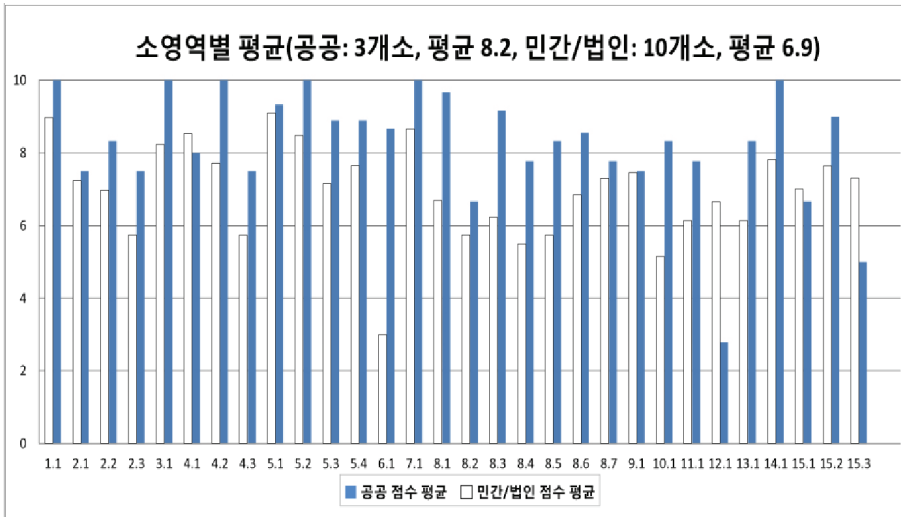


그림 IV-3-8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항목 점수 평균 비교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의 경우에 인력적정성, 종사자 채용 유지, 종사자교육개발, 시설적정성, 설비관리, 소방안전관리, 입퇴실 관리, 의료기관 연계 이송, 문서 관리, 방문객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 급식관리, 종사자 관리, 감염관리, 위생관

리, 신생아 건강평가, 위생관리, 신생아 수유, 안전관리 평가지표에서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간 의사소통, 낙상예방 관리,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감염예방(손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세탁물 관리, 물품 소독관리, 환경 관리), 산모 건강 평가, 모자동실, 모유수유, 부모교육, 신생아 확인 평가 지표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에 인력적정성, 종사자교육개발, 시설적정성, 소방안전관리, 입퇴실관리, 의료기관 연계 이송, 문서관리, 방문객관리,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리더쉽 및 조직문화, 손위생, 세탁물관리, 환경관리, 급식관리, 산모건강평가, 신생아 확인, 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수유 평가지표에서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채용유지, 종사자간 의사소통, 설비관리, 낙상예방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 소독관리, 종사자 관리, 감염관리, 모자동실, 모유수유, 부모교육, 위생관리, 안전관리 평가 지표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에 비해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나, 부모교육 지표 점수는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에 비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비관리 중 가스설비, 실내공기질 관리, 안전관리 지표 점수에서도 민간/법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 지표에서도 민간/법인 유형에 비해 근소한 차이긴 하였지만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산후조리원 유형별 우수 및 미흡 영역

구분	공공	민간
소영역별 평균 (10점 만점)	8.2점	6.9점
우수영역	-인력적정성(10) -시설적정성(10) -소방안전관리(10) -의료기관 연계·이송(10) -리더쉽 및 조직문화(10) -신생아건강평가(10)	-인력적정성(9) -입·퇴실관리(9.1) -시설적정성(8.3) -설비관리(8.6) -의료기관 연계·이송(8.5) -리더쉽 및 조직문화(8.7)
미흡영역	-부모교육(2.8) -안전관리(5.0)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3.0) -산모건강평가(5.2)

표 IV-3-5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요약

평가영역	평가항목	분류	평균				
			대/중 영역	항목별 전체	공공	민간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8.4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9.5	9.5	10	9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7.4	6.9	6.7	7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9.0	10	8.0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6.9	6.7	7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6.9	6.7	7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7.7	5.5	5	6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8	10	6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9.5	10	9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6.7	3.5	5	2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9.8	10	9.5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8.6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9.1	9	10	8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8.5	10	7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9	10	8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10	10	10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8.3	5.6	6.7	4.5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10	10	10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8.4	6.7	10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9.8	10	9.5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7.8	6.7	8.9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8.9	7	10	4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9.8	10	9.5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9.8	10	9.5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9	10	8
	4.3 낙상 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6.7	6.6	6.7	6.5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6.7	8.3	5
III. 운영과 질 관리			8.2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9.2	6.9	6.7	7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9.5	10	9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10	10	10
		4.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10	10	10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9.8	10	9.5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9.3	9	10	8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9.5	10	9

평가영역			평가항목	분류	평균			
					대/중 영역	항목별 전체	공공	민간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8.1	8	10	6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9.3	10	8.5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6.9	6.7	7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8.3	8.5	10	7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7.4	6.7	8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9	10	8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정규	6.5	6.7	6.7	0
			2. 선정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6	10	2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7.5	10	5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5.9	6.7	5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6.5	10	3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9.3	10	10	10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정규		9	10	8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9	10	8
IV. 감염예방관리					7.6			
8. 감염예방	8.1	손위생	1.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8.2	6.2	8.3	4
			2. 직원은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8.5	10	7
			3. 산모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8.5	10	7
			4. 손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8.5	10	7
			5.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9.3	10	8.5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6.3	6.4	6.7	6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6.1	6.7	5.5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7.7	7.4	8.3	6.5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	10	6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7	6.1	6.7	5.5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7.8	10	5.5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6.1	6.7	5.5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7.1	6.1	6.7	5.5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	10	6.0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8.3	6.2	6.7	5.6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9.7	10	9.4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7.0	8.3	5.6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8.5	10	6.9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8.5	10	6.9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10		0	10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8.8	7.3	3.3	4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9.5	10	9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5	10	9	

평가영역			평가항목	분류	평균			
					대/중 영역	항목별	전체	공공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7.5	6.9	8.3	5.5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8.1	6.7	9.5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6.2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입실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6.7	7.4	8.3	6.5
			2. 재원 중 산모의 건강상태 및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6.4	8.3	4.5
			3. 퇴실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6.4	8.3	4.5
11. 모야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야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7	6.9	6.7	7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6.2	8.3	4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7.9	8.3	7.5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4.8	3.9	1.7	6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5.4	3.3	7.5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3	5	7.5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2	3.3	7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2	3.3	7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2.5	0	5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7.7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7.0	5	5	5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8.5	10	7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7.4	8.3	6.5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8.9	9.5	10	9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8.8	10	7.5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8.5	10	7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6.9	4.4	3.3	5.5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9.3	10	8.5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8.3	7	10	4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7.5	6.7	8.3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9.3	10	8.5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7.9	8.3	7.5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0	10	10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6.5	4.4	3.3	3.5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8.9	8.3	9.5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6.2	3.3	9





## 2) 평가결과보고서 총평

조사위원의 결과보고서 총평과 건의사항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침 및 규정의 문서화 미흡, 표준화 규정 및 서식 배포 필요

산후조리원 내의 업무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침, 규정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위원이 조사하는데 4시간 이상 소요되며, 평가 항목에 대한 산후조리원 관리자들의 이해도가 차이가 있고, 모방할 수 있는 모델도 없어 평가를 위한 준비내용이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 평가 항목에 대한 용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시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만의 규정, 지침, 점검표, 신생아/산모 건강기록부 등의 표준화를 만들어 배포할 필요성 있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규정 등이 조리원에 먼저 배부되어야 하고, 각종 양식(신생아 기록지, 산모기록지, 방문객대장, 교대일지 등)의 통일된 양식 제시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의 사전 평가준비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고, 표준화된 서류가 없고 준비할 인원도 많지 않아 표준화된 서류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종사자 인력 대비 평가항목이 광대함

산후조리원 인력대비 규정이나 지침, 점검표 확인 등 평가항목이 너무 광대하여 줄여야 한다. 각종 평가기관(보건소, 소방화재, 협회 등)의 자료가 중복되어 있어 소방/안전/감염항목은 강화하고, 질관리·만족도·조사, 채용절차 등은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축소가 필요하다.

### ○ 평가당일 근무자에 대한 평가가 전체평가가 될 우려

현장평가 시 근무 직원이 1인 혹은 2인이기 때문에 관찰과 면담이 근무 직원 1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 종사자 보수교육 필요

보수교육 (종사자 교육)시 가능하면 산후조리원 업무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나 내용면에서 개선 필요 하다. 저출산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어 능력 있는 간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체교육도 교육 자료나 내용의 수준이 낮다.

### ○ 보건소 지도점검과 시범평가 내용의 일관성 있는 지침 필요

보건소 실사위주 평가에는 이번 시범평가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산후조리원에 맞는 통일화된 지침배부가 우선시 되어야하며 병원인증 수준의 평가 항목들이 많아 의료기관이 아닌 조리원에서 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로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 ○ 교육프로그램 대상별 구분 부족, 평가기준에 맞는 교육체계 지원 필요

교육프로그램을 신생아/산모/부모 교육이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부모교육은 평가 기준에 맞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부모교육, 신생아, 산모교육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은 병원과 가정 사이에서의 중간 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모든 교육들을 강요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 등에 모두 서명을 받고 근거 자료를 남기는데 어려움이 있다.

### ○ 모자동실 제고를 위한 산모대상 홍보 강화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산모중심으로 해야 하므로 입실하는 산모의 휴식을 위해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산모의 선택사항으로 모자동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산모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선행되어 완전모유수유와 모자동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 감염관리에 취약한 근무인력 구조

공공산후조리원도 근무 조당 산모 14명과 신생아 14명 총 28명의 산모 신생아를 관리하는데 있어 간호사 1인과 조무사 1인으로 구성된 인력으로는 안전 및 감염관리에 취약한 구조이고,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산후 조리원의 경우 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 감염 관련 입실시 점검항목 및 입실 취소기준 필요

입실 시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 체크리스트에 감염여부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며,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면 입실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간호사 면허 갱신 및 자격조건 점검

간호사에 대한 면허 갱신 및 자격에 대한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 산모 손위생 관찰항목 기준 변경 필요

산모 손위생 관찰은 모유수유시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기준 변경 필요).

○ 신생아 식별용 인식표

신생아 식별 및 개인정보 부분에서 신생아 확인은 강보에 산모 이름과 태명 스티커를 붙이고, 발에 면 테이프로 산모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 목욕 후 면 테이프가 떨어지면 신생아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 산모와 직원들이 신생아의 얼굴을 잘 알고 있고, 신생아 팔찌 등은 피부 손상 민원 소지가 많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신생아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해 줄 팔찌나 발찌가 꼭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목욕 시에도 손상되지 않고 피부손상이 없는 팔찌 등을 보건소를 통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 거리 90cm 유지 완화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 거리 90cm 유지는 불가능하며 병원 신생아실에서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평가 기준에서는 60cm로 완화했던 바 있다.

## ○ 낙상주의표지 부착 강화

낙상 규정은 있으나 신생아실 낙상 주의 표지가 필요하다.

## ○ 산모건강기록부 항목 조정 필요

산모건강기록지의 산모 건강 상태 기록 항목 중 자궁저부, 방광, 회음상처 등의 항목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수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항목 기준 변경).

## ○ 지역사회 보건소 및 병원 연계 협의체 구성 필요

지역 사회 보건소 및 병원과 연계하는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 ○ 감염관리, 신생아/산모 돌봄에 관한 최신정보 공유 필요

감염 관리, 신생아/산모 돌봄의 업데이트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물품(베타딘, 소독켄, 물품 소독 인증서 등) 사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사용하는 감염관리제품들의 기준 및 사용 가능한 제품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 참여기관 인센티브 고려

시범평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에게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 필요하다. 모유수유 및 모아 애착 부분 평가항목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곳에 포상 등의 동기부여나 캠페인 형식의 인식 변화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산후조리원 인증평가를 받는 산후조리원에게는 정부지원 및 혜택이 필요하다. 특히 감염관리는 인력 및 소모품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감염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못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지 발생 후 책

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금 신설 필요

저출산, 고령임신과 가족 돌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차원으로 산후조리 지원금이나 건강 보험으로 국가가 산모의 조리원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통한 본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

### 가. 시범평가 사후평가 실시

2018 시범평가 현장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시범평가 참여기관과 조사위원,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사후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시범평가를 준비하면서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평가 시, 조사위원에게 적극적으로 묻거나 요청하여 조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나 조언이 산후조리원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질 개선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기회로 평가를 활용한다면, 현장수용과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사위원이 평가지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참여기관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조사위원의 역할과 평가지표의 해석이 균질화 되도록 조사위원 교육과 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여기관들이 주목한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평가지표에 맞게 문서화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에 규정과 서식을 갖춰야 충족되는 지표가 많으나,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고 대부분 컴퓨터 활용능력이 낮아 문서화하는 일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평가 전에 서식과 규정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배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후조리원에서 평가를 준비할 때, 산후조리업자 혼자의 역량으로는 대비가 어

려운데 나머지 직원은 신생아케어나 산모케어 등 각자의 업무가 많고 보수수준이 높지 않아 평가준비를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병원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지표나 시설개선을 해야 충족되는 지표들은 비용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질 개선노력이 이용자의 부담비용 상승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위원 간담회에서도 산후조리원의 평가부담을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현행 종사자의 역량과 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본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여러 조사위원이 동의하였고, 어떤 형태로든 참여기관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경우도 있다.

평가지표에서는 신생아식별정보로 탈의 후에도 식별 가능한 팔찌/발찌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미 팔찌/발찌를 사용하는 기관도 있으나, 신생아가 커짐에 따라 팔찌/발찌가 죄어서 인식표의 재질이 신생아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이유로 거부감을 갖는 기관도 존재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부드러운 재질의 팔찌/발찌 등을 제공하는 안과 기관 규모에 따라 지표의 차등을 두는 안 등이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산후조리원 근무 간호사의 간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에 대해 현행법상 보수교육 유예가 문제되지 않으나, 업종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필요를 제안한 경우도 있다. 종사자 채용 시 이직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건강검진 혹은 예방접종 등의 비용이 발생되어 운영상 부담으로 작용하여 종사자 채용요건을 완화를 요구하였다.

평가지표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신생아와 산모케어의 바람직성이 충돌하는 것으로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부분이 산후조리원의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이미 많은 산모들이 휴식을 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강제하거나 권유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참여기관들은 정부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혹은 법적 강제성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산모의 인식 개선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현행 산후조리업자 법정교육은 일반적인 강의로 산후조리업에 특화된 교육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표 IV-4-1 2018년도 시범평가 이후 사후평가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제안된 내용	
10. 4	A공공산후조리원 건강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평가에 대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li> <li>○ 시범평가의 개선사항</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에 의한 설립 후 관리부실의 문제</li> <li>- 병원부설 조리원이 인접하여 설립되면서 경영악화(적자운영), 점차 셋째자녀 이상 출산모만 이용, 모든 직원 비정규직/임시직 고용, 대다수 직원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근로여건이 낮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어려움.</li> </ul> </li> <li>2) 시범평가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실 관리, 조리실 등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얻을수 있었음</li> <li>- 평가 결과가 조리원에 상세하게 통보된다면 향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li> </ul> </li> <li>3) 시범평가 어려운 점 및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사자안전관리, 개인정보구착용 규정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li> <li>- 국제모유수유전문가가 강연을 했을 때 산모들의 모유수유 의지가 높아짐. 전문가 초빙 비용 지원이나 국가가 파견해주는 인센티브 요청</li> <li>- 나이트 근무 간호사 수급 어려움</li> </ul> </li> </ol>	
10. 12	B공공산후조리원 건강관리책임자, C공공산후조리원 건강관리책임자	<p>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파악 및 방향성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파악</li> <li>○ 공공산후조리원 향후 방향성 설정 논의</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접지역 공공산후조리원 간의 경쟁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접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겨나 경쟁구도가 예상됨. 산후조리취약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명시하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 지역안배 고려필요</li> </ul> </li> <li>2) 지역 내 공공-민간 간 갈등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서 자리 잡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등으로 민간시장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갈등이 있음. 민간입장에서는 공공조리원의 낮은 가격에 동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임.</li> </ul> </li> <li>3) 분만취약지역에 설립된 이용자친화적인 공공산후조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에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요청으로 공공의료원에 산부인과 개설, 공공산후조리원도 설립됨. 과거 지역 산모들은 인근 다른 시로 원정출산을 해야 했던 상황임. 현재는 의료원 내에 여성,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 및 조리원시설이 생겨 시민의 만족도 높음. 1년 이상 관내 거주 산모는 조리원 이용료 무료정책을 시행함.</li> </ul> </li> <li>4) 기존 인프라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용료를 크게 높이지 않는 한, 산후조리의 적정 질을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적자 운영 되고 있음.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산후조리원의 초기설립비용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민간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는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여겨짐.</li> </ul> </li> <li>5)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욕구와 필요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만취약지역은 공공의 설립이 필요할 것임.</li> <li>- 공공이라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만한 의료기관의 지원 하에 병원 부설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li> </ul> </li> </ol>	

일시	참석자	안건
	제안된 내용	
10. 12	2018 시범평가 참여기관 7개소, 한국산후조리업협회 1인	산후조리원 시범평가에 대한 현장 의견 취합 ○ 시범평가에 대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 시범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li> <li>- 조리원의 체계화에 도움이 되었음</li> <li>- 평소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직원들(신생아실, 조리실)에게 외부의 전문가(조사위원)의 조언을 통해 개선하는 기회로 삼음,</li> <li>- 산후우울증 점검을 위해 제공되는 척도가 도움이 됨.</li> </ul> </li> <li>○ 어려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를 준비하는데 원장 1명으로는 역부족임.</li> <li>- 평가항목들은 대부분 실행하고 있더라도 서류화되지 않거나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들의 대비가 어려움. 특히, 서류준비가 어려움.</li> <li>- 일부내용은 산부인과 병원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조리원에 적용해야 했음. 이런 조건들을 갖추려면 '비용'이 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됨.</li> <li>- 다소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기준, 요구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상알림의 과도한 게시, 직원인사카드 재작성, 소독제 구매내역 첨부 요구</li> <li>· 직원교육 요구서류(교육이수에 대한 증빙 어려움)</li> </ul> </li> <li>- 사진사나 교육 강사 등 외부인에 대한 감염 관리 고민</li> </ul> </li> <li>○ 개선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로 평가되는 지표들의 해당 서식 및 규정의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직원이 50대 이상으로 문서작성역량이 부족함. 현장자체개발은 어려움.</li> </ul> </li> <li>- 모유수유나 모자동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li> <li>· 산모의 참여가 필수적. 산모의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필요</li> <li>· 산모의 욕구(휴양)와 바람직한 방향의 기관(평가결과가 좋은 기관)의 괴리가 심함.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기대하는 바와 국가적 또는 산후조리원 평가 목적의 가치의 불일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함.</li> <li>-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 채용요건을 구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이직률이 높은 현실에서 과도한 서류요구는 부담이 됨.</li> <li>-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맞는 직원교육 기회가 별도로 있었으면 함.</li> </ul> </li> <li>○ 기타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원 간호사의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 의료법상은 유예가능이나,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함.</li> <li>- 산모돌봄과 신생아돌봄의 비중: 신생아돌봄(모자동실 강조)을 우선하는 기관은 퇴실 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음. 산모의 건강회복이 우선되어야 산모의 신생아돌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li> <li>- 산후우울증의 확인과 조치범위: 척도에 의해 자가점검을 하고 본인과 배우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필요하나, 비전문가로서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음.</li> <li>- 신생아 인식표 종류: 탈의후에도 확인가능한 팔찌/발찌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장의 관례대로 스티커 등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대립</li> </ul> </li> </ul>





일시	참석자	안건
	제안된 내용	
10. 25	한국산후조리업협회 1인	산후조리원 시범 평가에 대한 산후조리업협회의 의견 취합 ○ 신생아 식별표 의견 취합 ○ 향후 시범평가에 대한 제안
		1) 신생아 식별표의 규모별 정리 타당성 검토 요구 - 현재 16명 정도의 신생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해 불가 - 30명 이상 사업장 전체 20-30% 해당 - 인식표의 확인보다 직원의 인수인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2) 인센티브 제도 방안 - 경기도지사 출산 지원금 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활용방안 고려 - 평가 등급 기준 이상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도 활용 방안 제시 · 임신및출산지원금 바우처 · 간호사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 산전교육에 대한 지원 3) 평가 이후 운영이 어려운 조리원은 폐업, 적정 등급 이상의 조리원의 고역화 가능성 4) 산후조리원종사자 건강검진 관리는 보건소에 귀속시키는 방안 · 건강검진 소견서에 드는 비용이 산후조리원에 부담 · 잠복결핵, Tdap 백신 비용 과다 · 건강검진 항목의 일원화 5) 조리원 평가 1년 정도 유예 제안 · 서식이나 규정 · 조사위원 균질화 · 평가 인증방법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6) 평가 항목 점수화 · 영역별 등급화: 중저규모의 경우 시설 등급이 낮아도 운영면에서 등급 상향 가능
10. 27	2018 조사위원 8명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조사위원 간담회 ○ 평가 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향후 본 평가를 위한 개선 사항 및 제안
		1) 통일된 서식 및 규정의 마련과 배포가 중요함 2) 교육계획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 필요 3) 사전관찰실은 코호트 격리밖에 되지 않는 현실 고려, 입실 1일차 모자동실 활성화, 신생아 세면대는 무조건 하나가 필요함. 4) 낙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조리원 있음. 평가기준에 낙상예방 활동 시행 추가제안 5)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라는 용어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낮음. 조리원 현행인력으로는 수행 불가함. 1주기 평가에서는 항목을 제외하거나 시범으로 변경 6) 세탁실과 오염공간의 구분이 모호함. 세탁물 관리 체크리스트, 공간활용 컨설팅 필요 7) 산후우울증 평가는 입퇴실 포함하여 재원시 1회로 수정 제안, 보건복지부 산후우울증 관련 소책자 전국 배포/비치 8) 간호사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로 변경될 필요성 9) 건강관리책임자를 위한 산후조리원 특화 교육 필요(현행 교육이 적절성이 떨어짐) 10) 신생아 식별정보는 팔찌/발찌를 1개 포함하는 1개 이상의 식별표 제안 11) 개별 목욕대야 항목 삭제, 목욕 전용 소독이 더 중요함. 12) 조리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본평가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 13) 조리원 내 신생아 개인 CCTV 규제 필요: 신생아 시력발달 저해 우려 14) 조리원 입실 시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정보 기본서류 제출을 정책화 15) 지역사회 병원과 조리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확보 16) 조사위원 교육 강화(평가내용 숙지정도 상이, 균질화 및 통일 필요)

## 나. 향후 본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개발

시범평가 후 조사위원 간담회(2018. 10. 27)를 통해 향후 본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논의하였다.

표 IV-4-2 | 조사위원 사후간담회를 통한 평가기준 수정 논의사항

구분	제안내용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적정성: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보건소 실사가 없다면 실제 조리원 실사를 하는 것이 필요 보건소 실사 강화보다는 조사위원의 실사 필요 기준 자체는 적정하나 현실적으로 그 인력을 갖추기에는 힘들.</li> <li>- 산모에 대한 인력 배정 기준 마련</li> <li>- 4대 보험 / 종사자관리 / 근무자와 인력이 일치하지 않음.</li> <li>- 기준이 너무 많음. 인력 현황이 열악한데 모든 기준을 맞추어 준비하기에 힘들.</li> <li>- Rota, RSV 등의 감염사례 발생 시 보건 당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li> </ul>
평가 지표 항목별 논의 사항	
인력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계획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li> <li>- 근무 교대 일자: 근무 교대 일자 서식화 필요</li> </ul>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씻기 시설 신생아 세면대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함.</li> <li>- 손씻기 소독제: 평가 기준에 맞춘 손씻기 세정대가 아님. 식약처 허가, 알코올 60% 이상 함유 등등의 기준</li> <li>- 법적 기준에 맞는 세면대 개수와 위치 확인</li> <li>- 요람과 요람 사이의 적정 거리: 보건소 허가 시 신생아수와 일치여부 확인</li> <li>- 사전관찰실 실제는 코호트 격리 정도밖에 되지 않음 칸막이만 있는 정도 사전관찰실 따로 관리할 인력이 없음. → 사전관찰실을 없애고 입실 1일치는 모자동실 활성화 방안 고려</li> <li>- 모유수유실 모유수유 교육 효과 감염 확대 효과</li> <li>- 낙상 몇몇 조리원의 낙상에 대한 개념이 없음. 낙상 위험 있는 시설에 대한 실사 강화 낙상 교육 강화 평가 기준 추가: 낙상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li> </ul>
운영과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li> <li>- 만족도 평가는 자체적으로</li> <li>- 조리원 측의 인력 부족으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li> <li>- 평가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평가 기준으로 넣는 것으로, 첫 3년 평가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6.1.2 평가기준 자체를 '시범'으로 변경</li> <li>- 정책적인 질 관리 홍보 필요</li> <li>- 7.1.2 '년 1회 직원과의 고충을 위한 상담한다.'로 변경</li> </ul>

구분	제안내용
감염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li> <li>- 세탁실과 오염실의 구분이 모호함: 보건소 시설 기준에 맞추어 권고 세탁물과 오염물의 공간이 따로 분리 or 같은 공간이라면 밀폐된 보관 용기</li> <li>- 세탁물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li> <li>- 세탁물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 공간의 활용에 대한 교육 필요</li> <li>- 조리장 환경 위생 관리</li> </ul>
산모의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상에 대한 교육</li> <li>- 산모의 심리 및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낙상 기준을 제시</li> </ul>
산모의 건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항목 몇 가지 삭제</li> <li>- 산후우울증 평가는 입퇴실 포함하여 재원 시 1번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li> <li>- 보건소에서 홍보 차원의 책자 배부 권고</li> <li>- 산후우울증 평가 재원 시 2회 실시</li> <li>- 항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1.1. 산모의 건강 상태: 입실, 재원, 퇴실</li> <li>10.1.2. 산후우울증 2회 실시</li> <li>2회 실시: 상, 1회: 중, 미 실시: 하</li> </ul> </li> </ul>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 산후 교육 및 교육에 참여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서류 확인이 아니라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 안내한다는 것으로 변경(단계적으로 추후 서명확인 으로 변경)</li> <li>- 산후조리원 신생아 및 산모 CPR 교육 필요</li> <li>- 간호사의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인 경우 자격증 update를 정책화</li> <li>- 건강관리책임자들이 건강 관리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li> </ul>
신생아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식별정보 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30인 이상 시설만 2가지(스티커, 팔찌와 발찌 중 하나) 보건소에서 모든 조리원에 팔찌나 발찌 식별표 제공 제안</li> <li>- 상/중/하로 변경 (그 이외의 식별 방법이 있다(스티커인 경우) 중으로, 아예 없는 경우는 하)</li> <li>- 신생아 목욕대아 개별 목욕대아 항목 삭제, 보건소의 규정도 변경이 필요함. 목욕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므로 개별 목욕대아 사용은 의미 없음.</li> <li>- 신생아 모유 관리 전용 모유 냉장고 냉동고 보관 냉동 냉장 보관 온도 관리 라벨링 철저 확인</li> </ul>
향후 본 평가를 위한 개선 사항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평가 제시, 한꺼번에 모든 평가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li> <li>- 인구보건복지협회 교육의 주체가 불합리하고 내용이 부적절하다. 교육추최 변경 제안</li> <li>- 조리원 내에 신생아 개인 CCTV 설치에 대한 문제 제시 조리원 측: 신생아 식별에 도움 신생아 눈, 직원들 업무량 증가, 식별 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li> <li>- 조리원 입실 시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 정보에 대한 기본 서류 제출을 정책 화</li> <li>- 지역사회 병원과 조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가능한 체계 확보</li> <li>- 주기적인 의료 정보에 대한 update 교육 및 홍보 필요</li> <li>- 산후조리원 협회의 활성화: 현 50% 정도밖에 가입되어 있음.</li> <li>- 조사자 교육 조사위원마다 평가 내용이 다르다. 시범 평가 조사위원의 참여 독려 시범 평가 균질화 및 통일화 필요</li> </ul>

시범평가 후 연구진 회의와 산후조리원 대상자 간담회, 조사위원 간담회를 통해 최종 수정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IV-4-3, IV-4-4, IV-4-5). 시범평가 후 평가기준과 현장평가표 최종안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3, 5).

표 IV-4-3 평가기준 비교

항목		2017년 평가기준	2018년 평가기준 (시범평가 전)	2018년 평가기준 (시범평가 후)
항목 분류	대영역	6	6	6
	중영역	14	15	15
	소영역	29	30	30
	평가항목	98	99	98
	시범평가항목	2	1	3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관리, 모아애착, 산모 건강관리, 부모교육 강조</li> <li>○ 경영관리 추가</li> <li>○ 산후우울증 평가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수정</li> <li>○ 질관리 항목 기준 분류: '시범'으로 수정</li> </ul>

표 IV-4-4 2018년 시범평가 전후 평가기준 비교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수정		논의 사항
	2017년 평가기준	2018년 평가기준 (시범평가 전)	
[인력전문성]			
2.2.2 종사자교육 계발	산후조리업자 필수 교육: 직원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매년 총 2시간	산후조리업자 필수 교육: 직원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매년 총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교육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와 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이 2.2.2와 4.4.2에 중복되어 구분하여 평가</li> </ul>
[시설적정성]			
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 적정한 거리 (60cm 이상)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내 적합한지 평가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내 적합한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요람과 요람 사이의 거리를 60cm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li> <li>○ 모자보건법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li> <li>○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건소 허가 사항 중 신생아수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으로 조정함.</li> <li>○ 추후 학술적인 근거 마련 필요</li> </ul>
[시설안전성]			
4.4.2 소방안전관리	연 1회 이상 소방 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소방 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업자가 종사자인 직원에게 연 1회 소방교육 실시</li> <li>○ 소방교육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함.</li> </ul>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수정		논의 사항
	2018년 평가기준		
2017년 평가기준	(시범평가 전)	(시범평가 후)	
<b>[질관리]</b>			
6.1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평가항목 4개	평가항목 5개 6.1.2 시범 기준 분류	평가항목 5개 6.1.1, 6.1.2, 6.1.3 시범 기준 분류	○ 현재의 인력 현황으로 평가 불가능 ○ 산후조리원 측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결과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단계적 추진 고려
<b>[경영관리]</b>			
평가 항목 없음	7.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7.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 경영 관리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 두 ○ 경영자의 운영 가치와 직원과의 소통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b>[감염예방관리]</b>			
8.1.2 만 필수 나머지 항목은 정규	8.1.1, 8.1.2, 8.1.3, 8.1.4, 8.1.5 모두 필수 기준으로 분류	8.1.1, 8.1.2, 8.1.3, 8.1.4, 8.1.5 모두 필수 기준으로 분류	○ 감염 관리 예방에 대한 필요성 대 두
8.3.1 세탁물 관리 의료기관 세탁물 관 리규칙 적용	오염세탁물 또는 의료기관세탁물 이라는 용어 삭제하고 일반 폐기물로 변경	일반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적용	○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폐기물이 라는 용어 삭제
<b>[산모 돌봄서비스와 및 부모 교육]</b>			
10.1 산모건강상태	산모교육에서 부 모 교육으로 명 칭 변경 산후우울증 항목 추가 (재원 중 1 회 이상) 평가항목 3개	평가항목 2개로 수정 -산모의 건강상태 : 입실, 재원, 퇴실 -산후우울증평가 (재원 중 2회)	○ 신생아 돌봄과 산모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교육 강조 ○ 모자동실과 모유 수유를 권장함으 로써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방안
11.1 모아애착 정규 기준 121 부모 교육 정규 기준	모두 필수 기준 으로 수정 아버지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 인한다.	모두 필수 기준으 로 수정 '아버지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로 수정	
<b>[신생아 돌봄서비스]</b>			
13.1.2 신생아 식별 정보 최소 2가지 이상의 인식표	최소 2가지 이상 의 인식표	1가지 이상의 인 식표를 사용하나 만드시 팔찌나 발 찌 중 1개를 포함 한다.	○ 신생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팔 찌나 발찌의 인식표 필요 ○ 신생아 인식표 보건소의 일괄적 배 포 고려

표 IV-4-5 2018년 시범평가 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최종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정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4.3	낙상 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III.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시범
			2. 선정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범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정규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IV.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위생	1.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 손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총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 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및 충족기준

평가항목에 대한 결과는 2017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항목 충족 기준과 결과판정에 대해 산후조리원별, 평가항목별로 점수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 시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항목별 확인내용과 판정기준을 제시하였다(부록 5.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집 참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및 충족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IV-4-5).

- 유/무
  - 유: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로 10점
  - 무: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 미만으로 0점
- 상/중/하
  - 상: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80%이상으로 10점
  - 중: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이상 ~ 80%미만으로 5점
  - 하: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미만으로 0점
- 미해당: 점검표의 미해당에 해당하는 항목은 점검 항목에서 삭제하고 해당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충족률 계산하여 평가

표 IV-4-6 평가항목 충족기준

평가결과	점수	충족기준	평가결과	점수	충족기준*
유	10점	100%	상	10점	80%이상
			중	5점	60%이상 ~ 80%미만
무	0점	100% 미만	하	0점	60%미만

\*경우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상'에 대한 충족기준을 100%로 할 수 있음

## 라. 향후 본 평가 절차 마련

향후 본 평가를 위한 절차 마련 기준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수행되었던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사업'에서 개발했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정연이 외, 2017: 42~48 참조). 해당 보고서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처리 규칙(안)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 수행 절차, 평가 관련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 마. 향후 본 평가를 위한 제반 고려 사항

산후조리원은 산모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의학적, 위생적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감염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환경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산후조리원의 적정관리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이 수익 사업화 되고 있다는 점,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적정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모 및 신생아의 집단관리에 따른 감염 및 안전 관리 강화에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 서비스업이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제도가 현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합리한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앞서 사전 교육 또는 전 국민 대상 공익 광고를 통한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사용과 감염관리의 인식 변화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화된 산후조리원 관리 시스템 구축, 평가 시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1) 산후조리원 운영 평가 관련

#### 가) 적정 서비스 및 전문 인력 확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질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질 관리 활동에는 건강관리(산모의 신체회복, 신생아 수유 관리 및 질병관리, 감염관리 등), 교육제공(산모건강관리방안, 신생아 돌봄 방법, 모아상호작용 촉진활동,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등), 정서적지지(산후 우울 관리 등)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질 관리를 위한 지표 설정, 분석 및 개선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산후조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념과 정의, 감염·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구성 및 전문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체계화된 관리 지침 마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2013.11.)이 최신 감염관리 동향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내용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점검을 위해 보건소의 분기점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수 권고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 다) 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들이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나 대상기관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평가가 소비자들로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서비스, 감염·안전관리 부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평가에 따른 효과나 인센티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이는데 회의적인 지적이 있어 정책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 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관련

### ○ 시설의 적정성 평가

첫째, 신생아실 내 입실제한 수에 대한 것이다. 신생아실 내 집단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실 제한 수를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의 적정 간격에 대한 평가<sup>17)</sup> 문제이다. 신생아당

17) ※ 참고

1) 신생아실에서 최소 공간은 요람 1개당 2.23㎡이며, 공용공간을 제외한 곳이어야 함(AIA, 2006).  
2) 질환은 없지만,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들이 있는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신생아실\*', continuing care nursery'은 요람 당 바닥공간이 최소 4.65㎡(보조공간 제외), 요람과 요람사이 간격 1.22m(모든 요람 대상)를 유지함(AIA, 2006).  
\*용어는 2011년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참고  
3)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병상1개당 5㎡(단, 공간 종류에 따라 포함사항이 다름)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1.7㎡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모자보건법상 명시하고 있다.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90cm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감염관리지침 상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적정 간격)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 시범평가 후 최종 수정안에서 보건소의 신생아수 허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추후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법적 타당성을 고려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사전관찰실 설치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2017년 시범평가 연구보고서에서는 신규 입실하는 신생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관찰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 규정이 모호하게 해석될 부분이 있다.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염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구획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8년 시범평가 후 사전관찰실을 따로 두기보다는 입실 1일차는 모자동실을 활성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평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보건복지부, 2013)에서는 산모나 신생아가 사용한 세탁물과 폐기물이 오염되었을 경우 감염원을 전달하는 매개가 될 수 있으므로 세탁물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시범평가 연구보고서에서는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방안 등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평가기준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평가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산모나 신생아의 폐기물은 의료용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폐기하고 있다. 2018년 시범평가 후 간담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로 지정한 경우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의 수거가 필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

### ○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촉진 활동 시행 여부에 대한 충족기준

2018년 시범평가 연구에서 강조된 모아애착과 관련된 평가 기준을 모두 필수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모자동실의 필요성, 모아애착 관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문화 확산 유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동실 제공 노력을 권장하였고(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7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적으로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으로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동실의 사용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범평가에서는 신생아 수유 시간을 모자동실 사용 포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7시간 충족하였다.

### ○ 산모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시행 여부에 대한 충족기준

첫째, 산모건강평가에서 산후우울증 평가 기준 추가가 필요하다. 저출산 및 직장여성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 내의 출산 후 산후 돌봄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산후우울증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가족과 산모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하다. 따라서, 입퇴실 또는 재원 중의 산후우울증 평가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위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심각한 산후우울증 산모의 추후 대처방안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신생아 돌봄과 산모의 건강 돌봄에 관련된 교육은 산모 뿐 아니라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부모교육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아버지 교육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 ○ 규정(또는 지침),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산후조리원 평가 준비의 첫 단계는 기관의 규정 및 계획 수립임. 규정은 산후조

리원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칙, 업무지침 등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과 관련서식, 근거서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이를 준비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후조리원 평가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 사례집(또는 매뉴얼), 표준규정집 등을 제작하여 본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고 평가 전 서식과 규정의 실제 적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요약 및 시사점

현장평가는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와 민간산후조리원 10개소를 평가하여 숫자가 달라 공공과 민간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평균 8.2점, 민간산후조리원이 평균 6.9점으로 1.3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여러 영역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위험 임신부의 증가로 출산 건강이 악화되어 출산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하기 전에 5주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며, 가족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화하여 가족 내 돌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후조리문화에 필수적이다. 산모는 출산 후 최소한 2-3주간은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만 돌봄이 이루어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처음부터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최소한 2주의 산후조리원에서의 돌봄과 3주이상의 재가방문을 통한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휴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이유는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후에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어 돌봄을 받는 신생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으로 퇴소 후 재가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산후조리원에서의 모자동실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리라 생각된다.

저출산의 여파로 2016년 612개에 달했던 산후조리원이 감소하여 2018년 현재 564개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평가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2019년부터 본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로는 산후조

리원 측의 운영비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평가 준비(관련 서류 작성 등)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 기준의 잣대를 산후조리원 측에 제시하는 것에 대한 산후조리원 측의 자발적 협조 요청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표인 모유수유, 모자동실 이용, 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은 산모가 원하지 않아서 수행이 어려운 지표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 운영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 산모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 발생 후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산후조리원 측에 전가하는 현재의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으며, 감염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마련과 지침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국이 필요하며, 현지평가를 진행하는 전문가(산후조리업자, 간호사 등)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기관이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 균질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산모 및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 정책 제언

1.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
2.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V. 정책 제언

### 1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

우리나라 산모의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7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2017년도에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산후 6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비율은 75.1%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d). 이는 2013년~2015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산모의 59.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에 비해 15.3%가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산모의 10명 중 7~8명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의 경우는 2017년 기준 79,515명(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으로 2017년 전체 출생아 수(357,800명) 대비 약 22%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기준 평균 13.2일(보건복지부, 미발간)로 약 2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을 받는 산모는 최소 5일~25일(셋째아 이상, 중증장애산모)까지 정부지원금 자격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 후 5주 정도는 산후 돌봄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1~2주를 지낸 후, 본인 가정에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거나 친정이나 시댁 등에서 2~3주 정도 더 돌봄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2

가지 형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2가지 형태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의 형태는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출산한 산모의 경우 출산 직후 곧 자신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에는 출생아 외의 자녀 돌봄 및 가사 일 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5주 이상을 돌봄 받는 것이 노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 여길 수 있어, 많은 산모들은 최소 2주 정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 후에는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위험 임신부가 증가하면서 산후에 무리를 하면 체력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산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퇴소 후 3주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것이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주된 역할은 산모 및 신생아 돌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사 및 신생아 형제 돌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중단기적으로 2가지 형태의 산후조리 지원은 모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시대의 소외계층인 미혼모들은 가족들의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출산 후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라는 2가지 형태의 산후조리 지원이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각 사업을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 가. 산후조리원 평가 연계를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

산후조리원은 전반적으로 소규모 운영 형태가 많고,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운영 특성 등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서류 구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등이 필요한 현재의 평가 체제를 수행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산후조리원 평가를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418개소에서 2016년 612개소까지로 증가하던 산후조리원 개소수가

전년도인 2017년에 598개로 줄었다가 금년에 더 감소하여 58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참조). 이는 현재의 저출산의 여파가 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법제 마련 이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라는 시점과 맞물려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부담도 일부 감소 요인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산후조리원 입실율도 2014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2018년 6월 기준 60.5%인 것으로 나타나서 산후조리원 가동률이 낮았다(III-1-9 참조). 산후조리원 운영 특성 상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임에도 재정 부담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시범평가 결과, 이상과 같은 산후조리원 측의 운영비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평가 준비(관련 서류 작성 등)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 기준의 잣대를 산후조리원 측에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측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시범평가 결과,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에서 전반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법인 산후조리원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이면에는 본 연구 참여 공공산후조리원 모두 연간 1~2억 정도의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참여가 필요한 지표의 경우(예: 모유수유, 모자동실 이용, 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반발과 문제 제기가 많았다. 수요자가 원하지 않아서 수행이 어려운 지표에 대한 책임을 산후조리원 측에 넘긴다는 불만과, 감염 발생 시 산후조리원 측에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토로하였다. 감염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국가적 관리 및 대응 체계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가를 받는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평가를 실시할 주체(정부 혹은 위탁기관)의 입장에서 평가에 대한 준비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면들이 많다. 첫째, 평가 지표에 관한 검토가 2016년 이후 2017년과 2018년 동안

수정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현장과 전문가, 부처 모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내용이 있고, 이에 관한 최종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평가 관련 규정 및 양식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규정 및 서식의 제공 없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서식 제공 없이 서식 마련을 요청할 때 평가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등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평가 실시 주관 기관에서 표준화된 규정과 양식 등을 마련하여 평가 기관에 제공하고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어 사용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용어 정의 및 해당 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에 관한 일련의 지침과 규정을 확정짓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 소비자 집단, 정부 부처, 산후조리원 운영자 집단 등의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 주체 기관 모두 평가를 위한 준비가 더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3년간의 기간은 산후조리원 본 평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은 본 평가 준비를 위한 산후조리원 대상의 컨설팅,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평가 주체 기관에서도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본 평가를 실행하기에는 평가가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 제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 정도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본 평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써 산후조리원에게 평가 관련 내용의 컨설팅 제공, 필요한 규정 및 서식 마련, 조사위원 풀 구축 등을 통한 교육 및 상담 연계 등을 제안한다. 산후조리원에게 컨설팅,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평가 원래의 목적인 산후조리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모자보건증진으로 연계될 것이다.

##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접근으로 산모 개별 가정 방문 지원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을 통하여 산모들의 정보 교류, 정서적 공감 등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반면,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집단 감염 위험, 안전 문제, 신생아와의 분리로 인한 모아애착 증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주 정도의 산후조리원 이용 후 주로 친정이나 시댁으로 가서 2~3주 정도의 산후조리를 받는 경향이 많은 문화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산모 거주 주소지 관할에서만 이용 가능함으로 인하여 친정이나 시댁 등 산모 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산모가 출산 전에 산후조리 장소를 미리 통보하고 이를 지지체에서 연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면 많은 산모들이 보다 용이하게 해당 사업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본인과 남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등이 제공될 때 산모와 신생아의 모자 건강 뿐 아니라 가족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산전관리를 받는 산부인과에서 미래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등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료보험에 교육상당료로 코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모가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산모가 통보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는 산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관할 보건소 등에서 필요한 산전 교육 시행을 보다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현장 방문 결과, 산후조리원 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서 모유수유와 모아애착 관계 등과 관련된 산전 부모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그 실효를 거두는 사례를 목격하였다. 모자보건증진을 위하여 산모뿐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산전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이상에서 제안되었던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던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라는 체제가 어떻게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과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주로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산모들이 더 용이하게 이용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이용자 친화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간략하게 모색하였다.

### 가. 산후조리원 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평가가 산후조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때 산후조리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음에서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산후조리원 평가의 내실화

##### 가) 평가지표 자체에 관한 세부 검토 및 확정

본 연구에서 2016년도에는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1차 개발, 2017년도에는 1차 개발 지표에 대한 현장 수용성 등의 점검을 통한 수정, 2018년도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에 수정된 지표를 토대로 현 시점에서 재검토 및 현장 수용성 등의 점검을 통하여 대부분의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평가 이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생아 식별 정보의 팔찌와 발찌 부착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지표 점검 및 지표 실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감염과 안전과 관련한 복지부 용역과제가 수행된 바 있다. 해당연구가 본 연구 진행 기간과 비슷하여 올해 산후조리원 평가 연구에서는 두 개의 중요

영역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기본 사항으로 이에 관한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염 지표 관련하여서는 관련 연구진으로부터 일차적인 검토를 받은 바 있으나, 안전 관련 지표는 평가 전에는 검토 받지 못하고 평가 이후 안전관련 지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안전지표 관련 논의에서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안전 관련 지표가 실제 안전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이 밝혀져서 향후 이에 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나) 평가지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

평가지표 실행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품목은 국가가 일괄하거나 구입처 명단리스트 등을 제공한다면 평가지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평가 지표 관련 규정이나 서식 등을 미리 제공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서식에 맞도록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모자보건증진으로 연계될 것이다. 다음에서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 (1) 평가지표 관련 규정과 서식 마련 및 배포

중요 평가 지표에 관한 규정 및 서식 등을 평가 전에 미리 마련하여 산후조리원에 배포해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관련하여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관련 평가 영역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표준화되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2017년도 시범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 규정이 없거나 서식이 없는 관계로 평가 이후 평가 점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서류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종일의 평가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다는 전년도 조사위원 보고도 있었다. 평가지표 관련 규정과 서식 등의 분량이 적지 않은 편이다. 2018년도 연구 수행 시 일부 규정과 서식이 마련되어 배포되기는 하였다.

이에, 향후 평가지표에 관련된 표준화된 규정과 작성 양식이나 서식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연구가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생아 식별을 위한 팔찌 및 발찌 등의 물품을 국가에서 제공

신생아에게 팔찌 및 발찌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이에 관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평가지표의 실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신생아 식별을 위한 팔찌 및 발찌 착용으로 신생아에게 상처가 날수 있어 산모의 항의가 많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착용을 꺼려하고 있다. 반면, 현장 관찰 조사위원들과 전문가들은 신생아 식별을 위한 팔찌 및 발찌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관련 지표의 수정도 가능하지만, 지표의 수정대신 직접 물품 제공으로 이러한 조율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에서 팔찌 및 발찌 등의 물품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지원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3) 평가지표 용어 설명 및 평가 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제공

평가지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이해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평가 서류 작성 지침 등이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독제 등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제품 선정을 위한 리스트 제시 등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연구 수행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이다.

(4) 안전관련 지표 점검을 위한 조사위원 제공

안전관련 지표 내용이 비교적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평가 수행 시 안전관리 지표 점검을 위한 조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것도 평가지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국가에서 안전관련 지표 점검을 위한 조사위원을 별도로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산후조리원 측의 인식도 높이고, 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써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안전에 관한 교육과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위원 풀 구성 및 교육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현장 관찰을 위한 조사위

원 구성이다. 조사위원의 균질화가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향후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2018년도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신생아실과 분만실의 수간호사와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높은 인력이 조사위원으로 임용되어 시범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한된 시간에 시범 평가를 수행하여야 했고 교육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높은 집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조사위원 풀의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집단이 조사위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산후조리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바람직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조사위원 균질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조사위원 풀로 구성될 수 있는 단체로는 운영자 단체인 산후조리업협회, 전문가 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 심위위원회 구성 시에는 이상에서 언급된 2개 단체 이외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심의할 때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산후조리원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려 가능한 소비자 단체로는 경실련, 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를위한시민의 모임 등이 있을 것이다.

#### 라) 산후조리원 평가 담당 전담기구(사무국) 설치

상시 조사위원 관리 및 현장과의 연계 지원을 위한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력 충원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평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면 조사위원 풀 구성 및 조사위원 교육 실시 담당, 조사위원이 수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조직 등도 전담기구 내에 배치하여 평가 사업 전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주기 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3년간은 산후조리원 평가 내 용 관련한 컨설팅 교육, 상담 제공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사업도 평가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산후조리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

### 가) 교육비용 지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리원 종사자 뿐 만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즉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감염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 등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에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거나 관련 전문가 초청비, 부모교육 강사 초청비, 관련 활동 진행시 필요한 비용 및 교육 시에 필요한 다과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모유 수유율이 높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전 모유수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초청 교육 이후에 산모들의 모유수유를 이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산후조리원에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함으로써 모자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비 지원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비를 보건소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기관과 달리 산후조리원의 경우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는 1인당 종사자 건강검진비용이 약10만 원 정도가 들고 있고 산후조리원측에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생아와 접촉하는 종사자들에게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인 예방 접종 및 면역 항체의 유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수교육 여건 마련 및 내실화

산후조리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후조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 운영자 대상의 보수교육에서 의료기관 관련 내용 중심의 보수교육이 수행되고 있어 이에 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다. 한편, 산후조리원 운영자 외 종사자 관련 보수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제공 등에 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산후조리원 운영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비용 지원이 된다면 운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의 질과도 연계되어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3) 평가 참여 산후조리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법제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후조리원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감염 관리와 모아에착 그리고 모자 동실 및 모유 수유율 등의 중요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우수하고 타당성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산후조리원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제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표 V-2-1 ▣ 모자보건법 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시 안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신 설〉 ⑤~⑦항 신설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⑤ 산후조리원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5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5항에 따른 지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4) 감염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필요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감염이 발생하였을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감염의 원인 파악 등에 대한 경로 추적 등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후 대처를 어

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 등도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 산후조리원 협회, 부모 단체 관련자들의 협조와 공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 전가식의 대처가 아닌 협조하여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 5)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 모색

우리나라의 경우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본 연구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을 2주 정도 이용할 경우 비용은 약 252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다. 아동 출산 및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이 산후조리원 이용비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금액을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을 시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더욱 꺼리는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산후조리원을 병의원과 연계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형태로 취급 및 관리하고 평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모자건강보전 증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출산준비교실 등을 모유수유, 모아애착, 신생아 돌보기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의 교육상담료로 코드화한다면 출산 전에 미래의 부모에게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에 대한 확실한 홍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실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즉, 현재, 국내 산후조리원 운

영은 산모의 산후 조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생아의 관리에는 소홀한 면이 있어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모든 신생아는 언제나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신생아에게 각각의 개별적인 관리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산후조리원은 공동 신생아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신생아들을 집단 수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신생아를 초기부터 분리시켜, 모아 애착과 모유 수유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의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켜, 국내에서는 신생아들의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신생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로타바이러스 감염 70건, RS 바이러스감염 226건, 감기 43건 등 전체 385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c)

따라서 만일 국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산모의 산후 조리도 중요하지만 신생아들이 모자 동실을 하면서 신생아에게 개별적인 관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가 지원이 선제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서 모아 애착과 모유 수유를 증진시키고 신생아의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6) 산후조리원 문화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

### 가) 모유 수유와 초기 모아 애착의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유 수유와 초기 애착의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모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명확해지면 산후조리원에서도 국가 지침이라는 명목 하에서 모유수유와 모아애착 등에 관한 교육 및 지원이 훨씬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산후조리원측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 수요자의 협조가 필요한 중요 활동(모유수유, 모자동실 이용 등)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위해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산모의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 안전사고 시 대처 요령, 양육에 필요한 기술 습득, 산모의 정신 건강 등에 대한 점점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양방향의 이해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내용에 관한 홍보 인쇄물 배포, 동영상

제작 및 방영 등을 하여야 한다.

#### 나) 교육주체 및 문화전달자로서의 산후조리원의 역할 정립

산후조리원이 병원과 가정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방향을 제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향후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모교육, 신생아 양육 기술, 산모교육 등에 대한 지침서를 국가에서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산후조리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 7) 산후조리원 업종 변경을 통한 평가 체계 전환 고려

산후조리원 업종 변경을 통한 의료기관 체제 내에서의 평가 전환을 신중하게 제안한다. 이에 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문화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은 필수 서비스 단계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법 내의 기관으로 법적 근거의 전환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의 질 제고를 기할 수 있다, 셋째, 의료기관에 준한 평가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산후조리원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근거로 산후조리원을 현행 다중이용업에서 의료법 내의 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제안한다.

####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는 기관을 통한 산후조리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모의 경우, 5주 정도의 산후조리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서비스 또한 산후조리에서 필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서 2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 1) 이용자 친화적 제도로의 전환 필요

우리나라 산모의 경우, 임신 9개월 정도가 되면 이미 신생아 출산을 위한 장소 및 이후 산후조리를 할 곳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산후조리의 경우 친정 부모나 시부모 집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2017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 6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과 시댁에서 평균 각각 22.3일, 20.3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18).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산모 거주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다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산모 거주지 행정기관에서 분만장소, 산후조리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만 및 산후조리 장소 지역으로 통보하는 행정시스템이 구비되면 해당 사업은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 2) 지역 중심의 산전 교육 통로로써의 역할 수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 산모와 남편 등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 제공 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체계로써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산전교육 및 상담 제공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혹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산전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이상의 내용에 관한 산전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를 통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원활한 정보 교류 및 교육/상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전 교육 형태는 개별 산모 대상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산모 중심의 소그룹 모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그룹을 통하여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써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3).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2015).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 보건복지부(2017b).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7c).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지침.
- 보건복지부(2018a).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8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8c).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8d).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8e).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
- 보건복지부(미발간, 2019 발간예정). 내부자료(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정연이·이운규·이경림(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정인숙·조동숙·이주현·김지윤·송영호·이종호·이은주(2016).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조남경(201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동태, 2012-2014: 바우처 결제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6(1): 1-48.
- 통계청(2017). 가구유형별 장래가구추계.
- 통계청 보도자료(2018. 10. 24). 2018년 8월 인구동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현황.
- The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cademy of Architecture.

〈홈페이지〉

국가바우처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store/where.do?p\\_sn=55](http://www.voucher.go.kr/store/where.do?p_sn=55) (인출일: 2018. 11.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인출일: 2018. 11. 28.)

마더세이프프로그램 <http://www.mothersafe.or.kr/mother-safe/member> (인출일: 2018. 11. 22.)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2](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2) (인출일: 2018. 11. 2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별 소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7](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7) (인출일: 2018. 11. 2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정보공개, 주요통계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인출일: 2018.11.27.)

정부24, 정부서비스, 임산부 철분제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16094> (인출일: 2018. 11. 22.)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4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428). (인출일: 2018. 11. 10)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5). 2주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지침서.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 급성기병원 인증조사기준(ver.2.1).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 요양병원 인증조사기준(ver.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지침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 의료기관인증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6). 정신의료기관평가 사업 최종보고서.

이소영·이상림·조성호·최인선(2015).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록

- 부록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 부록 2. 산후조리원 운영현황(기관용 조사표)
- 부록 3.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 시범평가후(최종안)
- 부록 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보고서(조사위원용)
- 부록 5.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시범평가후(최종안)
- 부록 6.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 사례집



## 부록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 부록 표 1-1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2018년 시범평가전)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b>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b>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b>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b>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계가 있다. 정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4.3	낙상 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b>Ⅲ. 운영과 질 관리</b>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정규
			2. 선정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정규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b>Ⅳ. 감염예방관리</b>				
8. 감염예방	8.1	손위생	1.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3. 산모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 손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 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b>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b>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입실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산모의 건강상태 및 산후우울증을 평가 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1. 모아애택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택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b>VI. 신생아 돌봄서비스</b>				
13. 신생아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부록 표 1-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2018년 시범평가후, 최종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b>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b>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b>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b>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 체계가 있다.	정규
	4.3	낙상 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b>Ⅲ. 운영과 질 관리</b>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시범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범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정규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b>Ⅳ. 감염예방관리</b>				
8. 감염예방	8.1	손위생	1.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준 분류	
			4. 손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b>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b>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1. 모아애탁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탁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b>VI. 신생아 돌봄서비스</b>				
13. 신생아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 Ⅲ. 인력현황

작성기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종사자 수 (평가 직전 년도 12개월간 영유아 건강기록부 기준)				
구분	계	인원수(명)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기타				
총계				
2. 간호(조무사) 근무현황(평가 직전 년도 12개월간 영유아 건강기록부 기준)				
근무교대		1조	2조	3조
근무시간		~	~	~
근무인원 (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b>&lt;작성방법&gt;</b>	
1. 종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직: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산후조리원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임</li> <li>- 임시직: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임</li> <li>-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대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 기재 (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정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              [예시 1]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가 20명인 경우 : 11명                  - 간호사: 20명 ÷ 7명 = 2.9명(3명)                  - 간호조무사: 20명 ÷ 2.5명 = 8명              [예시 2] 간호사 정원의 30%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경우                  - 간호사 정원이 4명인 경우부터 1명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간호사 정원이 3명인 경우 대체 불가(3명 중 1명이면 33.3%이므로 범위 초과)              [예시 3]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 경우                  - 간호사는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3교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3명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해야 함</li> <li>- 영양사: 평가일 직전 년도 12개월간 임신부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기재              (1일 평균 입원 임신부*가 30명 이상인 경우 1명 두어야 함)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계산방식과 동일함</li> <li>- 취사부: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를 두어야 함</li> <li>- 미화원: 규모에 따라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음</li> </ul>	



#### IV. 종사자 관리현황(1)

구분	이름	면허 번혀 (자격) (허당번호기입)	채용구분 (허당번호기입)	입사일	퇴사일	입사 전 관련 경력	담당업무 (허당번호기입)	소속기관 (허당번호기입)	건강 검진일	예방접종일	
										인플루엔자	백일해
산후조리업자						년 월					
건강관리 책임자						년 월					
간호사						년 월					
						년 월					
						년 월					
간호조무사						년 월					
						년 월					
						년 월					
영양사					년 월						
취사부											
미화원											

1) 면허(자격): ① 의사 ② 한의사 ③ 치과 의사 ④ 조산사 ⑤ 간호사 ⑥ 간호조무사

2) 채용구분: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임시직

3) 담당업무: ① 설비/소방 ② 산모교육 ③ 감염관리 ④ 신생아 돌봄

4) 소속기관: ① 병원 ② 산후조리원

##### <작성방법>

1.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사자 기준으로 기재
2. 입사 전 관련 경력: 업무 개시(시작) 전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 담당 경력을 기재
3. 소속기관: 병원부설의 경우 병원소속 또는 산후조리원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4.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최근 접종일 기재

#### IV. 종사자 관리현황(2)

구분	신입*	이름	교유명	교육내용					주최기관			
				감염관리	소방안전	산후조리업자 교육	성희롱 예방	기타	교육 이수일	교육 시간	자체	외부 (기관명 기재)
산후조리업자												
직기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작성방법>  
 1.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대상으로 평가일로부터 최근 1년간 교육 이수 현황을 기재함 ※ 연1회 교육인 경우 평가 직전 별도 이수일자 기재)  
 2. 신입\*직원의 경우 Y(예) 표시  
 3. 교육내용: 해당하는 교육내용에 Y(예) 표시(중복표시 가능)  
 4. 주최기관: 자체/외부교육 여부를 표시하고, 외부교육일 경우 주최 기관명까지 기재

### V. 소방안전 시설 현황

구분		비치여부		개수	비고
		있음	없음		
소방시설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벨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피난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3층 이상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등					
안전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비상구				( , , , , , )층
대피물품	피난조끼				
	피난채어				
	피난선패				

**<작성방법>**

1. 현재 산후조리원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에 대해 Y(예) 표시하고 개수를 기재  
 ※ 소방시설은 건물 면적별, 층별, 용도별에 따라 설치되고, 산후조리원 신고일을 기점으로 추가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음.  
 ※ 참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Ⅵ.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발생일자	대상		감염성 질환(하단번호기입)				이송여부	
	신생아	산모	위장 관계	호흡 기계	접촉 감염	기타	이송함	이송 안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장관계	호흡기계	접촉감염	기타
①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②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 ③ 장염	① 폐렴 ② 상기도 감염 (감기) ③ 모세기관지염	① 배꼽 감염 ② 눈 감염	① 뇌수막염 ② 패혈증 ③ 요로감염 ④ 헤르페스 ⑤ 화농성 감염 등

### <작성방법>

-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에 대해 기재
- 표시방법: 해당사항에 Y(예) 표시하고, 감염성질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번호를 기재

### VII. 의료기관 이송과 보건소 보고 현황(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이송일자	이송대상		이송사유			이송결과		보건소 보고	
	신생아	산모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화재 등 사고	입원	외래	보고함	보고 안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방법>**

1.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송과 보건소 보고 현황에 대해 기재
2. 표시방법: 해당사항에 Y(예) 표시

부록 3.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 시범평가후(최종안)

---

##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

---

평가대상 산후조리원 명칭	
현장 평가자 성명	(서명)
현장 평가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표 I.1] 인력 적정성 (보건소 실태조사서)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번호	구분	평가결과 (실태조사)		비고	
		충족	비충족	시정조치 받음	시정조치 해결
1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 보건소의 실태조사서에는 아래의 내용 1) ~ 4)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같음함)

-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신생아 입실자료

[현장평가표 1.2.1.] 종사자 채용/유지 (종사자 인사정보)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종사자 보안 각서
- 직무기술서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I.2.1-1) 인사관리의 규정이 있다.

	상	중	하
인사관리의 규정 확인			

I.2.1-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 인력 모집 / 배치 여부 확인

	유	무
직원 채용 절차 준수		

I.2.1-3) 인사 정보 관리 여부 확인

[자료③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IV. 종사자 관리현황(1), (2)를 통해 확인

	상	중	하
인사관리의 규정 확인			

I.2.1-4) 직무기술서 여부 확인

	유	무
직무기술서 여부		



[현장평가표 1.2.2] 종사자 교육/계발 (최근 2년)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소방안전 교육 이수, 감염관리 교육 이수
- 종사자 교육 대장: [자료③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IV. 종사자 관리현황(1) (2) 확인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 서류

1.2.2-1) 연간 직원 교육 계획 확인

	상	중	하
연간 직원 계획 (예산(지원)이 포함)			

1.2.2-2)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 1) [자료③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IV. 종사자 관리현황(1) (2)를 통해 교육 내용 및 시간 확인
- 2) [자료③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IV. 종사자 관리현황(1) 를 통해 신입 사원의 채용 일자리를 확인하고, (2)를 통해 1주일 내에 업무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3) [자료③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IV. 종사자 관리현황(2)를 통해 교육 이수 정보 업데이트 및 직원별 관리 확인

	상	중	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1.2.2-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1) [자료③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IV. 종사자 관리현황(1) (2)를 통해 교육 내용 및 시간 확인
  - 반드시 년 1회 8시간 이상의 감염예방과 년 1 회 이상 소방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유	무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현장평가표 1.2.3] 종사자간 의사소통

##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
-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 1.2.3-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 1.2.3-2) 산모 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 1) 조리원 측의 자체 근무 교대 일지 확인
- 2) 직원 인터뷰: 근무 교대시 정보 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확인

	상	중	하
근무 교대 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현장평가표 II.3.1] 시설 적정성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임산부실, 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II.3.1-1) 신생아실 손씻기 시설 확인

(※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 반드시 손씻기 시설 확인)

	상	중	하
신생아실 손씻기			

II.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 간격 확인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한지 확인

	유	무
신생아 요람사이 간격		

II.3.1-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유	무
사전관찰실 여부		

II.3.1-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유	무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II. 3.1. 시설 적정성

구분	내용																						
위치	산모실: ( )층      신생아실: ( )층																						
신생아실(1)	요람 개수:                      세면대 개수:                      손위생 젤 개수: 신생아수가 16명 이상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data-bbox="404 595 1107 710"> <tr> <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1년간의 평균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라도 16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생아실(2)	요람 개수:                      세면대 개수:                      손위생 젤 개수: 신생아수가 16명 이상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data-bbox="404 942 1107 1058"> <tr> <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1년간의 평균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라도 16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생아실(3)	요람 개수:                      세면대 개수:                      손위생 젤 개수: 신생아수가 16명 이상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able border="1" data-bbox="404 1286 1107 1402"> <tr> <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td>월</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1년간의 평균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라도 16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함.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요람간격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 보건소 신고 인원 ( ) / 현재 신생아실 요람의 개수 ( )																						
관찰공간	관찰요람 ↔ 가장 가까운 요람: ( )cm 칸막이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현장평가표 II.4.1] 설비관리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II.4.1-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확인

	상	중	하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규정			

II.4.1-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전기설비 관리			

II.4.1-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가스 설비 관리			

II.4.1-4) 급수 설비 및 수질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급수설비 및 수질 관리			

II.4.1-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유	무
실내공기질 관리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전기	1. 실별 취사나 전열기(전기장판, 히터) 사용제한			
	2. 문어발식 콘센트 여부			
	3. 전선의 피복 상태나 무거운 물체 눌림 여부			
	4. 배선기구(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 여부			
가스	1. 주기적인 가스 점검 여부			
급수	1. 먹는 물(정수기 등) 점검 여부			
	2. 정수기 물받이의 이물질 상태			
	3. 정수기 몸체 및 정수기 주변의 청소와 청결 상태			
공조	1. 실내공기질 측정			
	2.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기준 준수			

[현장평가표 II.4.2] 소방안전관리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년 1회):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II.4.2-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소방안전관리 규정			

II.4.2-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상	중	하
화재 예방 점검 수행			

■ 화재예방 안전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및 점검 (※압력계이지 확인)				
2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작동기능 점검				
3	소화전 설치 및 점검				
4	화재경보설비 설치 및 점검				
5	피난기구(사다리, 완강기 등) 구비				
6	피난구유도등(비상유도등) 설치 및 작동				
7	피난 안내도 부착 및 관리 (※ 비상구, 피난동선 및 소화기 위치 등의 내용 포함,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확인)				
8	대피로 확보 및 비상구 점검 (※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 확인, 비상구 위치확인 및 개방여부확인,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여부)				
9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10	소방계획서 구비				
11	소방시설 자체점검				

II.4.2-3) 소방 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

	상	중	하
소방훈련 수행 직원 숙지 여부			

II.4.2-4) 응급 상황 시 연락 체계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응급 상황 연락 체계			

번호	구분				비고
1	소방계획서 비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계획서 내용	이용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안전시설 유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화기취급관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비상대응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피난유도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비상구 개방	비상구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상구 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상구 3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상구 4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상구 5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비상연락체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피난계획	산모대피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신생아대피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응급체계	산모실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산모실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산모실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소화기 1	압력계이지(초록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소화기 2	압력계이지(초록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소화기 3	압력계이지(초록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현장평가표 II.4.3.] 낙상예방관리

○ 확인 내용

-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 예방 활동 근거 서류

II.4.3.-1)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낙상 예방 규정 확인			

II.4.3.-2)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시행 여부 확인

	상	중	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실내바닥 미끄러움		조명관리 (야간조명)		신발바닥 미끄러움		낙상예방 안내문		비고
	아니오	예	없음	있음	아니오	예	있음	없음	
신생아실 1									
신생아실 2									
신생아실 3									
산모실 1									
산모실 2									
산모실 3									

[현장평가표 III.5.1] 입퇴원관리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소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III.5.1-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III.5.1-2)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유	무
책임보험 가입 여부		

III.5.1-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체계 및 환불 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유	무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체계 및 환불 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III.5.1-4) 입실 시 산모 교육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 1) 입실안내문의 산모 교육 내용 확인
- 2) 아래의 표와 같이 임의로 산모 3명에게 교육 내용 확인

	상	중	하
입실 시 산모 교육 시행 여부			

		평가결과	비고
책임보험가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규정 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 1	보안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 2	보안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 3	보안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II.5.5-4)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상	중	하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현장평가표 III.5.2] 의료기관 연계/이송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최근 1년)

III.5.2-1) 의료기관 연계, 이송 절차(지침) 확인

	상	중	하
의료기관 연계, 이송 절차(지침)			

III.5.2-2) 의료기관 연계, 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상	중	하
의료기관 연계, 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번호			평가결과	비고
1	이송여부 결정기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결정기준 준수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2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3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2	이송절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보건소장 보고지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보고여부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2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3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III.5.3] 문서관리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최근 2개월 이내)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III.5.3-1) 문서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문서 관리에 대한 규정			

III.5.3-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확인 건수: 3건)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원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상	중	하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번호			평가결과	비고
1	문서 기록 및 수정원칙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정원칙 준수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2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3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2	문서관리 지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문서보관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잠금장치	보관장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보관장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보관장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현장평가표 III.5.4] 방문객관리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대장)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포스터 부착 등)

III.5.4-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III.5.4-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방문객 관리 여부			

III.5.4-3) 방문객 감염 관리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방문객 감염 관리 수행 여부			

번호			평가결과			비고
1	방문객 관리대장(또는 CCTV)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관리대장 내용	방문일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방문자 이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방문객 출입관련 안내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방문객 준수	신생아 1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2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3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방문객 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방문객 손위생	방문객 1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방문객 2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방문객 3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III.6.1] 만족도 평가

○ 확인내용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1, 2, 3: 시범 항목

III.6.1-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상	중	하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			

III.6.1-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상	중	하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현장평가표 III.6.2] 자체 점검

구분	연 1회 점검	업무개선 활용	비고
신생아실 이용시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모유수유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손위생 실천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감염발생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안전사고발생현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 만족도 분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한 자료만을 인정함.

## III.6.1-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결과	비고
만족도 평가도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만족도 평가실시	산모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 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 3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만족도 분석결과 활용사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II.6.1-4) 불만 및 고충 사항 안내 여부 확인

	유	무
불만 및 고충 사항 안내 여부		

## III.6.1-5) 불만 및 고충 사항 처리 여부 확인

	유	무
불만 및 고충 사항 처리 여부		



[현장평가표 III.7.1] 경영관리: 리더십 및 조직 문화

○ 확인내용

- 원장 인터뷰(모자동실, 신생아감염관리에 대한 질의)
- 직원 인터뷰

III.7.1-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 개선

	유	무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 개선		

III.7.1-2) 직원과의 의사 소통

	유	무
직원과의 의사 소통		

III.7.1-3) 직원의 전문성 향상

	유	무
직원의 전문성 향상		

[현장평가표 IV.8.1] 손위생

○ 확인내용

- 손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산모)
-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IV.8.1-1) 손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손위생에 대한 규정			

IV.8.1-2) 직원 손위생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 최소 6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상	중	하
직원 손위생 수행 여부			

■ 손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산모 접촉 전·후				
6	모유수유 준비 전, 수유 전				
7	기저귀 교환 전·후				

IV.8.1-3) 산모 손위생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 최소 3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상	중	하
산모 손위생 수행 여부			

■ 손위생 활동 점검표(산모)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IV.8.1-4) 손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상	중	하
손위생 물품 구비 여부			

IV.8.1-5)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상	중	하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현장평가표 IV.8.2] 개인보호구 착용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IV.8.2-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상	중	하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IV.8.221)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구분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개인보호구 보유 (110% 이상)		비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장갑					
마스크					
가운					

[현장평가표 IV.8.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위탁계약서

IV.8.3-1)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			

IV.8.3-2)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세탁물 관리 여부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 (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 (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현장평가표 IV.8.4] 물품소독/관리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 요람 소독일지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IV.8.4-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			

IV.8.4-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상	중	하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IV.8.4-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상	중	하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구분		평가결과		비고
신생아용품 개별보관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물티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비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로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목욕대야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요람소독(일지)	요람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요람 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요람 3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목욕대야 소독	소독지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지침 준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수유물품 소독	소독전 세척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건조 후 보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산모용품 개별사용	유축칼때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좌욕대야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물품소독제 인증서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현장평가표 IV.8.5] 환경관리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 및 점검표
- 소독관련 기록대장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IV.8.5-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IV.8.5-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상	중	하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에어컨 필터 청소여부(신생아실, 산모실 등)			
5	신생아 요람 관리			
6	수유준비실 관리			
7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8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9	좌욕실 관리			
10	청소용품 관리 (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11	손 씻기 시설			
12	기구 세척실 관리			
13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현장평가표 IV.8.6] 급식관리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IV.8.6-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IV.8.6-2) 조리장 환경 위생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조리장 환경 위생 관리 여부			

IV.8.6-3) 식재료 관리 상태 확인

	상	중	하
식재료 관리 상태			

IV.8.6-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IV.8.6-5) 취사자 개인 위생 관리 여부 확인

	상	중	하
취사자 개인 위생 관리 여부			

## IV.8.6-6) 외부 위탁시 관리 여부 확인

	유	무
외부 위탁시 관리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식품위생 법정기준 준수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유통기한 준수	식품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식품 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식품 3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정수기 점검(점검일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조리도구·행주	소독방법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비준수
		건조상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냉장·냉동 온도확인	온도계 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적정온도 유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청결상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취사자 복장 및 청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장평가표 IV.8.7] 종사자 관리(최근 1년간)

○ 확인내용

- 건강검진확인서(산후조리업자, 종사자)
- 예방접종확인서(산후조리업자, 종사자)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IV.8.7-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IV.8.7-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상	중	하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IV.8.7-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유	무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건강검진	장티푸스 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잠복결핵검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백일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종사자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지침 내용	근무제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한기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조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장평가표 IV.9.1] 감염관리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
-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절차
- 신생아 건강기록부

IV.9.1-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상	중	하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IV.9.1-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상	중	하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감염발생관리지침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감염발생관리 지침 내용	의료기관 이송계획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격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용물품 소독과 처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추가 감염 확인 절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신생아 격리	신생아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생아 3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V.10.1] 산모 건강평가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산모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산후우울증 설문지

V.10.1-1)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입실, 재원, 퇴실 시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V.10.1-2) 산후우울증 평가를 재원 중에 2회 실시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유방	소변	대변	오로	정서상태	
1	산모 1	입원시						
		재원중						
		퇴원시						
2	산모 2	입원시						
		재원중						
		퇴원시						
3	산모 3	입원시						
		재원중						
		퇴원시						

[현장평가표 V.11.1] 모자동실

○ 확인내용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V.11.1-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상	중	하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V.11.1-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10점 가산

V.11.1-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현장평가표 V.11.2] 모자동실

구분		평가결과	비고
모자동실 촉진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신생아실 이용시간	신생아 1	(        ) 시간	
	신생아 2	(        ) 시간	
	신생아 3	(        ) 시간	

[현장평가표 V.11.3] 모유수유

구분	평가결과			비고	
모유수유 촉진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완전모유수유	신생아1	신생아2	신생아3	신생아4	신생아5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완전모유수유 (Y, N)					

[현장평가표 V.12.1] 부모교육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이수 관리대장)
- 강의료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V.12.1-1) 부모교육 계획 확인

	상	중	하
부모교육 계획			

V.12.1-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V.12.1-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V.12.1-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V.12.1-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V.12.1-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유	무
아버지의 교육 자료 제공		



구분	평가결과	비고					
산모교육 이력관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이수		산모1		산모2		산모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산모건강관리	산모위험상황						
	패드교환과 좌욕방법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영양섭취 기준						
	성교시기와 피임방법						
신생아 돌봄	신생아 응급관리						
	신생아 올바른 안는 방법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신생아 수유자세						
	신생아 목욕방법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모아상호작용							
영아돌연사예방							

[현장평가표 VI.13.1] 신생아 확인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치 가능)
- 신생아 식별: 1가지 이상의 식별 정보, 반드시 팔찌나 발찌 중 하나는 포함.

VI.13.1-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VI.13.1-2) 신생아 식별 여부 확인

	상	중	하
신생아 식별 여부			

VI.13.1-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인식표	식별정보(1가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팔찌 / 발찌
		항상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입원시 2인 서명 (종사자, 산모)	신생아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신생아 2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신생아 3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장평가표 VI.14.1] 신생아 건강평가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VI.14.1-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VI.14.1-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VI.14.1-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구토	설사	발열	피부	배꼽	눈	황달		치짐
1	신생아 1	입원시									
		재원중									
		퇴원시									
2	신생아 2	입원시									
		재원중									
		퇴원시									
3	신생아 3	입원시									
		재원중									
		퇴원시									

[현장평가표 VI.15.1] 위생 관리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신생아 건강기록부

VI.15.1-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상	중	하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VI.15.1-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상	중	하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위생지침	지침 보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침 준수 (눈관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신생아 1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저귀 발진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배꼽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눈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신생아 2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저귀 발진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배꼽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눈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신생아 3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저귀 발진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배꼽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눈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현장평가표 VI.15.2] 신생아 수유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VI.15.2-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VI.15.2-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상	중	하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VI.15.2-3) 분유 관리 확인

	상	중	하
분유 관리			

VI.15.2-4) 수유준비 확인

	상	중	하
수유준비			

VI.15.2-5) 수유 실시 확인

	유	무
수유 실시		

구분		평가결과		비고
산모별 모유 냉동 보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모유보관기간 (72시간 미만)	모유 1 ( )시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모유 2 ( )시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모유 3 ( )시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냉동모유 가열 방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분유 물의 가열 방법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셀프 수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현장평가표 VI.15.3] 안전관리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규정(지침)

VI.15.3-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상	중	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VI.15.3-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상	중	하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VI.15.3-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상	중	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예방방안 숙지 (종사자 1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신생아 수면자세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신생아 요람내 시트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신생아 수면장소	산모 1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산모 2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산모 3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비정상	

#### 부록 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보고서(조사위원용)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대상기관명			
조사기간		보고일자	

구분	조사위원명	소속기관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1			
조사위원 2			

상기 조사위원은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첨부 1. 총평보고서
- 2. 팀별 항목별보고서

## 첨부 1. 총평보고서

## 총평 보고서

대상기관명	
조사기간	

### 1. 총평



## 2. 중영역별 조사위원 평가

\* 조사결과가 무, 중, 하인 평가항목에 대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중영역	평가항목	내용
<b>(1) 인력 적정성</b>		
		* 항목별 보고서 중 '조사위원 판단근거 및 의견'을 기술
<b>(2) 인력 전문성</b>		
<b>(3) 시설 적정성</b>		
<b>(4) 시설 안정성</b>		
<b>(5) 운영관리</b>		
<b>(6) 질관리</b>		
<b>(7) 경영관리</b>		

중영역	평가항목	내용
<b>(8) 감염예방</b>		
<b>(9) 감염관리</b>		
<b>(10) 산모 건강평가</b>		
<b>(11) 모아애착</b>		
<b>(12) 부모교육</b>		
<b>(13) 신생아확인</b>		
<b>(14) 신생아 건강평가</b>		
<b>(15) 신생아 관리</b>		

첨부 2. 항목별보고서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포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하	미해당	
1.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인력 적정성	1.1	필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DR	S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위탁조리사 (총사자 명부)</li> <li>- 4대 사후보형 시인장 2인자 명부</li> <li>- 총사자 근무표</li> <li>- 총사자 관리 대장</li> <li>- 기간관리 책임서지장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일도 4회 실시한 결과</li> <li>- 센터조리사에서 인력기준 충족여부 결정, 양성(4회) 인력기준 충족함</li> </ul>				1. 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합니다. 2. 작성요항: '인제', '아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2. 인력 전문성																		
총사자 채용 유지	2.1.1	정규	인사편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2.1.2	필수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자 관리대장</li> <li>- 건강검진진단서 (장액 결핵 검사 포함) 및 예방접종 확인서류</li> <li>- 총사자 보인자서</li> <li>- 총사자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li> </ul>								
	2.1.3	정규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O												27가지 모두 충족, 상
2.1.4	정규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DR	P	O				직무기술서									직무 기술서가 있고,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총사자 교육개발	2.2.1	정규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DR	S				연간 교육 계획서									계획에 예산 포함되어 있어야 함
2.2.2	정규	직원의 직무수행에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O													37가지 모두 충족,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무		미
	3.1.2	장규	산생아 양육관 도입시기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IT	P	O						요원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1. 평가결과 '무' 중 '하'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하십니다. 2. 작성요령: '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 하십시오.
	3.1.3	장규	산생아실에 사면관찰실이 있다.	IT	S	O						- 사면관찰실을 두고 있음 - 다른 산생아와 인접이식 떨어져 있고,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3.1.4	장규	산생아실은 임박에서 관할이 가능하다.	IT	P	O						- 산생아실 외부					
4.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4.1.1	장규	시범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4.1.2	장규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4개 모두 충족: 상				
	4.1.3	장규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4.1.4	장규	금수설비 및 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3개 모두 충족: 상			
	4.1.5	장규	설비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O								2개 모두 충족: 유			
소방안전 관리	4.2.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4.2.2	필수	화재예방장치를 수행한다.	DR/IT	P	O	O							점당점의 80%이상 : 상, 최소 5건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표)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표)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하		미해당	
낙성애방 관리	4.2.3	필수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	P	O			소방훈련 근거서류 작성, 면담에게 비정내응조직(사무소방 대제원)									
	4.2.4	장규	신도신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있다.	IT	P	O			신도에게 응급상황 연락 체계 설명	3건								
	4.3.1	필수	낙성애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낙성 애방 규정									
	4.3.2	필수	낙성애방을 위한 인양장비를 시행한다.	IT	P	O			낙성애방 안전점검표 낙성애방활동 근거서류									4개 모두 충족: 상 낙성 애방 활동 근거 서류 있음
<b>III. 운영과 질 관리</b>																		
<b>5. 운영관리</b>																		
인퇴실 관리	5.1.1	장규	인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인퇴실 관리 규정									
	5.1.2	필수	신용조리업자는 확인보통에 가입되어 있다.	DR	S	O			확인보통가입증서 (순해, 죄책)									
	5.1.3	필수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O			서비스내용, 이용요금 등의 게시(바자) 확인									
	5.1.4	장규	필수	입실 시에 신도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IT	P	O			입원 시, 신도 교육 근거자료, 입소생활 안내문, 도인계획, 소양안진 및 대면계획, 방문관리계획, 감염예방 관리계획, 의료기관 이용계획, 낙성 애방 계획, 입원중신도의 입원중신도의 교육이수확인	3건	교육내용 모두 교육하거나 근거자료 제공한 상						
5.1.5	장규	필수	인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인퇴실 절차 및 인퇴실 지원사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내용 숙지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표)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표)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무	미
의료기관 연계 이상	5.2.1	필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절차가 있다.	DR	S				의료기관 연계 이송 지침		80%이상 상						
	5.2.2	필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IT	P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지침 - 신생아 건강기록부	산후조리원지 (또는 건강관리센터)는 80% 이상 숙지하고 있으며, 이송된 경우 모두 병무소장에게 보고됨. 상							
	5.3.1	장규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문서관리 규정								
문서관리	5.3.2	장규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O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원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월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시행도 누락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 5건 모두 충족. 상						
	5.3.3	장규	문서의 대출, 열람 및 관리를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O			문서의 보관 상태 확인								
병문과 관리	5.4.1	장규	병문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병문과 관리 규정								
	5.4.2	필수	병문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O	O		병문과 영부(대장)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무		미		
	5.4.3	장규	방문객에 대한 상담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O					방문객을 손 씻기 시선 확인 - 방문객 상담예반 교육 근거자료 - 손위생 홍보활동 자료	3건	교육근거로 있고, 세면대에 손위생 물품 비치, 손 위생 관련 홍보활동 자료 있음, 방문객 상담원 수명관리 시 모두 결사, 장				1. 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 직선요약, '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6. 질 관리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6.1.1	장규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6.1.2	시범	신중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최근 1년)	수위생 수행률 등 표행회 2개 이상 자료 수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질 관리 활동 수행 상						
	6.1.3	장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O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퇴원한 신도 자료 확인	3건	만족도 평가도구 있고, 3인 모두 만족도 평가 실시, 분석결과를 상담객에게에 활용한 사례 있음. 상					
	6.1.4	장규	불만 및 고충사항 장수에 대한 인내가 있다.	DR	P	O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근거 서류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음						
	6.1.5	장규	잠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O						잠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등 관련서류 있음. 유							
7.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 문화	7.1.1	장규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S							원장 인터뷰	모자돈상과 신생아 2명관리에 대한 철학에 대한 질의						
	7.1.2	장규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IT	P							직원 인터뷰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 확인하고 처리 여부 확인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7.1.3	장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O				원장 인터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지출 여부를 확인				1. 평가결과 '무', '중', '하'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하십시오. 2. 작성요령: '인재',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IV. 감영예방법															
8. 감영예방법															
감영예방법	8.1.1	필수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손위생 대한 규정						
	8.1.2	필수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O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	5건	80% 수행: 상, 최소 6항목 이상				
	8.1.3	필수	신도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O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	5건	80% 수행: 상, 최소 3항목 이상				
	8.1.4	필수	손 위생을 위해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li> <li>구매(인고)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위생 물품비지 (사용기회 표기)</li> <li>신생아실 종이타월</li> <li>(1회용) 타월사용</li> <li>물품구매 내역 근거서류</li> </ul> ⇒ 47가지 모두 충족 : 상					
	8.1.5	필수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li> <li>서민대 명 손위생 방법 비지(부차)</li> <li>손위생 포스터 부착</li> </ul>	27지 모두 충족: 상					
개인 보호구 착용	8.2.1	장규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DR	S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8.2.2	장규	지침에 따라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구 착용 지침에 보호구 착용</li> <li>- 기구물품 세척 시 보호구 착용</li> </ul>	3건	80% 이상 충족: 상 (확인 불가 시, 직원 단면)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8.3.1	장규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관</li> <li>위탁계약서</li> <li>세탁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li> </ul>						
	8.3.2	장규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탁물 관리 장갑표</li> <li>세탁물 및 폐기물 처리 근거자료</li> </ul>	5개 이상 충족: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하	미해당		
문품 소독관리	8.4.1	장규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								1. 평가결과 '무, 중, 하'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합니다. 2. 작성요항: '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할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8.4.2	장규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O				- 수용물, 수도 - 신세탁 용품 - 소독약(2건) - 용제에 사용 (전용 1회 이상) - 세척/염 보호장구 착용 여부	47지 모두 충족: 상							
	8.4.3	장규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O				- 수용물 보관상태 - 신세탁 용품 개별번호 사용 - 용제에 보관상태 - 신도 응축제(배기, 진공)에 개별 보관, 사용	47지 모두 충족: 상							
환경관리	8.5.1	장규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환경관리에 대한 규정								
	8.5.2	장규	위생관리 활동들을 수행한다.	IT	P	O				- 환경위생관리 정건표 - 공용시설 환경 및 정건표 - 소독관리 기록대장 - 사용, 중진 - 환경상태제 사용결말서, 인증서	11개 이상 충족: 상							
금식관리	8.6.1	장규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조리장에 대한 위생 관리 규정								
	8.6.2	장규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O				- 식기 조리기구 보관상태 - 위생/오염구역 구분 - 음식물 쓰레기 관리	37지 모두 충족: 상							
	8.6.3	장규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O				- 식재료 감수일지 - 유통기한 준수여부 - 식재료 재용일지 라벨링	37지 모두 충족: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관찰 (기록)	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 상	중 하	미 해 당		
조사자 관리	8.6.4	장규	방청고 및 방동고를 관리한다.	IT	P	O					37지 모두 충족: 상				1. 평가결과 '무, 중, 하'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하십시오. 2. 작성요령, 인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8.6.5	장규	조리원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O					27지 모두 충족, 직원 수지정도 80%이상: 상					
	8.6.6	장규	이부 위생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O										
	8.7.1	필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8.7.2	필수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직원 모두 건강진행 예방진행 실시하고 관련 교육 실시함					
	8.7.3	필수	직원은 인종차별 및 건강성취를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IT	P	O					직원 수지정도 100%: 유					
9. 감염관리																
감염관리	9.1.1	필수	감염성 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감염성 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9.1.2	필수	감염성 질환자 발생 시 당황에 따라 조치한다.	IT	P	O					- 직원 수지정도 80%이상: 상 - 발생 시 의료기관 이상 건 신고할 또는 격리실 격리함					
V. 산모 돌발서비스																
10. 산모 건강평가																
산모 건강평가	10.1.1	장규	임신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산모 건강기록부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통증, 부종.	5건			100%: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관찰 (기록)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 상		중 요 성
								대상별 정서 상태 (신착은 줄)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도의 건강기록부 확인)						
	10.1.2	장구	재원 중 신도의 건강상태 및 신용우물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신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100% : 상				
	10.1.3	장구	퇴실 시 신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신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도의 건강 기록부 확인)	5건	100% : 상				
11. 모이예학														
	11.1.1	필수	모이예학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모이 예학을 위한 계획						
모이예학, 모유수유	11.1.2	필수	신도의 모이예학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중 신장, 신생아/신/ 신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시간 확인)	5건	신생아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상, 10시간 이상인 경우 : 상, 10점 확인				
	11.1.3	필수	신도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모유수유 촉진 교육 근거 자료, 신생아 건강기록부 모유수유 실시 시간 확인	5건	1월 8회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함 (신모의 80% 이상) : 상				
12. 부모교육														
	12.1.1	필수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 교육계획 (스케줄) 및 교육 지침 - 교육 이수자 관리						
부모교육	12.1.2	필수	신도의 건강관리방법을 교육한다.	DR/IT	P	O		- 건강관리방법 내용 교육 여부 - 교육 이수 확인 (현실자 3건) - 교육영장제출 (재원자 3건)	6건	교육 내용 6개 + 교육 이수 100% + 모든 충족 :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관찰 (기록)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 상	중 하	미 해 당		
	12.1.3	필수	산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IT	P	O										
	12.1.4	필수	산생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IT	P	O										
	12.1.5	필수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IT	P	O										
	12.1.6	필수	아내가 산후 교육 및 산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IT	P	O										
VI. 산생아 돌봄서비스																
13. 산생아 확인																
	13.1.1	필수	정확한 산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산생아 확인	13.1.2	필수	산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O										
	13.1.3	필수	산생아를 신도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O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무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1	장규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신생아 건강기록부 (모든 신생아 출생수, 출생성, 체중, 피부병징, 생김새, 눈, 분변, 배설, 예방접종여부)	5건	100% : 상				
신생아 건강평가	14.1.2	장규	개원 초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신생아 건강기록부 (영아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100% : 상				
	14.1.3	장규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신생아 건강기록부 (영아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100% : 상				
15. 신생아 관리																
	15.1.1	장규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신생아 위생 관리 지침						
위생관리	15.1.2	장규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O	O			-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 기저귀 교환 (1일 6회 이상) - 배변상태 - 눈 분비물, 장결상태 - 눈 위생 실시	3건	37지 모두 충족: 상				
	15.2.1	장규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신생아 수유관리 규정						
신생아 수유	15.2.2	장규	생인생동 중인 모유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O			- 냉동/냉동 중인 모유 보관상태 - 보관기한 준수		27지 모두 충족: 상				
	15.2.3	장규	분유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O			- 분유 유통기한 관리 - 분유통 관리 상태 - 분유 보관 장소 - 분유 개봉일자 라벨링		47지 모두 충족: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 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평가결과 (해당시 'V'로 기록)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서류 (기록)	관찰	직원 면담	신도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유상	중	무 하	미 해 당				
	15.2.4	장규	안전하고 친절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유준비실 (생모유인 분리)</li> <li>- 유류 준비 전용 공간에 여러 대의 수유기 보유</li> <li>- 유류 교체 방법</li> <li>- 유류 적정 분량준비</li> </ul>		5가지 모두 충족: 상 (간질 풀기 시 적면 숙시 80% 이상)									
	15.2.5	필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유수 신시 (수유실, 산모실)</li> <li>- 신생아 self 유유</li> <li>- 신 생 인</li> <li>- 수 유 남 음</li> <li>- 분유(모유) 처리</li> </ul>											
	15.3.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신생아 안전 관리 규정										
안전관리	15.3.2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영아 돌연사 위험</li> <li>o 영아 예방 방법</li> <li>o 신생아 수면 자세</li> <li>o 관찰</li> <li>o 음분과량</li> <li>o 산모신체치</li> <li>o 신생아 수면 시 고음</li> <li>o 신생아 호흡</li> <li>o 신생아 피부색</li> <li>o 신생아 피부분액</li> <li>o 음분상황 발생시 대응방법</li> <li>o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숙지정도 80% 이상</li> <li>- 산모 3명 100% 숙지 (침대에서 재우지 않음)</li> <li>- 숙시</li> <li>- 영아위 또는 숙위 자세 유지</li> <li>- 요관관찰 (단단한 시트, 목신원 배개, 안원 등 있음)</li> <li>⇒ 상</li> </ul>									
	15.3.3	필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에게 교육한다.	IT	P	O						직원 숙지정도 80% 이상: 상								

부록 5.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시범평가후(최종안)

#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2018. 11.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목 차

<b>제1장 평가 개요</b>	<b>200</b>
1. 평가항목의 기본 틀	201
2. 평가항목의 이해	201
3. 평가방법	202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203
<b>제2장 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b>	<b>205</b>
1. 기본원칙	206
2. 평가항목 충족기준	206
<b>제3장 평가항목의 이해</b>	<b>207</b>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08
1. 인력 적정성	210
2. 인력 전문성	213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21
3. 시설 적정성	223
4. 시설 안전성	226
III. 운영과 질 관리	235
5. 운영관리	237
6. 질 관리	249
7. 경영 관리	252
IV. 감염예방관리	254
8. 감염예방	256

9. 감염관리 .....	276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	278
10. 산모 건강평가 .....	280
11. 모아애착 .....	282
12. 부모교육 .....	284
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	288
13. 신생아 확인 .....	290
14. 신생아 건강평가 .....	292
15. 신생아관리 .....	294

---

# 제1장 평가 개요

---

## 1. 평가항목의 기본 틀

- 평가항목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질 관리 문화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평가항목의 이해

### ○ 평가대상

-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 평가항목의 분류

-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에서 항목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정규]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 [필수]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하는 평가항목
- [시범] : 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항목

### ○ 평가영역 구분

- 평가영역 구분별 설명

평가영역(S,P,O)		설명
S	System	구조: 규정(내규, 지침 등), 절차, 계획의 수립
P	Process	과정: 계획 수립 및 시행, 개별교육, 숙지, 인지, 수행정도 확인
O	Outcome	결과(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

- 미해당 항목

- 사전 제출한 자료 검토를 통해 '미해당' 항목으로 확인된 경우, 본 평가 시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하여 '미해당'으로 판단한다.

- ‘미해당’으로 판정된 평가항목은 결과판정을 위한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규정, 지침, 내규 및 절차

▪ 개념 정의

- 산후조리원 내부에서 정한 업무표준을 총칭하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원칙, 서비스제공에 대한 원칙, 업무지침 등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의한 내부준칙을 말한다.
- 규정은 관련 법규나 국제표준 또는 공인된 지식체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 절차는 업무 혹은 서비스 과정(프로세스)을 정의한 것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 해당 규정(지침, 내규 등) 및 절차, 계획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하 평가항목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는 ‘무’ 또는 ‘하’로 판정한다.

3. 평가방법

○ 평가장소

- 평가항목에서 제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후조리원 내 관련 장소에서 평가한다.

○ 평가대상

- 평가항목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직원, 산후조리업자, 산모에게 질문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관련 용어설명

평가방법	용어설명
DR(Document Review)	규정(내규, 지침 등) 및 절차 검토
Tracer - IT(Individual Tracer) - ST(System Tracer)	- 직원, 산모 면담조사 - 기록 검토 - 관찰 -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토

####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9개 평가항목(시범적용: 1개 평가항목)

\* ME: Measure Element, 평가항목

\* 괄호(): 시범항목 개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ME)	분류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4	10		
			1	필수(1)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필수(1)
		2.1	종사자 채용·유지	4	필수(1)-정규
		2.2	종사자 교육·개발	3	필수(1)-정규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2	정규
				15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	4	4	필수(1)-정규	
			5	정규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필수(1)-정규
		4.1	설비관리	5	정규
		4.2	소방안전관리	4	필수(3)-정규
		4.3	낙상예방관리	2	필수(2)
			21		
III. 운영과 질 관리	3	6	5	필수(2)-정규	
			2	필수(2)-정규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필수(2)-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	필수(2)-정규
		5.3	문서관리	3	정규
		5.4	방문객관리	3	필수(1)-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5(1)	정규-시범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3	정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ME)	분류
IV. 감염예방관리	2	8	25	
		8.1 손위생	5	필수(5)
		8.2 개인보호구 착용	2	정규
		8.3 세탁물관리	2	정규
	8. 감염예방	8.4 물품 소독·관리	3	정규
		8.5 환경관리	2	정규
		8.6 급식관리	6	정규
	8.7 종사자 관리	3	필수(3)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2	필수(2)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3	3	12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3	정규
	11. 모이예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필수(3)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6	필수(3)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3	5	16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3	필수(3)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3	정규
		15.1 위생관리	2	정규
	15. 신생아관리	15.2 신생아 수유	5	필수(1)-정규
		15.3 안전관리	3	필수(3)
6	15	30	99(1)	필수: 40

---

# 제2장 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

---



## 1. 기본원칙

- 산후조리원 평가에서는 평가항목 충족수준과 결과판정 수준을 산후조리원 간, 평가항목 간 평가결과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점수화 체계를 구성하였다.
  - 평가항목의 객관적인 변별을 위해 항목별 평가방법 및 결과판정 기준을 제시함
  - 평가결과 등급판정 기준에는 전체 평가항목(Measure Element, ME), 각 영역별 평가항목(ME)에 대한 충족여부를 위한 기준을 포함함

## 2. 평가항목 충족기준

### ○ 유/무

- 유: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로 10점
- 무: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 미만으로 0점

### ○ 상/중/하

- 상: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80% 이상 ~ 100%로 10점
- 중: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 이상 ~ 80% 미만으로 5점
- 하: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0점

평가결과	점수	충족기준	평가결과	점수	충족기준*
유	10점	100%	상	10점	80%이상
			중	5점	60%이상~80%미만
무	0점	100% 미만	하	0점	60%미만

(\*경우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상'에 대한 충족기준을 100%로 할 수 있음)

---

## 제3장 평가항목의 이해

---



##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2. 인력 전문성

##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증영역	평가기준
1. 인력 적정성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 1. 인력 적정성 ]

### 기준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 평가목적

직원의 수 또는 구성에 대해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 영역	분류	평가결과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건강관리 인력

구분	내용	비고
간호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구분	내용	비고
간호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음(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함).	
건강관리책임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별지 제1호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작성·비치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됨. (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 불가)

○ 그 밖의 인력

- 취사부 및 영양사
  -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청소 및 세탁담당자
  -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 보건소의 실태조사서에는 아래의 내용 1)~4)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같음함)

-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신생아 입실자료

### ○ 판정기준

#### 1) 법적 인력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li> <li>-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거나,</li> <li>- 또는,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4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해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4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로 시정 조치를 받음</li> </ul>

## [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

### 기준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인사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직원 채용절차
    - 자격조건(근무경력 등)
    - 건강검진확인(근무예정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잠복결핵검사)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 인사정보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정보(예: 면허, 교육 등) 갱신 및 관리
    -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
  - 직무기술서 작성 및 관리
    - 직무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자격요건 등
    - ※ 설비/소방담당, 산모교육 담당, 감염관리 담당, 급식관리 담당, 문서관리 담당, 자체점검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2) [필수]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모집/배치한다.
- 3)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정보 등)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 4) 직무기술서는 직무내용 및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기술서는 산후조리원의 규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 보완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종사자 보안 각서
- 직무기술서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 판정기준

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검사 포함) 및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

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 교육, 훈련 등 근거서류가 있음	- 일부 직원의 인사정보 관리가 미흡함 - 면허 갱신, 교육, 훈련 등 근거서류가 대부분 있음	-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 교육, 훈련 등 근거서류가 대부분 없음

4) 직무기술서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직무 기술서가 있고,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 직무기술서가 없거나,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개발 ]

### 기준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평가목적

직원의 자격유지 및 업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연간 교육 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예산 등
  - 교육 종류 및 내용
    - 산후조리교육(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 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시기: 1년마다 1회 이상
- 내용: 감염예방, 감염·안전관리 등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교육, 감염관리교육, 신규직원교육, 협회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염관리 및 직무교육
  -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법적 인정 교육과 자체 소방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 소방안전 교육
  - 소방안전 교육
    - 교육대상: 산후조리업 종사자
    - 교육일정: 최소 연 1회, 매년 2시간 이상
    - 교육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2)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자체 또는 외부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지원)한다.
- 3) [필수]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소방안전 교육 이수, 감염관리 교육 이수
  - 종사자 교육 대장(자체 교육 확인용)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계획에는 예산(자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	-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매년 자체 또는 외부교육을 실시(지원)하고, 종사자 모두 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함 (※ 필수: 직원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매년 총2시간 이상)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직원별로 보관되어 있음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필수: 직원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매년 총 2시간 이상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	- 자체 또는 외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음 - 직원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을 매년 총 2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음

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 2. 인력 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

### 기준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평가목적

직원의 근무교대 시 정확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산모, 신생아의 정보를 공유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근무교대 시 종사자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정보공유 방법
    - 건강기록부(산모, 신생아)
  - 정보공유 내용
    - 산모, 신생아 기본정보
    - 인계시점에서의 산모, 신생아 상태
    - 필요시 제공되어야하는 처치 등

2) 직원은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절차를 알고 있으며, 건강기록부를 이용하여 산모, 신생아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
-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 판정기준

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근무교대 시 종사자간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건강기록부에 정보공유 내용이 충실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근무교대시 정보공유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2개 모두 충족	- 건강기록부에 정보공유 내용이 일부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이상	- 건강기록부에 정보공유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미만

II

##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

3. 시설 적정성

4. 시설 안전성



##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증명역	평가기준
3. 시설 적정성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4. 시설 안전성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 3. 시설 적정성 ]

#### 기준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평가목적

산후조리원의 임신부실, 신생아실의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시설을 갖춘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IT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IT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신생아실에 세면대 또는 손소독기(소독제) 등 손 씻기 시설을 갖춘다.
- 손 씻기 시설: 세면대, 손소독제 등
  - 세면대(싱크대):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2) 신생아실 내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 3) 신규로 입실하는 신생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 관찰실을 둔다.
  - 사전관찰실: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으로 분리하여야 함  
(※ 2017. 7. 1.부터 시행)
- 4)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산후조리원 법적 설치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임신부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따름)
  - 임신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 임신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신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 영유아실(신생아실)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 공용면적 제외는 2017. 7. 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일반기준(시행규칙 별표3)
  -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 참고: 임신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제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2018.1.1. 이후 신고를 하는 산후조리원 적용).)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신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입산부실, 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 ○ 판정기준

#### 1)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 입구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	2개 중 1개 충족	2개 모두 없음

####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 간격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다.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지 않다.

#### 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사전 관찰실이 있으며,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 사전 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함	- 신생아실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음

## [ 4.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

### 기준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평가목적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가스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평가항목의 이해

- 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
    - 시행시기 및 예산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계획 등
  - 전기·가스 설비 감시 및 관리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등
  -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및 관리
    - 급수설비 위생 점검
    - 저수조 청결상태 점검, 수질검사
    - 하수도 관리
    - 정수기 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참조)
    - 적용대상: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2-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 판정기준
  -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 야하고 관리 계획서 구비)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지 않고, 관리 계획 없음)
  - 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미충족

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함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	-점검표 2개 항목 충족	-미충족

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충족	- 점검표 1개 항목 충족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미충족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전기	1. 실별 취사나 전열기(전기장판, 히터) 사용제한			
	2. 문어발식 콘센트 여부			
	3. 전선의 피복 상태나 무거운 물체 눌림 여부			
	4. 배선기구(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 여부			
가스	1. 주기적인 가스 점검 여부			
급수	1. 먹는 물(정수기 등) 점검 여부			
	2. 정수기 물받이의 이물질 상태			
	3. 정수기 몸체 및 정수기 주변의 청소와 청결 상태			
공조	1. 실내공기질 측정			
	2.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기준 준수			

## [ 4.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

### 기준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점검 계획
    -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 피난설비(완강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 피난경로(대피로) 점검(피난경로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비상구 점검(개방여부,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 신고체계(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편성
  - 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설정
  - 직원의 역할분담,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 유형별(산모, 신생아) 대피 계획 및 후송 계획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계획
- 소방안전 교육(최소 연 1회 이상) (※ 1-2 인력적정성: 종사자 교육 개발과 중복)
    - 교육대상, 교육일정
    - 교육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소방훈련(최소 연1회 이상)
    - 대상: 산후조리원 종사자(직원)
    - 훈련내용: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 비상대응훈련
- 2) [필수] 화재예방을 위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 3) [필수] 계획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나 재난 발생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
-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체계: 응급벨, 인터폰(핸드폰은 제외함)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연 1회):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 ○ 판정기준

#### 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 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6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구분	상	중	하
필수	- 점검표 수행 항목의 80% 이상	- 점검표 수행 항목의 80% 미만	- 점검표 수행 항목의 60% 미만

### ■ 화재예방 안전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및 점검 (※ 압력게이지 확인)				
2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작동기능 점검				
3	소화전 설치 및 점검				
4	화재경보설비 설치 및 점검				
5	피난기구(사다리, 완강기 등) 구비				
6	피난구유도등(비상유도등) 설치 및 작동				
7	피난 안내도 부착 및 관리 (※ 비상구, 피난동선 및 소화기 위치 등의 내용 포함, 피난안내도 비치위치 확인)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8	대피로 확보 및 비상구 점검 (※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 확인, 비상구 위치확인 및 개방여부확인, 피난방향으로 열리는지 여부)				
9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10	소방계획서 구비				
11	소방시설 자체점검				

3) 소방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li> <li>-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li> <li>-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 교육 실시하지 않음</li> <li>-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li> </ul>

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 인터폰 등)가 있음 (※ 연락체제로 핸드폰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없거나, 연락체제로 핸드폰을 사용함</li> </ul>

## [ 4.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 ]

### 기준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평가목적

낙상으로 인한 산모와 신생아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낙상예방활동
    - 낙상예방교육(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잘 맞는 신발 착용 교육 등의 안내문 부착 등)
    - 환경 및 시설점검(바닥 미끄럼방지, 문턱관리, 조명관리, 낙상예방 안내문 부착 등)
-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낙상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평가방법

### ○ 확인 내용

-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 예방 활동 근거 서류

### ○ 판정기준

####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규정이 없음

####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미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없음

###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럽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 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Ⅲ

## 운영과 질 관리

---

- 5. 운영관리
- 6. 질 관리
- 7. 경영 관리

### III. 운영과 질 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5. 운영관리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5.4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6. 질 관리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7. 경영관리	7.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점검한다.

## [ 5.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

### 기준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 평가목적

입·퇴실 수속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4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입·퇴실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입·퇴실 수속 절차(방법), 입·퇴실 지연 시 관리방법 등



-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입실생활 안내,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등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
-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입실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마사지, 사진촬영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하며, 산후조리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함)
- 4)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 5) 입·퇴실 수속 절차를 준수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소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판정기준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됨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고 있음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게시(비치)하고 있지 않음

4) 입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계획</li> <li>○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li> <li>○ 방문객 관리계획</li> <li>○ 감염예방 관리계획</li> <li>○ 의료기관 이송계획</li> <li>○ 낙상예방 계획</li> <li>-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li> </ul>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3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 [ 5.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

### 기준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이송여부 결정기준
  - 이송절차
  - 보건소 보고 지침
- 2)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산모 및 신생아를 이송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하고, 이송된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 장에게 보고한다.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최근 1년)

### ○ 판정기준

#### 1)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li> <li>- 이송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li> <li>-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지침(보고해야하는 사항, 보고담당자, 보고시점 등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규정 내용이 2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이 없음 (규정 내용이 1개 이하)</li> </ul>

#### 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li> <li>○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li> <li>○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li> <li>-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숙지 60% 이상</li> <li>-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li> <li>-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시기가 지연됨</li> </ul>

## [ 5. 운영관리: 문서관리 ]

### 기준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평가목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문서목록(산후조리원 자체 목록 지정)
  - 문서 기록방법
    - 문서 기록, 수정 방법 및 기재내용
  - 문서의 대출, 열람(사본발급포함) 절차
    - ※ 건강기록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적대리인이 임산부/영유아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

- 문서 보관방법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모자보건법 제16조2)
  - 문서 접근권한 관리
  - 문서 보관, 유지 및 파기방법 등
- 2) 건강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기록, 수정한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를 준수하여 문서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누출을 방지한다.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최근 2개월 이내)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판정기준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관리규정(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이 없음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하지 않음

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 일부 건강기록부의 내용이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3건 이상은 모두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	- 건강기록부의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3건 이상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

구분	상	중	하
	사항도 누락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용을 준수하지 않음	용을 준수하지 않음
3)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 준수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이상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하지 않음



## [ 5.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

### 기준 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 관리
    - (※ 상시출입자 예: 사진사, 마사지사, 식재료납품업자 등)
  - 방문객 관리
    - 출입절차 및 출입이 금지되는 사항
      - 위장관감염, 호흡기감염, 결막염, 기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산후조리원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명부 작성
  - 방문 허용 시간대(면회시간)
  -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 수칙
    - 감염예방 교육(예: 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등)
  -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등
  - 손 씻기 시설 관리(세면대, 손소독제 등)
  -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 2) [필수]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을 입구에 게시하고, 산후조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3) 산모 및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객에 대한 출입관리 및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방문객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입구에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은 출입 시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대장)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포스터 부착 등)
- 판정기준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보호자(주출입자)는 산모가 지정한 1 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 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li> <li>-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li> <li>-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li> <li>•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감염이 있는 자</li> <li>•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자</li> <li>•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질환이 있는 자</li> <li>•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li> <li>• 최근에 예방접종(MMR, 수두, 폴리오)한 아동과 접촉한 자</li> <li>• 산후조리원 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누락됨</li> <li>-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li> <li>-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의 내용이 일부 누락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없음</li> <li>-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음</li> </ul>

3)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제공)</li> <li>•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위생 물품 비치(손소독제 유효기간 표기)</li> <li>• 손위생 홍보활동(근거자료 확인)</li> </ul> </li> <li>- 평가일에 방문객 손위생 수행 관찰(최소 3인): 100%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관리 활동 중 2개 수행</li> <li>- 방문객 손위생 실시 6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이하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음</li> <li>- 방문객 손위생 실시 60% 미만</li> </ul>

## [ 6.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 기준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질 관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산모, 방문객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시범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시범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시범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제별 질 관리 활동 계획
    - 핵심지표 선정
      - 모자동실시간, 신생아실 이용시간, 모유수유율, 손위생 수행률, 감염발

- 생양상, 안전사고발생 양상 등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선활동 관리
- 만족도 조사 계획
- 대상, 횟수(연 1회 이상), 시기, 조사 형식(설문지) 등
  - 조사결과 관리(조사결과 분석, 개선활동,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등)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 2) [시범] 산후조리원에서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 성과를 관리한다.
-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4)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5)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을 절차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다.

###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판정기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li> <li>- 질 관리는 최소 1개 이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관리, 만족도 평가 계획이 없음</li> </ul>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동실시간</li> <li>○ 신생아실 이용시간</li> <li>○ 모유수유율</li> <li>○ 손위생 수행률</li> <li>○ 감염발생 양상</li> <li>○ 안전사고발생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 핵심지표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지표를 1개 이상 선정, 1년에 1회 이상 질 관리 활동 수행 (※ 필수: 손위생 수행률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li> <li>-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li> </ul>

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이상 만족도 평가 실시함 (퇴실한 산모 3인 자료 확인)</li> <li>-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li> <li>-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li> <li>-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3개 모두 충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중 2개 이상 충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중 1개 충족</li> <li>-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li> </ul>

4)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고충처리함, 안내문 등)	- 안내 없음

5)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	- 피드백 관련 서류 없음

## [ 7.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 ]

### 기준 7.1

리더십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장의 리더십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O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
  - 모자동실
  - 신생아 및 방문객 감염 관리
- 2) 직원과의 의사 소통
  - 직원과 원장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여부 확인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회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원장 인터뷰(모자동실, 신생아감염관리에 대한 질의)
  - 직원 인터뷰

○ 판정기준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구분	유	무
정규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없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음

2) 직원과의 의사 소통(직원 면담)

구분	유	무
정규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함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음을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함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원장 인터뷰)

구분	유	무
정규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음



IV

##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9. 감염관리

## IV. 감염예방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8. 감염예방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위생을 수행한다.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8.4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9. 감염관리	9.1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 [ 8. 감염예방: 손위생 ]

### 기준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위생을 수행한다.

### 평가목적

종사자 및 산모는 손위생 수행을 준수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직원은 손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산모는 손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손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5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손위생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질병관리본부(KCDC),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및 공인된 감염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한다.

○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서 손위생을 수행한다.

○ 손위생 수행 시점(예시)

구분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
직원	일상적인 활동	- 근무 시작 전·후, 음식 먹기 전·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고 난 후
	신생아, 산모 간호	- 신생아, 산모와 접촉 전·후 -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 기저귀 교환 전·후 - 상처 만지기 전·후, 혈액/체액에 노출된 후 - 장갑 착용하기 전·후 - 감염(피부감염, 설사 등)이 의심되는 신생아나 산모와 접촉 후 - 산모의 좌욕을 도와준 후 - 오염기구나 물품을 만진 후
산모		- 신생아 접촉 전·후 - 수유 전·후 - 기저귀 교환 전·후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손위생] 참고

○ 손위생 수행 방법

- 손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액상 비누 및 손소독제 종류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예: 세면대 옆 홍보자료 비치, 게시판 등에 손위생 관련 자료 부착 등

-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 전·후, 산모와 신생아 간호 전·후 올바르게 손위생을 수행한다.
- 3) 산모는 신생아와 접촉 전·후, 수유 전·후 등 올바르게 손위생을 수행한다.
- 4) 손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적절한 곳에 비치한다.
- 5)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보호자, 방문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손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산모)
-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 ○ 판정기준

#### 1) 손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 2) 직원 손위생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6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미만	- 손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 3) 산모 손위생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3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미만	- 손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 4) 손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되어 있음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	- 4개 중 3개 이상 충족함 - 손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기한 표기가 일부 되어 있지 않음	- 손위생 물품이 소량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

구분	상	중	하
	된 제품을 이용함 - 신생아실 손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		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이 아님 - 손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가 없음

5)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위생 포스터 부착	- 2개 중 1개 실시함	- 손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없음

■ 손위생 활동 점검표(산모)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 손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산모 접촉 전·후				
6	모유수유 준비 전, 수유 전				
7	기저귀 교환 전·후				

## [ 8.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

### 기준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 평가목적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필요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 업무 중 감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염소계 소독제 등) 등
  - 개인보호구 목록관리
- 2)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일회용 가운 등)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보호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판정기준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장갑, 마스크, 가운을 착용해야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80%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능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80%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직원 숙지 60%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직원 숙지 60%미만



## [ 8.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 ]

### 기준 8.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 평가목적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관리 및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세탁물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세탁물관리(※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세탁물
      -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 산모복, 신생아복, 유니폼, 가운 등
      - 린넨류: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린넨류
      - 기타: 커튼, 씌우개류, 수집용기(헤파) 등
    - 세탁물 보관 및 운반
      - 세탁물 수집: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수집용기(헤파), 수집장소 관리 (소독, 세탁물 분류 등)

- 세탁물 운반: 수집용기(헐퍼)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운반, 운반용기 관리(소독)
  - 세탁물 처리(자체 또는 외부 위탁처리)
    - 자체처리: 세탁실 관리, 세탁방법(오염/일반세탁물 분리세탁, 세제선택, 세탁 온도와 시간(71℃ 이상에서 25분간)) 등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 세탁된 세탁물 보관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 전용 보관 장소(입원실, 식당, 휴게실 등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져 있음)
  - 폐기물관리
    - 자체처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 2) 규정에 따라 오염된 세탁물을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위탁계약서

○ 판정기준

1)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오염된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	- 점검표 4개 항목 충족	- 미충족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 [ 8.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 ]

### 기준 8.4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 평가목적

기구 및 물품의 감염예방 활동을 통하여 기구 및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 발생 위험을 예방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구 및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 수유물품(젓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
    - 기타(요람,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
  - 세척/소독된 물품 보관 관리
  - 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물품소독제 사용)
  - 세척직원의 보호구 착용: 세척 시 보호 장구 착용(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등)

2-3) 규정에 따라 기구 및 물품을 세척, 소독, 보관하고, 직원은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 요람 소독일지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 판정기준

1)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경우(자불소독 또는 국내외 승인된 전용 소독제 사용) - 신생아 요람마다 소독일지가 부착되어 있고, 매일 소독하는 경우(최소 3개 이상 확인) - 목욕대야 소독은 중간수준 이상이며, 제품설명서에서 제시한 소독시간, 농도 등 준수함(직원 1인 이상 관찰) - 세척 시 필요한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고,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하여야 함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필수: 수유물품 소독여부는 충족해야함)	- 미충족

## 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유물품(젖병, 젓꼭지 등)을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li> <li>- 신생아용품(기저귀, 물티슈, 비누, 목욕대야, 로션)은 신생아마다 개별보관, 사용하는 경우 (단, 펌프용 비누, 펌프용 로션은 제외)</li> <li>- 목욕대야는 포개져 있지 않음</li> <li>- 유축갈때기, 좌욕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보관, 사용하는 경우 ⇒ 4개 모두 충족</li> </ul>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 [ 8. 감염예방: 환경관리 ]

### 기준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평가목적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환경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위생관리
    - 청소 및 소독을 포함
    - 개인위생관리: 산모/신생아복, 직원유니폼 관리 등
    - 환경위생관리: 침상(런넨)관리, 청소, 소독 등 공용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
  - 환경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환경소독제 사용)
  - 쓰레기통은 발로 여는 것만을 사용
- 2) 개인 및 환경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 및 점검표
- 소독관련 기록대장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 판정기준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11개 항목 이상 충족	- 점검표 8~10개 항목 충족	- 미충족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에어컨 필터 청소여부(신생아실, 산모실 등)			
5	신생아 요람 관리			
6	수유준비실 관리			
7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8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9	좌욕실 관리			
10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11	손 씻기 시설			
12	기구 세척실 관리			
13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 [ 8. 감염예방: 급식관리 ]

### 기준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 평가목적

산모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식재료, 식기, 조리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평가항목의 이해

### ■ 조리장을 자체 운영하는 기관: ME7 '미해당'

####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조리장 위생 상태 관리
  - 청소, 구역관리(오염/비오염)
  - 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소독 및 보관방법)
  - 음식물 쓰레기 관리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 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등
-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 온도관리, 식재료 종류별 분리보관, 청소 등
-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 복장준수(위생모자,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등) 및 손위생
  - 유증상(설사, 고열 등) 직원 관리 등
- 외부 위탁 시 관리
  - 위탁업체 선정(위탁기관과의 계약서)
  - 위생관리 계획 확인(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및 운영계획, 급식 사고 발생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위탁기관 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 등)
  - 급식 절차 등

#### 2) 조리장의 위생상태(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 오염구역/비오염구역 구분, 음식물 쓰레기 관리 등)를 관리한다.

#### 3) 식재료의 보관상태, 유통기한 등을 관리한다.

#### 4) 조리장 냉장고 및 냉동고의 온도를 매일 점검(확인)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식재료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냉장고 및 냉동고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5) 조리장 직원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 6) 조리장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 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단, 위탁하는 경우 위탁 시 관리내용을 포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 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 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는 경우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li> <li>-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li> <li>-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예, 물기 없어야 함)</li> </ul>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 5) 취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취사자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li> <li>- 손위생을 수행함(80% 이상)</li> <li>-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8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취사자가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li> <li>- 손위생을 수행함(60% 이상)</li> <li>-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사자가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취사자 복장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li> <li>- 손위생을 수행함(60% 미만)</li> <li>-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미만</li> </ul>

## 6) 외부위탁 시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등)이 이루어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짐</li> <li>- 급식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음</li> </ul>	- 위탁업체 계약서가 없거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8.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

### 기준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평가목적

직원의 건강유지와 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를 예방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건강관리 활동(※ 모자보건법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직원 대상 예방접종 관리(인플루엔자, 백일해)
    - 직원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잠복결핵검진 등)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년 1회 정기적으로 관리(백일해는 미포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근무 시작 전 특정질환의 노출 경험 또는 보균상태 확인 등)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발생 시 절차, 직원의 근무 제한, 제한기간 등)
-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3) [필수]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건강검진확인서(산후조리업자, 종사자)
- 예방접종확인서(산후조리업자, 종사자)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판정기준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직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실시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	- 일부 직원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음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음

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대처방안에 대해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100%)	-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가 미흡함

## [ 9. 감염관리 ]

### 기준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 평가목적

감염병 발생(의심) 시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 질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을 보호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및 관리 지침)
- ※ 참고: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지침을 따른다.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지침(보건복지부, 2017c)
- 감염병 환자군의 정의(예: 인플루엔자,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 격리방법
    - 직원대상 격리관련 교육 및 보호구 착용
    - 의료기관 이송계획 및 보건소 신고

- 격리물품 구비
  -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등
- 2)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별도의 격리실에 격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
-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절차
- 신생아 건강기록부

○ 판정기준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구체적인 조치 및 관리계획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하지 않음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미만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하지 않음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1. 모아애착
12. 부모교육

##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증영역	평가기준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1. 모아애착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12. 부모교육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 10. 산모 건강평가 ]

### 기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 평가목적

산모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1-3)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산모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통증, 부종, 대소변, 정서 상태(산후 우울) 등
- 산후우울증 평가 시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권고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산모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산후우울증 설문지

○ 판정기준

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3건 확인)	- 일부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이상 기록 충족)	-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2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설문지 작성)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거나 일부 산모에 대해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

## [ 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

### 기준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모유수유와 애착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동실 운영
    - 사용기준, 시설과 환경관리, 주의사항, 사용설명과 동의 등
  - 모자동실 촉진 활동(교육)
  - 모유수유 촉진 활동(교육) 등
- 2) 계획에 따라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 3) 계획에 따라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 판정기준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계획이 없음

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5인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이상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미만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10점 가산

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5인 선정하여 신생아 건강기록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유수유가 금기인 경우, 산모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이상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미만

## [ 12. 부모교육 ]

### 기준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평가목적

출산 후 산모의 적절한 건강관리 및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1) 부모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예산 등
- 교육내용
  - 산모 건강관리방안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법
    - 산욕기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회음부 감염, 수술부위 감염, 자궁내막염, 복막염, 혈전성 정맥염 등의 예방방법 등)
    - 회음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 유선염의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피임방법(성교시기와 콘돔 사용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응급상황(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등)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모유수유방법
    -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 수유자세, 트림방법 등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배꼽관리
    - 신생아 신호(울음) 알기 등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방법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방법
  - 금연 교육 등
- 교육방법
  - 1:1 교육, 책자교육, 사이버교육 등

2~5) 계획에 따라 산모별, 교육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관리하며 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6) 아버지가 산후교육(산모의 산욕기 교육, 피임, 금연),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 평가방법

###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이수 관리대장)
- 강의로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 판정기준

#### 1) 부모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부모별, 교육별 계획 스케줄 • 이수자 관리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계획이 없음

#### 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성교시기와 콘돔 사용 등 피임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교육내용이 4개 이상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내용이 4개 미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교육내용이 5개 이상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내용이 5개 미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구분	상	중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수유자세</li> <li>• 신생아 목욕방법</li> <li>•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li> <li>•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li> <li>-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li> </ul>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li> <li>-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li> <li>-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정이 없음</li> <li>-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li> </ul>

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li> <li>-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li> <li>-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일정이 없음</li> <li>-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li> </ul>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 자료 근거서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VI

##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4. 신생아 건강평가
15. 신생아관리

## 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중영역	평가기준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확인한다.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5. 신생아 관리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 13. 신생아확인 ]

### 기준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식별한다.

### 평가목적

신생아 식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식별방법
  - 2가지 이상의 식별정보 및 인식표 착용
    - 식별정보: 이름,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일자 등
    - 인식표: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등
  -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신생아 식별방법 적용
-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시점
  - 입·퇴실 시

- 신생아아실 면회, 모자동실 이용, 수유 전, 목욕 시, 약품 투여 전, 의 료기관 연계·이송 시 등
- 2) [필수]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 3) [필수]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산모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간호(조무) 사 1인과 산모가 동시에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치 가능)

○ 판정기준

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식별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발찌나 팔찌 중의 인식표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	- 인식표를 사용하나 발찌나 팔찌의 인식표를 사용하지 않음	- 인식표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음

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관찰건수 100% 충족)	- 관찰건수 60% 이상	- 관찰건수 60% 미만

## [ 14. 신생아 건강평가 ]

### 기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 평가목적

신생아의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1-3)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신생아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구토, 설사, 호흡수, 호흡양상, 체온, 피부발진, 배꼽상태, 눈 분비물, 황달, 예방접종여부 등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 판정기준

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100%)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이상 기록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위의 내용에 대해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1회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 일부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 [ 15. 신생아관리: 위생관리 ]

### 기준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 평가목적

출생 후 면역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관리
  - 배꼽관리
  - 눈 분비물 관리
  - 피부상태 관리(기저귀 발진 등)
  - 물품관리(수유물품, 목욕대야, 기저귀, 물티슈 등)
  - 배설물 처리 등

- 신생아 위생관리는 건강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  
월 중 1일 1회 이상 실시
- 2) 신생아에게 감염성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신생  
아 용품은 개별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신생아 건강기록부

○ 판정기준

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1일 6회 이상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록이 있음 - 모든 신생아의 배꼽상태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음 - 모든 신생아의 눈이 분비물이나 감염증상 없이 깨끗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재원중인 신생아 3인 선정하여 신생아기록지 확인) ⇒ 3개 모두 충족	- 3개 중 2개 충족함	- 미충족

## [ 15. 신생아관리: 신생아 수유 ]

### 기준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평가목적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신생아에게 적절한 수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유물품관리, 수유준비, 보관된 모유나 분유 사용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생아의 위장관감염 위험을 예방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정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평가항목의 이해

-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유의 보관 및 관리
    - 냉장·냉동 보관기한, 보관상태 점검 등
  - 분유의 보관 및 관리(분유 선택기준)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
    - 시원한 실내에 보관된 분유 등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방법
    - 수유물품 사용방법, 모유(분유) 준비, 모유(분유)데우기 등
    - 모유(분유) 수유 방법
    - 수유 중 신생아 상태 관찰
    - 수유 후 처리방법
  - 수유준비실 관리
  - 냉장·냉동고 관리
- 2)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하여 모유에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보관기한을 준수한다.
- 3) 분유 선택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분유를 선택하고 관리한다.
- 4) 수유를 준비하는 곳은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전파되지 않도록(목욕물이 튀지 않을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유준비 전용 싱크대에서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 5) [필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하고, 수유 시 신생아 혼자서 젖병을 물지 않게 한다. 모유수유 시에는 신생아실과 구분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 판정기준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 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축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	- 2개 중 1개 이상 충족	- 보관 중인 모유가 산모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보관기한이 경과된 모유가 있음

3) 분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를 사용함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를 사용함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청결한 곳에 보관되어 있음 - 분유의 개봉일자가 라벨링되어 있음(분말분유는 3주,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 이내 사용)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 4) 수유준비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유준비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음</li> <li>-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li> <li>-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음</li> <li>-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임</li> <li>-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li> <li>⇒ 5개 모두 충족</li> </ul>	- 5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 5) 수유 실시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유 수유 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li> <li>-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없음</li> <li>-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는 버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있음</li> <li>-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를 보관함</li> </ul>

## [ 15. 신생아관리: 안전관리 ]

### 기준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평가목적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체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IT	P	필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평가항목의 이해

- 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신생아 수면자세 관찰(앙와위, 측위자세)
  - 요람 관찰(시트가 단단하며, 폭신한 베개나 인형이 없어야함)
  - 산모실에서 신생아 수면 시 교육(산모침대 사용하지 않기)
  - 신생아 호흡상태, 피부색 변화 관찰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 3) [필수] 직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규정(지침)
- 판정기준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안전관리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양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신생아 중 일부(20%)가 옆드린 자세임(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옆드린 자세인 경우는 모두 해당됨)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3인 중 2인)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대다수의 신생아가 옆드려 있음(80% 이상)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3인 중 1인 이상)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부록 6.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 사례집

# 2018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규정 사례집

◆ 평가기준 2-1-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 인사관리

###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적절한 인력을 갖추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 정보를 관리한다.

### ▣ 지침 및 절차

#### 1.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가. 건강관리인력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 1) 산후조리업자

- ①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 산부인과, 소아과, 분만실, 조산소에서 산모나 신생아를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 관리자로서 행정적 업무만을 담당할 경우는 제외)

##### 2) 건강관리책임자

- ①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 ③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둔 경우(채용된 간호사 중에서 겸임하는 경우 포함)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3) 간호사

- ①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②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을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분의 30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 ③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 4) 간호조무사

- ①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②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을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 ③ 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함.

#### 5) 겸임 금지

- ① 간호사 겸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 불가

#### 6) 영유아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제한

- ①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함.

### 나. 그 밖의 인력

#### 1) 취사부 및 영양사

- ①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②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산후조리원 점검 당시 직전 년도 12개월 간 임산부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입원 임산부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③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체에 영양사가 있어야 함.

#### 2) 청소 및 세탁 담당자

- ①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음.

## 2. 직원 채용 절차

### 가. 직원 모집 및 선발

- 1) 종류: 공개채용 / 특별채용
- 2) 직원 모집의 규모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정원 내에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모든 채용의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둔다.

### 나. 인력 배치 및 직위 부여

#### 1) 인력 배치 전 점검 사항

- ① 신규 채용자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 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서류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구비 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 실제 산후조리원의 구비서류 확인  
이력서, 주민등록 등초본,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건강검진진단서 등  
(※ 건강검진진단서는 잠복결핵검사,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 2) 인력 배치 및 인사정보 관리

- 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고지사항을 준수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②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 정보 등)와 예방접종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 직원 건강 검진은 1년 주기로 기간 안에 실시함)
- ③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을 보관한다.  
(※ 직원 교육 규정을 참조)
- ④ 산후조리원 모든 인력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채용 시에 보안각서를 받도록 한다.

### 3. 직무기술서 작성 및 관리 - 산후조리원 협회 서식 참조

- ① 직무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설비/소방담당, 산모 교육 담당, 감염관리 담당, 급식관리 담당, 문서관리 담당, 자체 점검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산후조리원 인사 관리 평가 기준

- 1) 산후조리원 인력 평가 법적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는 보건소의 실태조사 결과서로 같음한다.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대장,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생아 입실자료 등 확인 가능하므로 보건소 실태조사 결과서로 같음한다.

(종사자 관리대장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정보가 갱신되었는지 확인)

#### 2) 비치 자료

- ① 보건소 실태조사 결과서(최근 1년)
- ②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③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④ 종사자 보안 각서
- ⑤ 직무기술서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 ◆ 평가기준 2-2-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 평가기준 2-2-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 ◆ 평가기준 2-2-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 직원 교육

### ▣ 목적

-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2)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및 직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

나.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산모 및 신생아 돌봄 내용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 습득

다.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능력 함양

라.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

## ■ 교육 기관

- 1) 교육일정은 사전에 산후조리교육기관(現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분기별로 집합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 2)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지침(고시)」 [별지 제 2호 서식]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17조 제4항)
- 3)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교육 내용

- 1) 종사자는 매년 1회,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 대상
  - 가.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건강관리책임자는 「의료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
  - 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설예정자)
  - 다. 그 외의 직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외의 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부 및 영양사, 청소 및 세탁담당자 등)의 모든 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직무 관련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가. 감염 관리 체계: 종사자의 책임, 교육, 건강관리 및 점검 등
  - 나. 감염 관리 실무: 감염 예방, 시설 및 환경 관리, 예방 접종 등

- 다. 신생아 감염 예방과 관리: 감염 질환 관리, 신생아 수유 및 목욕 등
- 라.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산모 건강관리 및 산욕기 감염 등
- 마. 결핵 예방 교육, 소방 안전 관리 교육 등

## ▣ 산후조리원 직원 교육 평가 비치 자료

- 1) 최근 2년 간 업무관련 교육을 자체로 개최하거나 외부 교육 참여를 지원한 예산 및 지출 등을 확인한다.
- 2) 비치 자료
  - ① 연간 계획서  
(※ 예산,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② 교육 이수 근거 서류(최근 2년)  
(※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
  - ③ 신규 직원 업무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



◆ 평가기준 4-3-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 낙상 예방

###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특성, 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용어의 정의

낙상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가 조절되지 않아 갑자기 바닥이나 낮은 곳으로 비의도적으로 이동하는 것 (Gibson,1990)

### ■ 정책 (Policy)

1. 산모와 보호자 및 직원에게 낙상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낙상 보고건수를 모니터링하여 낙상예방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 ■ 지침 및 절차

#### 1. 산모 및 보호자 교육

##### 가. 일상 생활시 낙상예방 수칙

- 1) 호출장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호출장치 사용법 설명
- 2)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일어나 걸터앉은 후 천천히 내려오기
- 3) 침대 위에서 일어서지 않기
- 4)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 5) 산모가 미끄럽지 않고 잘 맞는 신발을 사용하기
- 6) 출산 이후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할 때 혼자 다니지 않고 보호자와 동행하기

#### 나. 화장실 목욕탕 이용 시 낙상예방 수칙

- 1) 바닥의 물기를 주의하여 미끄러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기
- 2)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장치 사용하기
- 3)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낙상 발생 시 바로 보고하도록 한다.  
(※ 산모 및 보호자 교육은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따라 입소생활안내문, 낙상예방활동지침, 산모실 내 게시판, 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2. 직원교육

낙상발생이 가능한 모든 장소나 상황에 따른 낙상예방 지침을 만들어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은 이를 준수한다.

#### 가. 간호 단위의 낙상예방 지침

- 1) 입소생활안내 시 산모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해 낙상 가능성과 위험성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 2) 활력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체위성 저혈압에 유의한다. 특히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 할 때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3) 산모실 바닥이나 복도는 보행 시 미끄러질 수 있는 물질이 없도록 순회하여 점검한다.
- 4) 낙상 예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시행한다.  
(※ 산후조리원 사정에 따라 정기적 횟수는 조정할 수 있음)

## 3. 시설 및 환경관리

#### 가. 시설관리

- 1) 원내 시설물 중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2) 산모실, 신생아실, 화장실 샤워실에 낙상주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 3) 침상 화장실 샤워실에는 산모의 손에 가까운 위치에 호출 장치를 부착한다.
- 4)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바닥은 턱이 없어야 하고 미끄럼방지 장판이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며 필요 시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 5) 복도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에는 안전바를 설치하고 낙상주의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 나. 환경관리

- 1) 산모실이나 신생아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 물기나 미끄러운 용액이 없도록 한다.
- 2) 환자가 이동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이 나와 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원내 환경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 3) 산모실 및 복도 화장실 등의 조명은 활동시간에는 밝게 하고 야간에는 어둡지 않도록 한다.

#### ▣ 산후조리원 낙상 예방 평가 비치 자료

- ① 입소안내문
- ② 각종 시설의 낙상 예방 안내문 또는 스티커
- ③ 낙상 정기 점검 자료

◆ 평가기준 5-1-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산모 입·퇴실 관리

###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입·퇴실 수속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 입·퇴실 관리 규정

#### 1.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가. 입·퇴실 관리

- 1) 투어와 예약은 임신 20주부터 받는다.  
(※ 산후조리원과 산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입소가 임박한 예약자는 예정일 2~3주 전에 미리 전화 통화하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일정 조정을 통해 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3) 입·퇴실 수속 절차 및 지연 시 관리 방법  
입·퇴실 수속 절차 및 입·퇴실이 지연되는 경우 관리방법에 대하여 담당 직원 80% 이상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입소 건강 사정

- 1) 입소하게 되면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사정을 실시한다.
- 2) 신생아 건강 사정 시에는 산모 방에서 간호사가 산모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건강사정을 실시하고, 특히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두확인하고 입소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 산모의 건강기록부 또는 신생아의 건강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음)
- 3) 다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문진과 건강 사정을 통하여 간호사가 입소 기록지를 직접 기록한다.

(※ 산모의 건강기록부 또는 신생아의 건강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음)

가) 분만 정보 및 분만 전 투약 사항 등

나) 신생아 정보

: 입소 시 체온, 신체계측, 출생 시 건강문제, 첫 젖 물림 시도, 수유방법, 수유량, 배설, 예방접종, 기타 건강 관련 특이 사항

다) 산모 정보

: 활력 징후, 수유계획, 산전교육, 산후교육희망, 입원 중 특이 사항, 과거병력, 산 후관리자, 정서 상태, 배우자 및 산모 일반 정도

## 2.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가. 입실 생활 안내, 요금 및 환불 체계, 서비스 내용 등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입실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16)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설명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 제15조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

## 3. 입실 시 산모 교육 (※ 입소생활안내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가. 보안계획: 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나.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

다. 방문객 관리 계획

라.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마. 감염 예방 관리 계획

바.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계획

▣ 산후조리원 입·퇴실 관리 평가 비치 자료

- ① 입·퇴실 관련 규정
- ②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③ 입소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④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평가기준 5-2-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 의료기관 이송 연계

###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 ▣ 지침 및 절차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법 제15조의4 제3호)

-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안전사고 포함) 보호자와 상의하여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다만, 보호자가 즉시 이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할 경우 건강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1. 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응급실,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함)

#### 가. 임신부 이송 결정 기준

- 1) 원인을 알 수 없는 38도 이상의 고열
- 2) 비정상적인 오로: 자궁 수축과 동반되는 간헐적인 출혈이 아니라 1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 3) 활력 징후 측정 시 90/60이하의 혈압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 4) 유방출혈이 심하여 통증을 동반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
- 5) 가벼운 걷기, 모유수유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 6) 회음절개 부위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의 상처에서 발적을 동반한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
- 7) 소변양이 적절하지 않으면서 배꼽 아래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 8)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을 1시간에 한번 이상으로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 9) 설사 등의 위장관 증세를 보이는 경우
- 10) 그 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보이는 경우
- 11) 가슴에 빠근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 나. 신생아 이송 결정 기준

(신생아의 다양한 질환은 증상과 징후는 매우 다양하고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신생아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고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 1) 원인을 알 수 없는 38도 이상의 고열
- 2) 수면 시간의 증가
- 3) 불안정한 모습과 행동 (갑작스러운 변화나 평상시보다 활동이 처져 있을 때)
- 4) 수유 곤란, 잘 먹지 않고 자려고 만 할 때
- 5) 울거나 먹을 때 입술이나 손발이 푸르스름해질 때
- 6) 호흡이 빠르거나 숨쉬기 힘들어 할 때
- 7) 매 수유 마다 토할 때
- 8) 수차례의 점액성이나 묽은 변을 볼 때
- 9) 대변 색이 선홍색(예, 붉은 피)이거나 검은 때
- 10) 황달이 가슴 아래로 진행 될 때
- 11)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 양상을 보일 때 (탈장, 복부 팽창 등 기형)
- 12) 평소와는 다르게 걱정스러운 증상이나 징후를 보일 때
- 13) 그 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보이는 경우 (발진, 발열 등)

## 2. 이송 절차

### 가. 이송 방법

- 1) 법 제15조4 제3호에서 이송 시 이송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안전사고 포함)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측에서 보호자, 영유



아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2) 다만, 동행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메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3) 이송 수단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가 가장 빨리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산후조리원 또는 보호자 차량, 택시, 응급시 119 구급차 등)을 보호자측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4) 이송 전까지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를 별도 공간 또는 모자동실에 격리하여야 한다.

#### 나. 이송보고

##### 1) 시기

산후조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4 제4호)

##### 2) 보고방법

- 가) 이송보고는 '의료기관 이송보고서'에 이송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고하되, 접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지체 없이 보고하기 위해 전화 및 이송보고서 사진전송(SMS)으로 우선 보고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보고 사항

- 1) 이송보고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 이송사실(입원 및 외래진료)을 보고해야 한다.
  - 명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모호한 진단결과도 보고해야한다.
  - 예외사항: 외래 진료 전 중 신생아황달(생리성), 감염성 질병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
- 2)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의 이송사실을 보고한 경우 추후 진단 결과(진단명)도 확인하여 관할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인지한 경우

가.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신부, 영유아 또는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에 유선으로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송 이외 감염병 발생 인지 경로 예시

- 1) 퇴소한 산모의 연락을 통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단, 감염병 환자의 최초 증상발현일 또는 진단일이 퇴소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  
장 잠복기 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 2) 종사자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 3)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진단키트)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경우  
(※ 보건소로 보고 및 확진검사 의뢰)

■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연계·이송 평가 비치 자료

- ①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② 연계의료기관 협약서
- ③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자료(최근 1년)

◆ 평가기준 5-3-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 문서 관리

###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 관리에 힘쓴다.

### ■ 지침 및 절차

#### 1. 산후조리원 자체 목록을 지정하여 문서 목록을 작성한다.

#### 2. 신생아와 산모 관련 문서

##### 가. 문서의 기록 및 수정

- 1)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하며,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한다.
- 2)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기록지는 규정에 따라 기록, 수정한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문서의 대출, 열람(사본발급포함) 절차

※ 건강기록부: 임신부 또는 영유아의 법적대리인이 임신부/영유아기록부의 열람을 요  
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항)

##### 다. 문서의 보관 방법

- 1)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한다. (※ 모자보건법 제16조 2)
- 2) 문서의 접근 권한은 산후조리업자 및 지정된 종사자에게 있다.
- 3) 문서의 보관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장(실)에 보관한다.

#### 3. 그 밖의 문서

##### 가. 회계 서류 및 이용료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 나.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독 필 증, 가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표,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지와 교육 이수증 등을 함께 비치해 준다.

◆ 평가기준 5-4-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다.

## 방문객 관리

### ■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잠재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지침 및 절차

#### 1. 모든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가.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모든 방문객은 입소 시 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6세 이하의 영유아는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신생아를 만지기 전에 철저히 손을 세척하고 손을 씻은 이후에는 불필요한 물  
건이나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 4) 방문객으로부터 감염이 특히 우려되는 신생아의 경우에는 방문객 방문을 제한하  
여야 한다.

나. 방문 제한 질환

- 1)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상기도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 2) 풍진, 수두, 볼거리, 홍역,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등
- 3)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 4)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관 질환
- 5) 유행성 각·결막염 등의 안과 질환
- 6) 개방성 상처가 있는 경우 및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 7) 산후조리원 내 감염 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 2.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 관리

(※ 상시출입자 예: 사진사, 피부관리사, 외부위탁업체, 식재료납품업자 등)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도 1.항의 일반적인 지침을 따른다.

## 3. 방문객 관리

가. 입소 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방문객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1) 방문객 명부 작성
- 2) 방문 허용 시간대(면회 시간)
- 3)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
- 4) 외부 물품 반입 금지 사항

나. 산모 안정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면회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내부로 입실하는 것을 자제하며, 산모가 원할 경우 소독 절차 후 상담실 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면회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4. 시설 관리

가. 감염 예방 교육을 위해 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공한다.

나. 산후조리원 입구에 세면대 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다. 방문객에 대한 출입 제한 조건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가. 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신부, 영유아 또는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산후조리원 방문객 관리 평가 비치 자료

- ① 방문객 관리 규정
- ② 방문객 명부(대장)
- ③ 방문객 용 손씻기 시설 확인
- ④ 손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 포스터, 안내문, 리플렛 등

## 〈산후우울 관련 참고자료〉

◆ 평가기준 10-1-2.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

(Korean version of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 최근 출산을 하셨다면, 출산 후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오늘이 아닌, 최근 일주일 간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질 문	총 점 ( )			
	①	②	③	④
지난 7일 동안에:				
1.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예전과 똑같았다. <input type="checkbox"/>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2. 나는 어떤 일들을 기본 마음으로 기다렸다.	예전과 똑같았다. <input type="checkbox"/>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3.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4. 나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5. 특별한 이유없이 무섭거나 안전부절 못하였다.	꽤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6.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대부분 그러하였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러하였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진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8.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9. 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10.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K-EPDS) 채점가이드

-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별 0~3점(①:0점, ②:1점, ③:2점, ④:3점)으로 구성  
- 점수 범위는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
- 1, 2, 4 문항 제외한 문항의 경우 역채점  
- 역채점 방법 : 3, 5, 6, 7, 8, 9, 10번 문항은 1번~4번 보기 순서의 점수를 3, 2, 1, 0점으로 역순 적용
- 위험군 선별 기준점 : 9/10점  
- 총점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위험군으로 분류  
- 우울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본인 동의 하에 정신보건센터 의뢰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 안내

### \* 예시 '아이사랑'사이트 산후우울검사 결과 메시지

- 총점 9점 이하  
“산후우울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총점 10점 이상  
“산후우울이 염려됩니다. 가까운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8e).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 pp.22-23.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